

The New Normal : What CFO Needs to Know

뉴노멀시대

CFO가

알아야 할 것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상장회사CFO포럼

인사말

CFO는 전통적으로 기업에서 회계, 세무, 자금, 예산 등을 관리하는 최고재무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요구 증대 및 4차 산업 등 기술의 발전과 빠른 산업의 변화를 통해서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기업의 CFO가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뉴 노멀시대 CFO가 알아야 할 것들」을 기획하고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총 5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I 장 “CFO의 역할과 변화”에서는 전통적인 CFO의 역할과 현재 CFO 역할의 변화 및 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II 장 “회계”에서는 CFO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회계 이슈 항목과 더불어 회계 실무자가 아닌 CFO로서 회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III 장 “세무”에서는 세무조사, 조세특례 및 연결납세 등 CFO가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 세무이슈와 더불어 해외파견인력과 관련된 세금분야의 점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IV 장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는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CFO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코로나19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V 장 “ESG”에서는 최근 중요시 되는 ESG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시 및 평가, 기업의 대응 등 CFO가 챙겨야 할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의 발간에 힘써주신 안진회계법인의 김기현 파트너님, 박성한 파트너님, 김학범 파트너님, 백인규 ESG 센터장님 이하 안진회계법인 집필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이 CFO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구용

Contents

I. CFO의 역할과 변화

1. 지금까지의 CFO	1) 회계	10
	2) 세무	10
	3) 내부회계관리제도	11
	4) ESG	11
2. CFO 역할에 대한 확장 요구	1) 조직 내 CFO의 위상	12
	2) 기업의 모든 분야 만렙	12
3. 변화하는 시대와 CFO의 노력		15

II. 회계

1. 회계	1) 존재 가치	18
	2) 회계는 과거인가?	18
	3) 전세계가 이해하는 문법의 언어	19
	4) 회계기준에 대한 일관된 이해 방식	20
	5) 개별 기준서상 다양한 측정의 문제	24
	6) 특수사항	31
	7) 계속기업	35
2. 회계의 목적	1) 재무관리의 출발점	37
	2) 숫자를 보지 말고 그 의미를 읽어야 한다	39
	3) 상황 파악	41
	4) 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42
	5) 시장의 시선	45
	6) 회계 경쟁력	45
3. 회계로부터의 도피	1) 어제까지의 IR은 버려라	47
	2) 분식은 필요한가?	47
	3) 팬데믹	48
	4) 예술분야에 관심을	49

III. 세무

1.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	1) 세무조사의 개요	52
	2) 세무조사의 절차	57
	3) 세무조사 권리구제 제도	64
2. 조세특례에 대한 이해	1) 주요 분야별로 적용 가능한 조세특례의 종류	68
	2) 코로나 시대 이후 강화된 조세특례 분야	74
	3) 조세특례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77
3. 연결납세에 대한 이해	1) 연결납세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78
	2)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79
	3)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 구조	80
	4) 연결납세의 적용 신청	82
	5) 연결납세 기준 법인세 산출 구조	82
	6) 연결납세 신고 및 납부	84

4. 뉴노멀 시대의 해외파견인력 세금 관리 체크리스트	1) 파견 정책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	86
	2) 주재원에 대한 급여 지급 구조가 명확히 설계되어 있는가? —————	89
	3) 해외파견정책이 코로나 시대의 변동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	91

IV. 내부통제

1. 내부통제제도	1) 내부통제제도의 의의 —————	96
	2) 내부통제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	97
2.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 사항 —————	100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 흐름 —————	104
3. 코로나19와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검토 필요 사항 —————	106
	2) 내부회계관리제도 영역별 잠재적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 —————	107
4.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체크포인트 및 회사 대응 전략 —————	110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미비점 및 개선방안 사례 —————	111
	3)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수검 시 CFO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113

V. ESG

1. ESG의 개념	1) ESG의 역사와 정의 —————	120
	2) SDGs, CSR, CSV와의 차이 —————	122
	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124
2. Why ESG?	1) 기후변화 —————	127
	2) 정부 및 규제기관 —————	129
	3) 투자자 —————	132
	4) 고객 및 소비자 —————	135
3. ESG 공시 및 평가	1) 공시 기준 —————	137
	2) ESG 평가기관 —————	140
	3) ESG 공시 관련 제도적 동향 —————	144
4. 국내 기업의 대응	1)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	146
	2) ESG 경영 전략 —————	147

CFO의 역할과 변화

안진회계법인 김기현 파트너

1. 지금까지의 CFO	1) 회계	10
	2) 세무	10
	3) 내부회계관리제도	11
	4) ESG	11
2. CFO 역할에 대한 확장 요구	1) 조직 내 CFO의 위상	12
	2) 기업의 모든 분야 만렙	12
3. 변화하는 시대와 CFO의 노력		15

1 지금까지의 CFO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 CFO - 라고 검색하고 깜짝 놀랐다. 직접적인 검색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국내 저서 또는 번역서를 통틀어 4~5권만 검색되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지도자들을 위한 책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에 비하면 CFO만을 위한 서적은 거의 없어서 의아했다.

검색 결과를 생각하면 CFO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한 번 비틀어서 생각해보니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뻥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 CFO는 그런 거지 -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두들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 그런데 당연한 것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늦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대체로 1) 경영계획과 그 결과에 따르는 성과관리, 2) 자금관리, 3) 회계 관리 및 보고, 4) 세무 관리와 5) 기업 성장 또는 변화에 대한 검토를 CFO의 역할로 본다. 이러한 역할과 관련한 분야별 저서는 셀 수 없이 많다.

1) 회계

금번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CFO를 위하여 출간하는 책의 목차는 회계, 세무, 내부통제 그리고 ESG로 구성이 된다. 이 중에서 회계는 앞서 언급한 CFO의 역할과 모두 관련 있다. CFO 역할은 회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영문명에서 - F - 는 Financial로 CFO는 재무이사로 해석된다. 왜 Accounting을 사용해서 CAO 즉, 회계이사라고 하지 않을까? CFO 모든 역할의 최종 지향점은 재무관리 Finance Management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 목적지를 고려하여 명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회계가 없다면 CFO는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CFO에게 회계를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회계에 대한 업무해설서는 교과서 같은 것이 이미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CFO의 회계 업무 가이드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평소에 생각해온 것과 고객 서비스 경험 내용을 각색하고 CFO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 세무

세금은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자원 유출 분야이다. 복잡한 통상의 세무처리에 대한 것은 이미 각 기업들이 해당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업이 자원 유출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강화된 조세특례 분야, 연결 납세 및 뉴노멀 시대의 해외파견인력에 대한 세금 관리를 살펴본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단순히 검토 수준을 넘어선 감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한 회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회계 정보는 그 산출 과정에 오류 등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라는 결과물 이전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4)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로 알려진 ESG는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활동이나 흐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주주 중심의 기업 운영을 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 CFO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취합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CFO의 역할이라고 보인다. 이를 위하여 ESG의 기본적 사항과 흐름 및 대응 전략에 대하여 정리한다.

2 CFO 역할에 대한 확장 요구

1) 조직 내 CFO의 위상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재무이사는 기업 내 재무 및 회계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며 최근에는 사업 재편 및 투자 전략을 수행하는 등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데이터 관리, 인력 운용, 마케팅 등에도 관여를 요구하는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거의 모든 데이터가 회계를 통해 집중되고 그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의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이 CFO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CFO는 기업의 재무 정보를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주된 대상이 바로 주주이다. 물론 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Form 20-F라는 형태로 공시되며 한국의 사업보고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구성과 내용이 어찌면 이해관계자에게 연애편지를 쓴 것처럼 보인다.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유명한 기업의 Form 20-F를 한 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CFO는 정보 제공 전에 정보가 생성되는 과정과 발생 원인에 대한 통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것이 잘 알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이다. 한국어로 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하니 쉽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영어 표현을 직역하면 재무관련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이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표이사를 견제하고 지원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CFO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기업의 소유주(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수족과 같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연의 자세로서 지원하는 측면만 강조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사실상 외면하는 상황이 기업에 큰 생체기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표이사과 CFO는 상하관계 이전에 동반자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2) 기업의 모든 분야 만렙

만렙은 한자의 만(滿, 가득찰 만)에 영어의 'Level'을 합성한 신조어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캐릭터의 레벨이 최고점에 도달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업의 다양한 분야를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CFO는 회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만렙이 되어야 한다.

국내 변신로봇을 주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의 CFO 방에는 변신로봇이 가득 전시되어 있고 최근

출시한 신제품은 책상 위에 어지럽게 굴러다니고 있었다. 일부러 부러뜨린 것도 보인다. 임원 회의에는 신제품이나 가장 잘 판매되는 변신로봇이 각자의 자리 위에 준비되어 있다. 누가 더 빨리 변신시키는가로 회의를 시작한다. 그 기업의 CFO는 항상 1등이라고 자랑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분은 자기 회사의 제품 하나 하나에 대한 통찰력과 애정이 만렙인 것이다. 변신로봇을 가지고 놀다 보면 제품의 개선점, 아이들에게 위험한 점 등을 찾아낼 수 있다. 이를 제품 개발부서에 전달하여 개선 요구한다고 한다. 그리고 장난감은 누가 고르는가? 아이들이? 결국은 부모의 눈에 들어야 한다. 그 CFO는 부모의 눈으로 그 장난감을 바라보며 내 아이에게 사줄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했다. 이는 마케팅이다. 이 정도의 만렙이어야 한다. 모 인터넷 게임회사에서는 특별히 업무가 많지 않은 날 재무회계팀은 CFO를 포함하여 자기 회사가 출시한 게임으로 시합을 한다. 그 CFO는 1등 하기 위해 집에서 밤새워서 연습한다고 했다.

CFO는 어쩌면 대표이사만큼이나 기업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영업과 기업의 성장이 주요 목적일 것이나 CFO는 영업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분야도 중요하다. 국내 기업의 정서상 대표이사가 실적이 부진 한 경우 CFO를 질책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된다. - 아니 내가 장사하나 왜 나에게 핀잔을 주지 - 라고 불멘 소리하는 CFO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표이사와 CFO가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외국과 달리 상하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이라도 대표이사의 쓴 소리는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통상 CFO는 한 발 물러서 있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인 영업과 생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

영업은 영업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최고의 리더일 것이다. 영업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매출이다.营业을 쉽게 말하면 기존에 판매하는 곳에는 더 팔고 새로운 고객을 더 모셔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CFO가 반드시 관여하여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기존 매출처의 신용의 한계는 잘 유지되고 있는지? 신용에 변화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 나. 신규 매출처의 발굴이 우리 기업의 생산이나 서비스 역량에 여유가 있는지? 없다면 설비 확장이 필요할 것이며 그 타당성 평가는 어떻게 할지?
- 다. 신규 시장 창출에 어떠한 투자를 하여야 하며 그 투자의 결과는 어떠한지? 신규 시장 창출은 적지 않은 투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 라. 영업 전략 수립을 위하여 경쟁사와 비교 분석을 할 때 영업 역량뿐만 아니라 재무 등의 역량도 검토하여 시장에서 기업이 선두에 설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영업과 관련하여 CFO가 관여하여야 하는 부분은 상기 나열한 것 외에도 무수히 많다. 영업의 결과는 매출이며 그 매출이 기업에 회수되는 과정은 매출채권의 회수이다. 매출채권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회계는 대손을 인식한다. 영업팀의 매출 상승을 위하여 수행한 결과가 매출의 성장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중국에는 무리한 영업 확장 등으로 대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중요한 현금 회수가 안 되는 결과가 벌어진다.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생산회의에 참여한 CFO는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여야 할까?

- 가. 생산은 장단기 시장 전망에 따라 스케줄링 되어야 한다. 무작정 생산만 하는 기업은 없다. 잘못된 생산 계획은 불필요하게 자본이 묶이는 운전자본 과다 투입 즉, 과다 재고자산(제품, 원재료 등)의 보유로 이어지고 중국에는 재고자산의 폐기와 감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 나. 생산에는 다양한 비용이 투입이 된다. 변동비 외에도 회피 불가능한 고정비는 항상 발생한다. 그러므로 최적의 생산 스케줄은 기업의 이익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 다. 생산량을 확대시킬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이 설비투자이다. 설비투자에 대한 필수적인 타당성 검토는 CFO의 몫이다. 적기의 설비 투자와 생산은 시장이 확대될 때 영업의 성과를 현실화 시킨다. 적절한 예측과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생산에도 CFO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역량을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재무분석에서 총자산회전율은 기업의 영리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표이며 이는 투자와 기업 자원의 선순환을 보여준다. 좋은 영업이익율을 바탕으로 총자산회전율이 좋다면 높은 성과 창출과 빠른 현금의 증가로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인사분야에도 CFO는 관여하여야 한다.

- 가. 적절한 인원 수를 측정하고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 이는 결국 기업의 고정비용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 나. 최근에는 비 정규직 노사 문제가 아직도 어지럽게 혼란스럽다. 이는 인원의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인사관리에 기업의 비용 문제가 항상 관련되어 있다.
- 다. 잘 훈련된 직원을 지속적인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성과평가도 필요하다. 이러한 성과평가는 CFO의 기본 업무이다. 공정한 평가에 기한 성과급이 핵심 인재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의 평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준다.
- 라. 퇴직급여의 경우 기업 재무적 관점에서 가장 유리하면서도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도 인사분야에서 CFO가 관여해야 할 부분이다.

총무 업무는 어떠한가? 역시 기업 자산의 유지 보수 문제도 기업의 비용으로 귀결된다. 또한, 적절한 유지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듯 CFO는 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주변을 보면 대표이사로 영전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며 특히,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기업의 상당한 분야에 만립인 CFO들이다.

3 변화하는 시대와 CFO의 노력

미국에 한 달 동안 거주할 일이 있어서 한국 브랜드 차를 빌린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모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 차가 도로에 너무나 많이 보였다. 결국 인간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너무나 유명하다. CFO는 현재 수행 중인 임무와 관련된 것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 반드시 관심을 넓혀야 한다.

유럽에 업무 차 출장을 가서 주말을 보내게 된 행운이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 고속열차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갔다. 그 유명한 루브르박물관을 모두 다 보겠다는 욕심이였다. 다 둘러보는데 일주일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서둘렀다. 체력에도 자신이 있었다. 결국 경보 시합하듯이 빠른 걸음으로 모두 둘러보았다. 뿌듯한 마음으로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 지쳐서 잠들었다. 일어나 어제 무엇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냥 낯선 곳을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다 문득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였다. 한 달 아니 일 년을 주어도 제대로 다 보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작품 하나하나에 관련된 역사적 배경, 예술적 이해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은 관심과 애정 어린 학습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현상과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리고 꾸준히 학습하여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CFO의 본연의 업무에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기업이 만나게 될 복병에 대응할 수 있다.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이 현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현재로서는 모호하고 미래에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필두에 서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염병(COVID-19), 언택트 사회, ‘어스2’같은 메타버스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도태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세계로의 변화는 다분히 무정부주의(Anarchism)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관련 변화나 새로운 기술들이 현재는 제도화된 정치조직, 권력, 사회적 권위에 직접적인 도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최근 가장 직접적으로 무모한 도전장을 내민 것은 암호화폐이다. 암호화폐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의 도전이 아니라 그 암호화폐를 이용하거나 신봉하는 지구상 일부 구성원들의 반란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이 금지되었다.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도피성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화폐는 유통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와 관련하여 유통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현행 화폐 유통의 초기 디지털 방식 사업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화폐는 국가권력과 분리할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와 그와 대립되는 경제체제 모두 화폐 발행권은 국가 또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화폐에

대한 신용보장기구가 필요하고 국가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면을 보면 화폐 발행이 국가 권력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현대 경제는 이러한 화폐 발행과 유통 관리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미국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을 포함한 통화 정책과 외환정책은 매스미디어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화폐가 결국 현재 세계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화폐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암호화폐가 몰고 온 파장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주요 국가에서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및 준비를 하고 있다. 디지털화폐의 영향은 과거 금융실명제가 경제에 미친 영향과 비교할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바다를 알고 싶는데 해변의 조개껍질을 줌고 기뻐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인 파급력은 디지털화폐가 바다라면 금융실명제는 조개껍데기이다. 디지털화 영향은 무정부주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Democracy가 아닌 관료주의Burocracy 세상 지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의 일상과 기업 활동에 국가가 발행한 디지털화폐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미래의 결과를 가져올지 꾸준히 탐색하고 분석해야 한다.

한국에 2020년 1월경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벌써 1년 반이 넘었다. 환자가 증가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매스미디어 정보를 정리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무던히 고민했다. 그리고 엄청난 기대도 했었다. 2020년 상반기부터 국내 제약사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노력을 바라보면서 만약 한국의 어느 제약사가 백신을 만든다면 또 치료제를 만든다면 아마도 세계적인 제약사가 탄생하지 않을까 가슴 떨리는 기대도 했었다. 이렇듯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한 현상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인간의 삶에 미치는 내용과 그것이 기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 그 결과는 지진해일(일명 쓰나미, Tsunami)처럼 순식간에 세상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측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을 읽어야 하는 의무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의 몫이다. 그 중에 CFO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모든 정보는 CFO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회계에는 생산, 판매 등 기업의 모든 활동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CFO는 다양한 분야의 흐름을 특정 시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 파악한 내용을 정리하고 장단기 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예측이 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의 현재 상황을 회계에 기대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내부적인 기업 상황의 변화 추이, 주변 환경(경쟁사 등)과 비교 분석한 추이 등을 이해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하여 준비해야 한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회계를 통하여 제공된다.

II

회계

|

안진회계법인 김기현 파트너

1. 회계	1) 존재 가치	18
	2) 회계는 과거인가?	18
	3) 전세계가 이해하는 문법의 언어	19
	4) 회계기준에 대한 일관된 이해 방식	20
	5) 개별 기준서상 다양한 측정의 문제	24
	6) 특수사항	31
	7) 계속기업	35

2. 회계의 목적	1) 재무관리의 출발점	37
	2) 숫자를 보지 말고 그 의미를 읽어야 한다	39
	3) 상황 파악	41
	4) 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42
	5) 시장의 시선	45
	6) 회계 경쟁력	45

3. 회계로부터의 도피	1) 어제까지의 IR은 버려라	47
	2) 분석은 필요한가?	47
	3) 팬데믹	48
	4) 예술분야에 관심을	49

1 회계

1) 존재 가치

도대체 회계가 왜 존재하는가 한 번쯤 반문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보통 우리는 최종의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진정한 존재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절차와 규정에 얽매어 업무를 처리한다. 그렇다 보니 타성에 젖어 일을 하고 발전이나 혁신은 먼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회계의 존재 가치는 기업의 정보이용자들을 위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이 되고자 이론적인 연구가 거듭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두로 하여 그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한 기준이 유지되도록 국가가 인정한 권한 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항상 관리 감독하고 있다.

회계는 결국 아주 세련되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객관적이고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생성된 응축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정보는 이용자가 있을 때 존재 의의가 있다.

2) 회계는 과거이다?

모든 정보가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현재 상태만을 보여주고 있다. 회계가 가지는 한계로 많이 지적되는 문구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아니다. 대표적인 결과물인 재무제표와 회계정보는 기업의 미래 자원 유출과 유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여러 가지 주변을 관찰하고 예측하여 가공된 수치로 회계에 반영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연법인세, 각종 충당금, 자산의 공정가치, 복구와 관련된 비용 등이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이러한 미래와 관련하여 각 기준서의 목적 문단에서 추출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012호 법인세: 이 기준서의 목적은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법인세회계의 주요사항은 다음 항목의 현재와 **미래** 세효과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1019호 종업원급여: **미래**에 지급할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를 인식

제1037호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재무제표이용자가 총당부채 등의 특성, **발생 시기**,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서 발생하는 재무제표 금액을 식별하고 설명하며, 인식한 모든 탐사평가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확실성을 해당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유용한 사항의 공시

제1109호 금융상품: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무보고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인식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공시

상기 박스 안의 내용에 - 미래 - 라고 적시를 하고 있다. 결국 회계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기업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미래라는 표현은 잘 보면 현금흐름이라는 단어와 같이 자주 등장하거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과 관련되어 있다.

3) 전세계가 이해하는 문법의 언어

언어는 각기 다른 문자와 구조(문법)적인 차이가 많다. 그래서 어렵다. [매출채권 1,000,000 / 매출 1,000,000], 이 간단한 분개를 이해하지 못하는 회계분야 종사자는 없다. 여기서 한글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변경하면 해당 국가의 회계분야 종사자도 이해한다. 그러므로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간단한 분개가 가지는 정보는 다양하다. 예시로 든 간단한 상기 분개는 거래처, 거래품목, 일자, 채권 회수 기간, 거래단가, 거래수량 등 많은 정보의 압축적 표현이다. 이러한 정보를 각국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간단한 분개와 그 분개가 포함하는 단어 나열식의 정보만으로 많은 정보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아쉽게도 회계는 국가별로 조금씩 달리 제정되어 차이가 있다. 비슷한 문법구조(회계처리 방식)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차이로 공통의 관심사를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글로벌화된 세상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투명성 신인도 등의 이유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했다.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Global Standard for

Global Market¹에서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대 경제는 국경 간 거래와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에 의존하며 모든 금융 거래 3 분의 1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발생하며 그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는 전 세계에서 다각화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반면, 기업은 자본을 조달하고 거래를 수행하거나 여러 국가에 해외 사업 및 자회사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국가 간 활동이 여러 국가가 자체적인 국가 회계기준을 유지하는 이유로 복잡했다. 이러한 각국의 조각난 회계 요구 사항은 종종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복잡성을 키운다. 궁극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과 투자자 및 이러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위험을 증가시켰다.

각 국가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이 다른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제거하려면 각 국가 회계 표준의 세부사항을 연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작은 차이라도 기업의 보고된 재무 성과 및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기업은 특정 국가의 회계기준에서는 이익으로 인식하나 다른 국가에서는 손실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4) 회계 기준에 대한 일관된 이해 방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하여 대부분이 어렵다, 복잡하다는 평이 많다. 특정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아직도 논쟁거리가 되고 확정된 기준이 없는 분야도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원론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선택지가 많아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잘못 해석 적용하는 오류도 많이 관찰된다.

회계사 생활을 25년 정도 했지만 요즘의 회계는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서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농담이 있다. 자격증을 증명하는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이 한 장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특정

1) Modern economies rely on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the free flow of international capital. More than a third of all financial transactions occur across borders, and that number is expected to grow. Investors seek diversification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across the world, while companies raise capital, undertake transactions or have international operations and subsidiaries in multiple countries. In the past, such cross-border activities were complicated by different countries maintaining their own sets of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is patchwork of accounting requirements often added cost, complexity and ultimately risk both to companies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and investors and others using those financial statements to make economic decisions. Applying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meant amounts reported in financial statements might be calculated on a different basis. Unpicking this complexity involved studying the minutiae of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ecause even a small difference in requirements could have a major impact on a company's reported financi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osition—for example, a company may recognise profits under one set of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losses under another.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을 읽었을 때 해독하고 적용하는 능력의 차이 정도를 종이 한 장에 비유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러한 평들이 있는 이유는 미래의 현금창출 능력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측정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 때문이라고 본다. 객관적인 측정은 쉽지 않고 누구나 수긍하는 측정 값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준서에서 측정에 대하여 표준화를 많이 고민한다. 한편으로는 개별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각기 조금씩 그 특징을 반영하여 측정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주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 일관된 방식을 알면 크게 복잡하지 않다. 각 기준서의 목차를 보면 1) 인식과 제거, 2) 측정, 3) 표시와 공시 3가지가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측정이다.

(1) 인식과 제거(Recognition and derecognition)

인식 Recognition은 회계사건으로 발생한 결과물을 재무제표 구성항목 즉,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과 비용 중에서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5장 인식과 제거에서 인식 절차 문단(5.1~5.5)에 그 정의가 잘 나타나 있으며 대표적인 문단은 다음과 같다.

5.1 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인식은 그러한 재무제표 중 하나에 어떤 항목(단독으로 또는 다른 항목과 통합하여)을 명칭과 화폐금액으로 나타내고, 그 항목을 해당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합계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제거 Derecognition은 인식된 자산 부채를 삭제하는 것이다.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의 요소와 관련 있다. 제거의 결과는 손익계산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5장 인식과 제거에서 제거 문단(5.26~5.33)에 그 정의가 잘 나타나 있으며 대표적인 문단은 다음과 같다.

5.26 제거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다. 제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이 더 이상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중략>

5.28 (1) 만료되었거나 소비, 회수, 이행 또는 이전된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

(2) 측정(Measurement)

측정(Measurement)은 재무제표에 인식된 요소들이 화폐단위로 수량화 되는 과정이다. 측정 대상 항목의 속성(역사적원가, 공정가치 또는 이행가치)에 따라 측정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6장 측정 문단 6.2에 따르면 재무정보의 질적특성과 원가제약(측정을 위하여 투입하는 제반 자원의 한계)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정기준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준서는 이러한 측정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6장 측정 문단 6.3에서 기준서가 제시하여야 하는 기본 방향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6.3 개별 기준서에는 그 기준서에서 선택한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기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기술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1) 특정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측정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해야 하는 기법의 명시
- (2) 우선하는 측정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순화된 측정 접근법 명시
- (3) 측정기준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의 설명(예: 기업이 부채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자신의 신용 위험)의 영향을 부채의 이행가치에서 배제)

측정은 크게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 측정과 현행가치(Current value) 측정으로 분류되며 현행가치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이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6.11 현행가치 측정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공정가치(Fair value, 문단 6.12~6.16 참조)
- (2) 자산 사용가치 및 부채 이행가치(Value in use & Fulfilment value, 문단 6.17~6.20 참조)
- (3) 현행원가(Current cost, 문단 6.21~6.22 참조)

재무제표의 인식 요소(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를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화폐적인 정보가 포함되며 이를 역사적 원가라고 한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역사적 원가 방식보다 현행가치 방식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 각 계정에 대한 기준서 별 다양한 방식을 요구함에 따라 각 기준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회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정가치

공정가치(Fair value)는 시장 접근법이다.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나타나는 가격을 관찰하여 기업이 소유한 자산 부채를 측정하는 것이다. 기업 외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현행가치를 추출하여야 한다.

② 자산 사용가치 및 부채 이행가치

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가치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자산은 사용가치(Value in use) 부채는 이행가치(Fulfillment value)로 표현한다. 각 기업의 특성이라는 것은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된 미래 현금흐름 또는 유입/유출되는 경제적 가치의 현재가치는 그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다.

같은 유형의 자산 또는 부채라도 기업 간 현금흐름이나 유입되는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면 그 측정치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다분히 그 기업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설비를 투자한 경우에도 그 기업의 경영자 및 자원의 활용 등의 차이로 다른 현금흐름을 보이기 마련이고 그 설비에 대한 사용가치는 달라진다. 그러나 공정가치는 같은 설비라면 시장에서 같은 가치로 거래가 될 것이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통상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그 기업 특유의 자산비용(통상 WACC) 또는 자본비용(ROE)으로 할인하여 산출한다. 다양한 가정과 예측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 적용된 가정과 예측에 대한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③ 현행원가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측정되거나 측정일 현재의 동등한 자산의 원가와 거래원가를 합한 것이다. 부채의 경우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를 발생시킬 시장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통상 공정가치보다 시장참여자가 다수인 활성시장이 많지 않아서 원가를 직접 관찰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다.

(3) 표시(Presentation)와 공시(Disclosure)

표시와 공시는 이해관계자들과 기업이 소통하는 방식과 관련 있다. 소통의 방식이 다양하듯이 표시와 공시도 각 기업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각 기업에 대한 개개의 이해기준이 필요하고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해치게 된다. 그래서 기준서는 재무제표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과 공시하는 방법을 표준화 하고 있다.

표시와 공시를 회계기준에 포함하는 이유는 회계정보가 재무제표에서 효과적으로 소통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와 공시의 방식의 원칙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7장 표시와 공시 문단 7.2에서 다음과 제시하고 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7.2 재무제표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소통되면 그 정보를 보다 목적적합하게 하고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는 재무제표의 정보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킨다. 재무제표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소통되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 (1) 규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표시와 공시의 목적과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
- (2) 유사한 항목은 모으고 상이한 항목은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분류한다.
- (3) 불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과도한 통합에 의해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되지 않도록 통합한다.

5) 개별 기준서상 다양한 측정의 문제

(1) 금융상품

금융시장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금융상품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꾸준히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모두 포섭하기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기준서도 하나에 그치지 않고 여러 기준서로 편제되어 있다. 영미법 상 기준서 번호는 한국의 법이나 기준서와 달리 일관된 번호 부여가 아니다.

아래 표를 자세히 보면 제1109호와 제1032호가 기본이며 나머지는 이를 보완하는 기준서(제1107호)이거나 제·개정으로 경과 내지 선택 규정으로 남은 기준서(1032호)이다. 한국에서 제정된 일반 기업회계기준은 두개의 장으로 혼란스럽지 않게 편제되어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제1109호 '금융상품'의 규정을 보완하는 기준	제0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5장 자본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 자산과 부채 재무보고 원칙,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정보 제공 관련 해석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 출자전환에 대한 규정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부채나 자본으로 금융상품을 표시하는 원칙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필요한 원칙을 정하는 것과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 '금융상품: 공시'의 규정을 보완하는 기준 관련 해석서: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제정되기 전 기준서로 현재는 일부만 유효한 기준서이며 이자율 익스포저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등에 대한 기준	

금융상품 관련 측정Measure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며 제1039호는 보조적 기준서이다. 기준서 제1109에 따르면 금융상품 측정은 거래가격으로 측정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문단 5.1.1).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은 상각후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문단 5.2.1).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4.2.1 및 4.2.2). 이러한 측정의 결과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제5.5절 손상).

금융자산의 측정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기타 계정 관련 측정

일반적인 자산의 측정과 그 결과,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처리하는 손상문제는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제1036호가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정과목 수준의 기준서에서 다양한 측정 방식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비슷한 비유동자산인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과 매각이 예정된 자산의 경우는 측정 방식이 거의 같으나 세부적인 차이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제1036호 자산손상	제20장 자산손상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기준서 제1113호는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와 측정 체계를 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기준보상거래(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 리스거래(기준서 제1116호 리스) •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p>공정가치의 정의는 기준서 제1113호 문단 9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라고 하며 시장참여자는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act in their economic best interest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의하고 있다.</p>	

- (1) 주된 시장Principal market: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빈도가 가장 잦은 시장
 [비교] 활성 시장Active Market: 부채와 지분상품의 경우 활성시장 개념을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공시가격]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 (2) 가장 유리한 시장The most advantageous market: 거래원가나 운송원가를 고려했을 때, 자산을 매도할 때 받는 금액을 최대화하거나Maximize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Minimize 시장

기준서 제1036호의 경우에는 모든 자산의 손상에 적용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배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기 손상에 대한 측정 및 인식 기준을 각기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재고자산(기준서 제1002호)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기준서 제1115호)
- 이연법인세자산(기준서 제1012호)
-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기준서 제1019호)
- 금융자산(기준서 제1109호)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기준서 제1040호)
-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기준서 제1041호)
- 이연신계약비와 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에서 생기는 무형자산(기준서 제1104호)
-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기준서 제1105호)

손상과 관련된 자산은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회수가능가액은 다음의 산식이 기본이다. 아래의 공정가치는 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한다.

$$\text{회수가능가액} = \text{MAX} [(\text{공정가치} - \text{처분부대원가}), \text{사용가치}]$$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제19장 주식기준보상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 상의 공정가치는 기준서 제1113호의 공정가치와 달리 적용한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 매도 부채 이전과 관련한 가격이나 Stock option관련 거래는 이러한 시장과 거래가 없다.</p> <p>주식결제형 주식보상 공정가치 평가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여야 하며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할 경우에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측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의 공정가치에 지분상품의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p> <p>현금결제형 주식보상 공정가치 평가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p>	

<p>제1103호 사업결합</p>	<p>제12장 사업결합 제32장 동일지배거래</p>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지만 문단 18에서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 종업원급여, 보상자산,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 다시 취득한 권리, 주식기준보상거래, 매각예정자산에 대하여는 예외 측정 규정을 두고 있다.</p> <p>본 기준서는 문단 2 (3)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여부 판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동 기준서 부록 B를 주목하여야 한다.</p> <p>문단 B3 어떤 기업을 개인이 지배하거나 계약상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행동하는 개인집단이 지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개인이나 개인집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요구한 재무보고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과 관련한 사업결합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결합참여기업이 같은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p> <p>문단 B4 사업결합 전후의 각 결합참여기업의 비지배지분의 정도는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과 관련한 사업결합인지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 또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어 왔던 종속기업이라는 사실도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과 관련한 사업결합인지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p> <p>[일반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동일지배하의 사업 또는 기업 결합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현재 없다. 따라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목적 문단 (2) 특정 거래/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을 때 기업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p> <p>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면서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장부금액법(아래 문단 32.9), 취득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공정가치 인식과 유사) 및 새출발법(취득법 적용 및 인수자의 자산/부채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식)을 고민하였으나 취득법과 새출발법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비용이 기업에 부담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p> <p>문단 32.9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의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p>	
<p>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p>	<p>제16장 수익</p>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 문단 46은 수익 측정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p>	
<p>제1116호 리스</p>	<p>제13장 리스</p>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 문단 23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문단 29 다른 측정모형(문단 34와 35)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p>	

제1002호 재고자산	제07장 재고자산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 문단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취득원가(장부가액)과의 차이는 문단 34에 따라 발생기간에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한다.</p>	
제1012호 법인세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제22장 법인세회계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 문단 46에서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며 문단 47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고 요구하고 있다.</p> <p>아울러 문단 53에서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한다 - 라고 하고 있다.</p>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제21장 종업원급여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 문단 16에서 단기종업원급여 중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 유급휴가가 누적되어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금액을 측정하며 문단 52에 따라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간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즉, 종업원이 퇴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문단 83의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율을 참조하여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하여 측정한다.</p> <p>확정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는 복잡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기초하여 문단 57에 따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p>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 문단 23에서 정부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한다. 경우에 따라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기도 한다.</p>	

<p>제1023호 차입원가</p>	<p>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p>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p> <p>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p> <p>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1037호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총당부채의 변경 제2105호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제2121호 부담금</p>	<p>제14장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p>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 문단 36에 따르면 총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The best estimate이어야 한다.</p>	
<p>제1016호 유형자산</p>	<p>제10장 유형자산</p>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 문단 15에서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은 문단 29에서 원가모형(감가상각과 손상차손 차감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재평가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p> <p>본 기준서 문단 26에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p> <p>(1)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유하여 유의적이지 않다. (2) 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 확률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p>	

<p>제1040호 투자부동산</p>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 문단 20에서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는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고 하여 유형자산과 유사하다. 인식 후의 측정은 공정가치모형이나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는 유형자산의 경우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p> <p>다만,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도 문단 32A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다른 투자부동산에 채택된 모형과 독립적으로 공정가치모형이나 원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제1038호 무형자산 제2032호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p>	<p>제11장 무형자산</p>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 문단 24에 따라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하며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재평가 목적상 공정가치는 유형자산과 달리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단 78에서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흔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주기적 재평가는 유형자산과 동일한 구조이다.</p>	
<p>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p>	<p>제28장 중단사업</p>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측정]</p> <p>본 기준서 문단 15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그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p> <p>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손상차손과 차이는 사용가치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각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p>	

6) 특수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 기준서의 역할을 하지 않지만 개념적인 근거와 기타 지침서 및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준서를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특수한 기업이나 거래 형태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서에 대한 핵심 개념이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전자는 주로 재무 보고(Financial reporting)와 관련되고 후자는 일반적인 기업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것이다.

(1) 재무 보고와 관련된 기준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회계개념체계 제01장 목적, 구성 및 적용
<p>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며 회계기준이나 그 요구사항에 우선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p> <p>(1) 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회계기준을 제/개정하는데 도움이 된다.</p> <p>(2) 특정 거래/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을 때 기업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p> <p>(3)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p>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제1108호 영업부문	
<p>본 기준서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과 관련된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는 기준이다.</p>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04장 연결재무제표
<p>본 기준서는 지배기업이 피지배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이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배기업의 지배력(Control)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p> <p>문단 7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p> <p>(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Power over the investee)</p> <p>(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Exposure, or rights, to variable returns from its involvement with the investee)</p> <p>(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The ability to use its power over the investee to affect the amount of the investor's returns)</p>	

<p>제1111호 공동약정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p>	<p>제08장 지분법 제09장 조인트벤처 투자</p>
<p>기준서 제1028호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Associates이나 공동기업Joint ventures에 대한 투자Investments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에 대한 문단은 다음과 같다.</p> <p>문단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Holding 20% or more of voting power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p> <p>문단 6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Represent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or equivalent governing body of the investee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es, including participation in decisions about dividends or other distribution (3)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Material transactions between the entity and the investee (4) 경영진의 상호 교류Interchange of managerial personnel (5)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Provision of essential technical information 	
<p>제1027호 별도재무제표</p>	
<p>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이다. 본 기준서는 어떤 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Stand-alone으로 재무제표를 관련 법규에서 요구되거나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라고 표현한다.</p> <p>이러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 3가지 기준서 중 선택하게 하고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가법 적용 (2)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 (3) 기준서 제1028호 지분법 적용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0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제0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0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제23장 환율변동효과
제1024호 특수관계자공시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제1033호 주당이익	제26장 기본주당이익
해당사항 없음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국제회계기준 실무서1 ‘경영진설명서 작성을 위한 개념체계’ 번역서	
<p>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된 유용한 경영진 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책자 말미에 번역서 형태로 첨부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지침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작성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p> <p>결론도출근거 문단 BC5 정부, 증권 감독기구, 증권거래소 그리고 전문 회계관련기구는 종종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에게 경영진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경영진설명서는 각 국가에서 경영진 논의와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MD&A, 영업과 재무검토(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 OFR, 사업검토서 또는 경영진 보고서라고 말하는 보고들을 아우르는 것이다.</p>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	
<p>기업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중요성 판단에 대한 비 강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p> <p>2021년 6월에 회계기준원에서 K-IFRS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1001호의 공개 초안이 발표되었다. 2023년 1월 이후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고 한다.</p>	

특이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회계 정책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문안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문구는 최소화하고 필수 재무 정보만 공시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그간 기업들이 회계 기준 위반을 염려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표준문안Boilerplate’ 등을 무조건적으로 옮겨 쓰는 관행이 강했다. 재무제표 주석에 실는 ‘중요한 회계 처리 방침’ 항목이 대표적이다.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는지 설명한 항목인데 형식적인 문구가 많아 재무제표 작성자들이 관습적으로 ‘복사·붙여넣기’하는 구절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분량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정보 위주로 선별해서 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한편 (기준처럼) 체크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전부 주석 공시할 것이라고 보는 예측하는 시각도 있는 상황이다.

(2) 특수 분야 등의 기준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04호 보험계약	
<p>본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보험자)의 재무보고를 규정한다.</p> <p>보험관련 회계기준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로 새로이 채택이 되며 2023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보험회사는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주요 회계정책 변경, 도입준비 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p> <p>관계기관은 이와 관련된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관련 업계는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p>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Regulatory deferral account balances	
<p>본 기준서는 요율규제rate-regulation을 받는 기업에 대한 재무보고를 규정한다. 기업의 재화나 용역의 가격(요율)이 규제자에 의하여 감독되고 승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p> <p>규제이연계정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될 수 없었을 비용이나 수익이지만,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율을 설정할 때 요율규제자에 의해 포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 조건을 갖춘 비용(또는 수익) 계정의 잔액이다.</p>	

제1041호 농림어업	제27장 특수활동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p>본 기준서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재무보고를 규정한다. 문단 8에서 탐사평가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문단 12에 따라 자산 인식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p> <p>탐사평가자산의 손상가능성은 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 기준서 문단 20에 따라 탐사평가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다만 손상차손 인식 방법은 기준서 제1036호를 따르게 되어있다.</p>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 공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국제회계기준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한국 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7) 계속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수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수행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다. 개념체계 제3장 문단 3.9에서 계속기업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3.9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Cease Trading)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 그러한 의도나 필요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닌)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라면,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한다.

계속기업의 가정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감사의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 아니 회사의 미래는 경영자가 책임지는 것 아니요? 왜 회계사가 회사의 미래가 있다 없다 결정합니까? - 분노에 찬 하소연이다. 회계원리의 교과서에서 재무제표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Stock 개념(정적인 개념)으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Flow 개념(동적인 개념)으로 일정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기간의 재무상태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여하간 하루만 지나도 어떤 재무제표이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치부된다. 회계는 과거가 아니라고 앞에서 정리하였다. 하소연하던 분도 회계감사를 하는 사람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회계처리가 적정한지만 보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계속기업 가정에 기한 의견거절 등을 이야기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된다.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기업의 경영이나 그 성과가 좋다 또는 적절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적절히 작성되었다는 뜻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듯 계속기업의 가정에 기한 의견거절이 뜻하는 바는 기업의 미래 또는 경영자의 경영활동이 불투명하다던가 즉, 쉽게 말해서 망할 것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기준은 근본적인 가정이 있다.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그 기업의 경영활동도 영구히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할 때만 현존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계속기업의 가정에 기한 의견거절은 현행 회계처리 기준으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제시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현존 회계처리기준에 기대어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 아니 그 말이 회사가 망한다는 것 아니요? - 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하여 외부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는데 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읽어보아야 한다.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2018년 10월 10일 의결하고 금융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19일 승인한 회계감사기준의 감사기준서 705를 참고하면 된다.

2 회계의 목적

1) 재무관리의 출발점

재무관리는 CFO의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임무이다. 기업의 모든 활동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관리의 뿌리를 학문적으로 찾아 간다면 경제학이다. 경제학은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으로 나뉜다.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연구이며 미시경제학은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미시경제학에서 하나의 주체인 기업 부분만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간 실용적인 학문이 경영학에서 배우는 재무관리이다.

모든 경제 현상 중에서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유다. 현재와 급변하고 복잡해지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민첩성을 갖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과거의 경제상황과 경험한 사건에 대한 정보도 잘 관리하여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많지만 요즘 전기차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시행 착오적인 역사적 사실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마차의 관계를 언급하는 사례는 많이들 알고 있다.

최고의 재무관리는 한마디로 Lead and lag이다. 받아야 할 것은 최대한 빨리 받고 주어야 할 것은 최대한 늦게 주어야 한다. 여기서 ‘최대한’ 이란 용어는 반드시 필요한 말이다. 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규제를 벗어나면 다른 위험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관리는 최종 목적이 투자금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현금 창출의 속도와 양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가 잘되는지 여부를 재무제표가 보여준다. 재무상태표를 유심히 살펴보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간이 지나야 현금화되는 자산이 있다. 현금화되는 과정이 1차원적으로 눈에 보이 듯 바로 현금화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많이 있다.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표시된 모든 자산은 최초 출발에 있어서 현금이 아닌 것이 없다. 대변은 이러한 자산의 본래의 모습인 현금의 출처를 표시할 뿐이다. - 어! 매입채무는 현금의 출처가 아니라 원재료를 구매하고 나서 갚아야 할 것을 표시한 것 아니냐 - 맞지만 잘 생각해보면 원재료라는 자산의 현금 출처이다. 만약 은행가서 돈을 빌려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원재료를 구입하는 출처는 차입금이다. 거래처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현금화되는 대표적인 것이 생산 등에 기여하는 고정자산 등이 그렇다. 현금으로 설비를 구매하고 고정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서 원가에 반영된다. 이러한 원가는 매출을 통하여 현금으로 다시 회수된다.

현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곳곳에 나타나며 각 기준서의 목적

문단에서 추출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그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제1007호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이용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 및 현금흐름의 시기와 확실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적시성과 신뢰성이 있는 중간재무보고는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재무상태 및 유동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037호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재무제표이용자가 총당부채 등의 특성, 발생 시기, 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인식한 모든 탐사평가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확실성을 해당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유용한 사항의 공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무보고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과 그 지분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인식된 모든 규제이연계정잔액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공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 기준서의 목적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적용할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제1116호 리스: 이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리스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

목적 문단에 여러 번 현금 또는 현금흐름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 유동성의 최고 정점인 현금이 재무 관리의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이다. 흑자는 은행원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현금을 적절히 투자자산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기업에 있어서 현금보다 중요한 자산은 없다. 흑자도산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가장 위험이 적고 즉각적인 재무관리가 현금관리이기 때문이다.

현금이 가장 위험이 작은 자산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현금도 인플레이션 위험, 환율 위험 등 고난이도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 부분은 별도의 영역으로 남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목적 문단들에서 나타났듯이 회계정보는 기업의 현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 숫자를 보지 말고 그 의미를 읽어야 한다

회계를 통한 현금관리는 회계 정보를 기초로 하여 아주 다양한 재무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고 현금의 선순환과 증대 방안을 찾는 것이며 최종의 목적이다. 기초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차입금으로 대환하는 것, 매출채권 회수를 앞당기는 것 등등 모르는 재무회계 종사자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회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고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적정하고 적시의 회계 정보는 중요하다.

재무분석의 방법은 다양하다. 그 분석을 왜 하는지? 그 분석의 결과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 분석 결과를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작은 개선 방향이라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재무분석 구조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순자산수익률} &= \text{매출액순이익율} \times \text{총자산회전율} \times (1+\text{부채비율}) = \frac{\text{순이익}}{\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times \frac{\text{총자산}}{\text{순자산}} \\ [\text{Return on Equity} = \text{Profit Margin} \times \text{Total asset turnover} \times (1+\text{Leverage}) &= \frac{\text{Net Income}}{\text{Sales}} \times \frac{\text{Sales}}{\text{Total Asset}} \times \frac{\text{Total Asset}}{\text{Equity}}] \end{aligned}$$

상기 기초 재무구조를 보면 어느 하나 회계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이 없다.

첫번째 매출액순이익율은 기업의 제품과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Quality 즉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내는 사업을 하는가(수익성 지표)를 보여준다.

두번째 총자산회전율은 기업의 사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한 것인가(활동성 지표)를 보여준다.

세번째는 기업의 자본구조를 보여주는 지표로 얼마나 재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재무 레버리지는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극단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순자산수익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부채의 수준이 높아지면 부채비용(금융비용)이 현실적으로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비용이 높아지면 이를 차감한 순이익이 악화되므로 매출액순이익율이 낮아질 것이다. 즉 기초 재무분석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기어와 같으며 기업의 모든 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보여준다.

한번은 모 중소기업 외부감사 수행 결과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대표이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 차입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 사업을 접을 때까지 이용해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생각해 보면 그분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레버리지를 하고 있었다. 재무관리를 공부하고도 개인적으로 부채는 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순간이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되도록이면 내 돈 적게 들고 비싸지 않은 남의 돈 최대한 끌여 들여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재무관리의 핵심이다.

순자산수익율은 달리 표현하면 자기자본수익율이다. 사업 투자 타당성에서 통상 사용하는 할인율 즉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상기 마지막 산식에서 마지막 분자식을 제외하면 총자산수익율로 표현이 되는 바 이것이 바로 가중평균자본비용이다.

자기자본과 부채(타인자본)의 합이 회계적으로 총자산이며 두 자본의 결합이 순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순이익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재무 레버리지이다.

재무 레버리지는 주주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으로 결국 타인자본에 대한 대가(채권자 입장의 수익율)를 낮게 가져갈수록 주주의 수익은 커지므로 타인자본을 적절히 잘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 적절히 - 라는 표현은 시장이 상기 수식대로 기계적으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발을 하나의 분개로 나타낸다면 [(차변) 현금 (대변) 자본금]이다. 결국 투자한 현금(자본)의 수익율이 기업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기업의 성장 여부, 나아가 성공 여부를 보여준다. 최소한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자기자본수익율’ 가장 최상위 재무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 기본 재무분석 구조에서 보듯이 회계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유기적 결과물이다.

회계 정보의 최종 결과값은 기업의 자본수익율이다. 자본수익율은 회계에 기반한 재무분석 대상 구성 요소들의 결과값이 모두 반영된다. 이러한 분석 대상 값들이 기업의 내부 사정 및 외부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의 내부 고유 상황 및 외적 경쟁, 시장, 규제 등의 사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분석 대상 값들을 최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CFO의 궁극적인 업무이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유명한 첫 문장은 개개인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에도 해당된다. ‘잘나가는 기업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어려운 기업은 제 각각의 원인이 있다’. 즉 회계를 통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와 정보 하나하나가 그 기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모두가 적절히 관리될 때 기업은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대부분 외부 감사보고서를 받아 들고 한 해가 갔구나 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준비와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무 분석과 그 결과값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계를 바탕으로 한 재무분석은 한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회계를 바탕으로 한 재무분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을 유기적인 구조로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고 기업 전체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

- 가. 과거 추세 분석
- 나. 산업 평균 또는 경쟁사와 비교 분석
- 다. 미래 예측(과거 추세 분석의 연장 또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단기 미래 예측)

재무분석 관련 서적들을 보면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고 그 분석 결과들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여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문제 해결과 개선 방법을 파악하여 능동적인 재무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리가 기업의 실적 향상, 튼튼한 재무구조의 형성 등을 통하여 회계정보가 건전해지고 투명해지는 결과를 또 낳는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기업이 성장한다.

재무비율 분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분석을 한다. 통상 영업레버리지, 재무레버리지 분석을 하며 기업의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으로 재무회계 보다 관리회계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추가하지 않기로 한다.

재무관리는 회계를 통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회계가 적정하지 않다면, 불투명하다면,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면 이러한 재무분석은 의미가 전혀 없을 뿐더러 잘못된 신호를 준다. 결국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투명하고 적정한 회계는 정말 중요하다.

3) 상황파악

기업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한 분석이다.

유동성 비율 Liquidity	기업의 단기 현금 여유 지표	유동비율; current ratio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당좌비율; acid test ratio = $\frac{(\text{유동자산}-\text{재고자산})}{\text{유동부채}}$ 재고자산비율 = $\frac{\text{재고자산}}{\text{총자산}}$ 과 매입채무비율 = $\frac{\text{매입채무}}{\text{총자산}}$
	중요한 것은 당좌비율이다. 재고자산이 기업에서 보유하는 운전자본 중에서 중요하기는 하나 당장 현금화하기가 어렵거나 현금화에 비용과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청산에 준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 유동부채의 해결 원천으로는 재고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비율과 매입채무비율 비교는 업무를 하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고자산 비율이 매입채무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면 분명 재고자산에 문제가 있거나 영업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업평균과 경쟁사 비교를 반드시 하길 바란다.	

레버리지 비율 Leverage	타인자본활용 적정성 지표	부채비율; Debt to equity ratio = $\frac{\text{타인자본}}{\text{자기자본}}$
		이자보상비율; Interest coverage ratio = $\frac{\text{(세전이익+이자비용)}}{\text{이자비용}}$
<p>통상 장단기 부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타인자본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지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p> <p>부채비율은 이자보상비율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필요하다.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면 타인자본을 적절히 잘 이용하고 있거나 추가 이용 여력이 있으며 사업의 확장 기회가 있다면 추가 레버리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p> <p>기업 활동이 왕성한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낮다면 현재 이용하는 타인자본의 비용이 높거나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타인자본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낮다면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나 단순히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타인자본 활용의 비효율성을 먼저 점검하여야 한다. 물론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 본 지표는 아주 악화되어 있을 것이다.</p> <p>아울러 다음에 기술된 활성화비율과 관련하여 재고자산회전을 또는 매출채권회전율이 낮은 경우(재고자산회전일수 또는 매출채권회전일수가 큼)에는 순운전자본 투자가 과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 레버리지의 성격과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즉, 순운전자본 투자가 과다하면서 차입금이 높다면 분명 레버리지의 활용에 있어서 큰 비효율이 있다는 신호이며 주로 투자 목적 차입이 아닌 운영자금 차입이 많은 기업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다.</p> <p>운영자금 차입 수준이 높고 순운전자본 투자가 크다면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 상 영업현금흐름이 낮거나 부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하여 기업의 현금 창출의 형태별 정보를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현금흐름표이며 중요한 재무제표이다.</p>		

4) 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효율성과 관련된 재무분석을 정리하기 전에 CFO 업무에 있어서 열린 사고를 바라며 효율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기업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러한 효율성을 공부하는 경영학 과목 중에는 대표적으로 생산관리가 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할 때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던 생각이 있다. 과연 효율성이 1보다 클 수 있을까? 주변에서 멍청한 생각이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대학 졸업 후 25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1보다 큰 효율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결론이다. 이런 생각을 의아해할 수 있다. 당장 효율성이 높아서 생산율이 높고 그로 인하여 기업에 이익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 사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효율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추출하는 정보의 한계를 인지하여야 한다. 통상 생산관리에서 투입이라고 하면 원재료, 설비, 인건비 등을 이야기하며 산출물은 아주 간단히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투입에 대한 정의가 맞는가? 또 산출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그리고, 이러한 투입과 산출물의 측정은 화폐경제에서는 당연히 통화로 변환되어 산술적으로 효율성이 계산된다. 그 측정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 것이다. 상대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도 절대적으로 맞을 수 없다고 본다. 즉 상대적인 효율성은 1을 넘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효율성은 1에 수렴한다고 본다.

이유는 많지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첫째, 투입이든 산출이든 측정 대상 포섭의 한계가 있다. 생산에 있어서 지구상의 대기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대기는 투입 측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인위적인 계산 방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아울러 투입된 대기가 변형되어 유출되는 산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산출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대기는 어디로 갔을까? 쉽게 생각하면 대기오염을 생각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과 탄소세라는 용어가 최근에 등장했다.

둘째, 단위는 모두 인위적이다. 특히, 화폐로 측정되는 인건비의 정당성은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기업들이 싼 인건비를 찾아서 지구촌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기업들도 해외에 제조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 하나의 원인은 아니지만 싼 인건비가 해외 투자의 원인이기도 하다. 외국인 한 사람의 노동 가치가 국내의 한 사람의 그것과 다를까? 기업의 입장에서 횡단면분석 또는 단기간의 시계열분석에 따를 때는 인건비 투입에 대한 분석과 측정이 맞을 수 있으나 영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지닌 기업의 입장에서 적절한 투입에 대한 분석인지는 의문이다.

셋째, 인간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결과물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최근에 들어서야 많이들 이야기하는 지구 온난화를 생각해보라. 지구 온난화에 대하여 산업화 시대에 고민한 적이 있는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찌면 산업화 시대에 이러한 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하여 무엇인가가 투입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 기업과 사회 화두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를 보더라도 기업에 있어서 효율성은 1에 수렴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맞다고 생각한다.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효율성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기업은 다시 한 번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ESG를 또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인다면 그 기업은 미래가 없다. 절대적 효율성이 1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효율성에 대한 이러한 반동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기업 관리를 위하여 전통적인 재무적 효율성 분석 방식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효율성 분석은 활동성비율, 수익성비율 그리고 생산성비율이 있다.

<p>활동성비율 (Turnover ratio)</p>	<p>기업 보유 자산이 현금창출 순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p>	<p>재고자산회전율; Inventory turnover = $\frac{\text{매출액}}{\text{재고자산}}$ (☞ 재고자산회전일수; DIO, Days of Inventory outstanding)</p> <p>매출채권회전율; Receivable turnover = $\frac{\text{매출액}}{\text{매출채권}}$ (☞ 매출채권회전일수; DSO, Days of Sales outstanding)</p> <p>고정자산회전율; Fixed assets turnover = $\frac{\text{매출액}}{\text{고정자산}}$</p> <p>총자산회전율; Total assets turnover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p> <hr/> <p>상기 분석의 식을 보면 분자는 모두 매출액이다. 결국은 기업 활동의 목적은 최초로 투자한 현금이 불어나서 회수되며 이는 매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회계기간 동안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산들이 얼마나 자주 회수되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p> <p>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회계가 주는 정보의 궁극적 목적은 현금 창출 능력과 시점이다. 만약 매출이 아닌 다른 방식 즉, 자산의 직접적인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회수의 경우는 분명 과잉투자 등 비효율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p> <p>물론 투자 목적으로 매매하는 자산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러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회전율을 산출하지 않는다.</p>
<p>수익성비율</p>	<p>기업 활동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p>	<p>총자본순이익율; Net profit to total assets = $\frac{\text{세전(후)순이익}}{\text{총자산}}$</p> <p>자기자본순이익율; Net profit to equity = $\frac{\text{세전(후)순이익}}{\text{자기자본}}$</p> <p>매출액순이익율; Net profit to sales = $\frac{\text{세전(후)순이익}}{\text{매출액}}$</p> <hr/> <p>가장 중요한 지표다. 상기 분석을 위한 식을 보면 분자가 모두 순이익이다. 세전 세후 기업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법인세도 최근에는 기업 활동에 중요한 비용이자 규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간 법인세율 전쟁을 치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세후순이익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특히 해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p> <p>수익성지표는 기업 외부 경쟁 환경이 비슷한 경우에 단순히 산술적 계산의 결과만 놓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산업평균과 경쟁사와 비교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p>
<p>생산성비율 Productivity</p>	<p>기업 능률지표</p>	<p>노동생산성; Labor Productivity = $\frac{\text{부가가치}}{\text{종업원수}}$</p> <p>자본생산성; Capital Productivity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p> <p>1인당 수익성 또는 매출 = $\frac{\text{총매출액 또는 세후순이익}}{\text{종업원수}}$</p> <hr/> <p>생산성은 항상 검토하여야 하며 CFO가 인사관리 등에도 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다만, 부가가치를 산출하기가 쉽지가 않다. 따라서 동 지표는 노동생산성 중에서 1인당 매출액 또는 1인당 순이익은 검토하기 바란다. 특히 서비스(용역)업에서는 노동생산성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p>

5) 시장의 시선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기업도 세상과의 소통에 있어서 시장에서 그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다음은 시장에서 기업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주요 분석 방법이다.

시장가치비율 (상장사 지표)	주당이익; EPS, Earnings per share = $\frac{\text{순이익}}{\text{발행(유통)주식수}}$
	주가/이익비율; PER, Price/Earnings ratio = $\frac{\text{주가}}{\text{EPS(주당이익)}}$
	주가대장부가가치; PBR, Price/Book value ratio = $\frac{\text{주가}}{\text{주당 순자산가치}}$
	주가수익성장성비율; PEG, Price/Earnings Growth = $\frac{\text{PER}}{\text{예상순이익증가율} \times 100}$
	초과이익; RI, Residual income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주주요구수익율)
	경제적부가가치; EVA, Economic Value added = 영업이익 - (부채를 포함한 총자본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Tobin's q-ratio = $\frac{\text{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text{기업의 실물자본의 대체 비용}}$
	상장회사라면 관리하여야 할 지표이다. 특히 산업평균 또는 경쟁사와의 비교는 필수이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그 내용을 다른 자료를 보고 습득하여 관리하기 바란다.
	PEG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주가 적정성 평가 지표라고 불리며 단기적 예상 주당순이익율에 따라 현재의 주가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값이 1보다 크면 주가의 과다평가로 반대는 과소평가로 해석을 한다.
	초과이익과 경제적부가가치는 산식 그대로 해석하면 되며 둘 간의 차이는 전자는 자기자본(주주)의 입장이며 후자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하여 기업에서 창출되는 초과이익이다.
	아울러, 마지막 토빈의 q(현 기업의 시장가치/신규 창업 투자)는 어느 기업의 시장가치보다 그 기업을 새로이 창업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더 적다면 즉 q가 1보다 크다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거나 기업에 비효율성 및 과잉투자가 많다고 해석된다.

6) 회계 경쟁력

대부분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제품관련 기술의 우수성, 그 기업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를 떠올린다. 과연 그 것만이 기업의 경쟁력일까? 회계와 재무에 있어서도 기업은 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

타 기업의 회계나 재무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구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경쟁사 및 기업이 속한 산업군의 재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우리의 회계 및 재무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경쟁사 또는 속한 산업군의 기업의 범위는 분명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해외의 기업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경쟁력은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 잘 훈련된 회계 재무 인력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다. 재무회계팀은 기업의 전략적 방향 키를 쥐고 있는 구성원이다.

3 회계로부터의 도피

1) 어제까지의 IR은 버려라

Investor relations, 상장기업에서 있어서 CFO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기업을 둘러싼 가까운 투자자만을 위한 기업 홍보는 이제 잊어버려야 한다.

그 이유의 첫째는 거미줄처럼 확대되고 다양한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관계망을 생각해보라. 투자자를 오페라 하우스처럼 좋은 강당에 모아 놓고 멋진 프리젠테이션을 하던 과거 유물은 이제 찾아보기도 어렵다. 최근 유명한 전기차 기업의 대표가 사회 통신망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에서 기업의 주식 가치가 하루만에 엄청나게 출렁이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주주, 채권자, 정부 등 투자자 및 규제기관만을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지 않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눈을 내부로 돌려서 기업의 구성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세번째 이유는 인간사회의 구성원만 이해관계자일까? 굶주림에 지쳐 어미 옆에 축 늘어진 가여운 새끼 북극곰이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기업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이유가 단지 인류의 영원한 존속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상상일 수도 있지만 발전된 기술에 기대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인간은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존속이 아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이제 'IR'이라 쓰고 기업을 둘러싼 모든 것과의 소통과 책임이라고 읽어야 한다.

2) 분식은 필요한가?

분식은 한문으로 粉飾으로 표현되며 粉(분)은 가루 형태의 화장품으로 생각하면 되고 飾(식)은 꾸미다, 단장하다, 위장하다 뜻을 가지고 있다. 분식은 말그대로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민다는 것이다. 영어로는 Manipulation으로 '교묘한 처리' 또는 '조작'으로 해석된다. 분식과 기업의 부정Fraud은 동전의 앞 뒷면이다. 부정Fraud의 결과를 회계적으로 분식하거나 선제적으로 회계분식을 이용하여 부정Fraud이 저질러 진다. 이를 우리는 회계부정Accounting Fraudulent라고 한다.

투명한 기업일수록 주가가 높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성과가 높은 기업은 분식 유혹이 적거나 이유가 없을 뿐이다. 원인과 결과가 뒤집힌 것이 아닌가 싶다. 분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과가 나쁘기 때문에 숨기고 싶거나 성과를 포함하여 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 기인한다. 그러면 분식을 통하여 그 기업은 저조한 성과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있다면 해야 한다. 기업의 생사가 걸린 상황에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리고 잠깐 분식을 통하여 회생한다면 투자자에게도 그리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좋아진 실적으로 과거의 저조한 성과를 메꾸거나 지울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까지 그러한 짜릿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

100세 시대다. 그런 한편 여러가지 이유로 임종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지만 고통스럽기만 하고 비용도 만만하지 않고 주변의 지인들을 지치게 하는 생명연장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분식이라는 연명치료를 통하여 파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그 기업에 속한 임직원,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듯이 회계를 통하여 CFO는 현재 기업이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아 대응해야 하며 먼 미래는 어렵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기업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분식을 통한 연명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을 미리 예측하여 다른 길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회계 정보는 바닷가의 등대와 같다.

3) 팬데믹

팬Pan은 모두 또는 전부라는 뜻이다. 로마의 판테온Pantheon: 만신전, 모든 신을 모시는 전당의 판과 같은 의미다. 데믹Demic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스어에서 나온 용어다.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팬데믹인 것이다.

팬데믹이 현재와 앞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팬데믹의 핵심인 인간의 생각과 행동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국 경제에 미치는 것이다. 경제를 단순화 한다면 인간들이 모여서 의식주 경쟁을 하는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COVID-19바이러스 사태는 지구 역사상 여러 팬데믹 사건 중 하나 일 뿐이다. 가장 실용적인 학문으로 역사를 꼽는다. 다양한 분야의 과거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현재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인간 사회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그것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 팬데믹의 영향은 지구상 여러 국가별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과거 흑사병으로 인한 결과는 동로마 지역과 서로마 지역에서 각기 달리 나타났다. 서유럽 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봉건제가 붕괴되었으나 동유럽 지역은 봉건제가 더 강화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그 때보다 지금의 전세계는 그물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동일체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여러모로 다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 언택트 - 라는 단어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 바탕에는 모바일 디지털 기기의 힘이 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Early adoption 특성도 한 몫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영향과 그 결과를 적절히 회계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럼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앞서 이야기 한데로 회계기준에 대한 일관된 이해 방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된다. 아마도 - 측정 - 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것이다.

가장 핵심 이슈는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 전통적인 산업과 4차 산업 사이에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통적인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업 자산의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유 무형의 자산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상승하는 유 무형의 4차 산업관련 자산의 평가 기법이 기존 회계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의 회계기준이 이를 얼마나 빨리 포섭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회계분야의 혼란 여부가 결정 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고민해보면 이러한 변화나 문제가 전적으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현재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Digital Transformation을 고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한 뉴노멀이 현재 진행형이다. 인간은 항상 기술발전을 해왔으며 기술축적의 양이 증가할수록 발전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인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가파른 내리막을 만난 것이다.

4) 예술분야에 관심을

업무가 대부분 숫자와 돈과 관련되어 있다. CFO의 정신적 건강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술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회계사 생활을 오래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술관 음악회에 가려고 한다. 물론 쉽지 않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택한 방법이 라디오 클래식 음악 주파수를 맞추어 무의식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클래식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한다. 그냥 듣는다.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계나 재무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그렇다 보니 주제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다. 어디선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정량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성적인 부분을 균형 있게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성적인 부분은 예술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 모든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무거운 역기도 좌우 균형이 핵심이며 축구 선수의 정확한 슈팅도 양 발의 균형이 필수라고 한다. 정신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기업의 CFO로서 건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역량발휘를 위하여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균형 잡힌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무

안진회계법인 박성한 파트너

1.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	1) 세무조사의 개요	52
	2) 세무조사의 절차	57
	3) 세무조사 권리구제 제도	64
2. 조세특례에 대한 이해	1) 주요 분야별로 적용 가능한 조세특례의 종류	68
	2) 코로나 시대 이후 강화된 조세특례 분야	74
	3) 조세특례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77
3. 연결납세에 대한 이해	1) 연결납세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78
	2)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79
	3)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 구조	80
	4) 연결납세의 적용 신청	82
	5) 연결납세 기준 법인세 산출 구조	82
	6) 연결납세 신고 및 납부	84
4. 뉴노멀 시대의 해외파견인력 세금 관리 체크리스트	1) 파견 정책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86
	2) 주재원에 대한 급여 지급 구조가 명확히 설계되어 있는가?	89
	3) 해외파견정책이 코로나 시대의 변동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91

1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

1) 세무조사의 개요

(1) 세무조사의 정의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국기법 제2조 제21항).

(2)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1조의2 제1항).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국기법 제81조의2 제2항).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대상】

-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 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1조의2 제3항).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1조의3).

【납세자 성실성 추정 예외사항】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국기법 제81조의4 제1항).

특히,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국기법 제81조의4 제2항).

【재조사 금지 예외사항】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국제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국기법 제81조의4 제3항),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기법 제81조의4 제4항).

(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국기법 제81조의5).

(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국기법 제81조의6 제1항).

【국세청장 관할 선정 대상】

-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1조의6 제2항).

【정기선정 대상】

-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다만, 세무공무원은 위의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다(국기법 제81조의6 제3항).

【수시선정 대상】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또한,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국기법 제81조의6 제4항).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 납세자권리현장】

| 납세자권리현장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 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2) 세무조사의 절차

(1)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등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1조의7 제1항).

다만, 세무공무원은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폐업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국기법 제81조의7 제4항).

- ① 사전통지 사항
- ②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한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국기법 제81조의7 제2항),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1조의7 제3항).

【세무조사 연기사유】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나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2) 세무조사 기간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국기법 제81조의8 제2항).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국기법 제81조의8 제1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국기법 제81조의8 제3항).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또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다음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국기법 제81조의8 제4항),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국기법 제81조의8 제5항)

【세무조사 기간 중지사유】

-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하며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고(국기법 제81조의8 제6항),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1조의8 제7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국기법 제81조의8 제8항).

(3)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국기법 제81조의9 제1항).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유】

-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만,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1조의9 제2항).

(4) 장부 등의 보관 금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법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국기법 제81조의10 제2항).

【장부 등 일시 보관사유】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를 받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국기법 제81조의10 제3항),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기법 제81조의10 제4항).

(5) 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국기법 제81조의11 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국기법 제81조의11 제2항).

【특정 세목조사 사유】

-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나(국기법 제81조의11 제3항),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국기법 제81조의11 제4항).

【부분조사 사유】

- 특정 세목²⁾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 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6)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경우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법 제81조의12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 및 제156조의 6 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 4 제5항 및 제98조의 6 제5항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 세무조사 내용
-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국기법 제81조의12 제2항).

【세무조사 결과 통지 예외사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한,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1조의12 제3항).

【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 세무조사진행절차】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시작전

-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 세무조사 시작 전에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 조사연기나 조사장소 변경,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기업, 스타트업·혁신중소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작·진행

-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 후 납세자권리현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렴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영세자영업자 등*이 적법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입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22 '세무조사 일회제도 시행' 참고
- 과장 면담 제도와 납세자 소명서 제출을 통해 의문·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조사공무원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고 불만·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종료

- 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일시적 자금압박을 겪고 있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 및 조사 공무원의 청렴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서 전화번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번호 :

3) 세무조사 권리구제 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이하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제81조의15 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제81조의15 제2항).

【국세청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유】

-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국기법 제81조의15 제3항).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과세처분할 수 있는 예외사유】

-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1조의15 제4항).

(2) 이의신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고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및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국기법 제55조 제3항).

이의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국기법 제66조 제8항).

이의신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처분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기법 제66조 제7항).

(3)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기법 제61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기법 제61조 제2항).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나 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62조 제1항).

【심사청구서 주요사항】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불복의 이유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국기법 제62조 제3항),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62조 제4항).

심사청구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국기법 제65조 제2항),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65조 제3항).

(4)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기법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기법 제68조 제2항).

심판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69조 제1항).

【심판청구서 주요사항】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불복의 이유

심판청구서를 받거나 심판청구서의 부분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국기법 제69조 제4항), 조세심판원장은 지체 없이 답변서의 부분(副本)을 해당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69조 제6항),

심판청구의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1조).

(5)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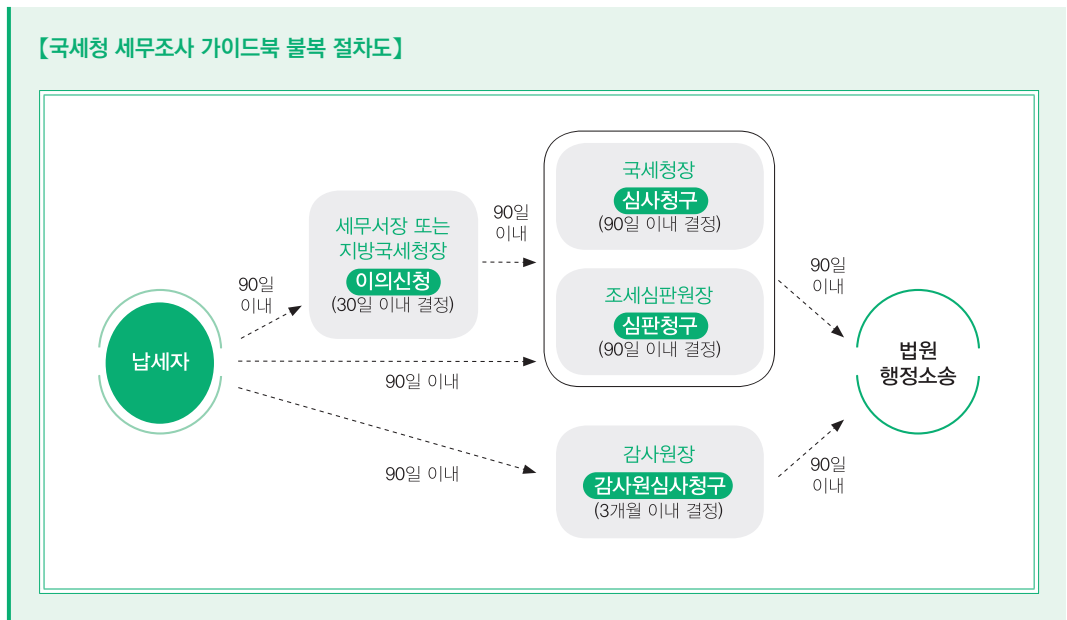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감사원법 제46조 제3항),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6조 제4항).

(6)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에 대한 이해

1) 주요 분야별로 적용 가능한 조세특례의 종류

법인이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 등의 조세지원 제도는 법인세법 상 일부 공제·감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크게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조특법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조특법§7)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舊 조특법 §5)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 0.2% 세액공제(조특법 §7의4)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를 세액공제(조특법 §30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 (조특법 §30의4)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조특법 §63)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또는 산업단지 내 3년이상 영위한 공장을 이전: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조특법 § 85의8)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선포일(2020.3.15.) 당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20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해 30%(60%) 세액감면(조특법 §99의11)
최저한세율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2)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구분	지원내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p>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22.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조특법 §8의3)</p> <p>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조특법 §8의3)</p>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p>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4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0~2%(중소25%, 중견 8%)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25%(중견 40%, 중소 50%) 세액공제(조특법 §10)</p> <p>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조특법 §10의2)</p>
M&A 활성화 지원	<p>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조특법 §12의3, §12의4)</p>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p>각종 시설투자 금액의 1%, 3%, 10% 공제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 추가공제(조특법 §24)</p> <p>'21년(⑤는 '20년)까지 아래의 시설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가능</p> <p>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p> <p>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p> <p>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p> <p>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5)</p> <p>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7)</p>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p>영농조합법인(조특법 §66), 영어조합법인(조특법 §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감면</p> <p>농업회사법인(조특법 §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p>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p>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의2)</p>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p>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조특법 §63의2)</p>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p>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조특법 §64)</p>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 공장이전 감면	<p>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감면(조특법 §85의2)</p>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조특법 §85의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8,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조특법 §121의17)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조특법 §104의14)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조특법 §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조특법 §60, §63의2, §85의2,7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1.1.~2021.6.3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99의9)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020.4~7월 중 선결제하고 2020.7~12월 중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선결제액의 1% 세액공제(법인세법 §99의12)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법인세법 §5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조특법 §57, §57의2)

이 중 대다수의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주요 공제·감면 항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특법 § 7)

【개요】

구분	지원내용
대상 법인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조특법에 열거된 48개 업종

【감면비율】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 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 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매출액이 일정 규모 기준(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및 기타 제조업 등은 80억원 이하, 도·소매업 및 출판·영상 등은 50억원 이하 등) 이내인 기업

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 6)

【개요】

구분	내용
대상 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법 시행령§5①에 따른 중소기업

【기본 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①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③	그 외			
5년 100%②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 ①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 ②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③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추가감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18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
 [('18) 10명 → ('19) 15명 → ('20) 20명]
 - ('18 과세연도) 50% 감면
 - ('19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 × 1/2) = 총 75%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33% × 1/2)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
 [('19) 8명 → ('20) 16명]
 - ('19 과세연도) 50% 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 × 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③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 10)

【공제율】

구분	내용
중소기업	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40%* 공제 * 3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 3배)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 ㉡ 중 선택) ㉠ 직전 3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50% 공제 ㉡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 공제
일반기업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 × 3배)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 ㉡ 중 선택) ㉠ 직전년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25%(중견 40%) 공제 ㉡ 직전년도 R&D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 중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은 15% 공제 ㉣ ㉢의 기간이후 2년간은 10% 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8% 공제 ㉥ ㉢, ㉣,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 α*) 공제 * α = R&D지출액/수입금액 × 1/2, 최대 2%

④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 29의7)

【개요】

구분	내용
대상 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감면 내용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 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 적용

【공제금액】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청년정규직 ³ 장애인근로자 ⁴ 등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2) 코로나 시대 이후 강화된 조세특례 분야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2020년 7월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및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기존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부분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전	개정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단, '20·'21년 투자분은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3)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4)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 통합·단순화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 대폭 확대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부여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대기업 1% / 중견 3% / 중소기업 10%)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기본공제액의 200%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기본공제 +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 적용

•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우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 적용(대기업 3% / 중견 5% / 중소기업 12%)

②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 개편

【조특법 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종전	개정
<p>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p> <p>* (예외) ①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년, R&D 비용 세액공제 10년</p> <p>* (예외) ② 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10년</p>	<p>조특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 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p> <p>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p> <p>*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감안</p> <p>※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p> <p>* (예) '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p>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소득세법)】

종전	개정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 → 15년으로 확대 (적용시기) '21년 이후 신고('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법인세법·소득세법)】

종전	개정
미공제액 5년 경과 시 소멸	(이월공제기간확대)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미공제액 손금산입)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비용인정) 허용* * (현행) 미공제액 소멸 → (개정)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 감소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2) 소비활력 제고

① '20.4~7월 중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

【기업 선결제 세액공제 요건】

- ㉠ (대상) '20.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결제액
- ㉡ (구입처) 소상공인
- ㉢ (지급시기)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7월 중 지급
- ㉣ (신청시 제출서류) 선결제 후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

② '20년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종전	개정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억원 이하: 0.3% • 100~500억원: 0.2% • 500억원 초과: 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억원 이하: 0.35% • 100~500억원: 0.25% • 500억원 초과: 0.06%

3) 조세특례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조세특례 적용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중복지원 배제 규정

조특법 제127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규정(제1항),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규정(제2항),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한 규정(제3항), 동일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규정(제4항), 동일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규정(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특법에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세액감면 간, 세액공제 간, 그리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간의 중복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 적용 시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2) 최저한세

조특법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한세(일반기업: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17%, 중소기업: 감면 전 과세표준의 7~9%)는 조세감면 후 세액의 하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한세액까지는 그 적용을 배제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3) 농어촌특별세 과세

조특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공제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감면·공제세액에 대하여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바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조특법 제146조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일부 건축물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금액 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액감면 등을 규정한 각 조항에서도 별도의 세액감면 등의 추징 규정 등을 두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결납세에 대한 이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회계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CFO에게 있어 연결회계는 매우 익숙한 개념일 것이다. 하지만, 연결납세는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또한 제한적이라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연결납세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CFO에게 있어서도 낯설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 제도가 도입된 배경, 기본적인 개념과 적용 방법론, 이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적용상의 애로점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1) 연결납세제도 개요 및 도입 배경

P회사가 각각 S1, S2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면서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관계를 맺는 경우, 모회사 P와 완전자회사 S1, S2로 구성된 하나의 기업집단이 생겨난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회사 P와 자회사 S1, S2는 각각 독립된 법적 실체이므로 각 법인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단위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며 이것을 ‘개별납세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별납세방식은 자회사의 결손금이 같은 기업집단 다른 회사의 소득금액과 통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법인 안에서 사업부제로 경영하는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점이 나타난다. 예로 하나의 회사 내에 P, S1, S2가 사업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아래 표와 같이 과세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부 형태에서 회사는 150의 과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P, S1, S2가 각각 독립된 회사라고 한다면 이 독립기업 집단은 250의 과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부제로 경영될 때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구분	사업부제	독립기업
P	(-)100	(-)100
S1	50	50
S2	200	200
총 과세소득	150	250*

* S1 및 S2는 각각 50 및 200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P회사는 100 결손금 이월. P회사가 향후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하면 관련 결손금은 결국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선택하는 조직형태에 따라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주요 국가(미국, 일본, 영국 등)들은 경제적으로 한 묶음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개별회사를 과세단위로 하는 대신에,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4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었다. 그런데, 기업이 사업부제로 운영되던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아래 자회사를 두면 앞의 표와 같이 세제상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납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국제적 기준에 따르고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연결납세방식을 2008.12.26. 법인세법 개정 시 도입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모 회사 P, 자회사 S1, S2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실체로 보고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세부담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세제의 중립성을 유지하며, 세제를 선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2)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와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OECD 국가 중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선택하고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유형	국가
소득통산형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멕시코, 룩셈부르크, 대한민국
손익대체형	영국,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는 국가마다 그 세부적인 적용 방법에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요시하는 방법으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보다 연결납세를 하는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는 형태이다.

실제 연결회계를 할 때와 유사하게 모법인이 연결납세 대상 자법인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연결 전체 입장에서 연결세무조정, 연결법인간 거래 제거를 통해 과세소득 및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을 자회사에 배분한다. 기업그룹을 하나의 법인 및 납세단위로 간주하여 이론적으로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복잡한 제도로 인해 실제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함에 있어 많은 납세협력비용이 필요하며,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많은 징세비용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 보다는 간편하게 기업그룹을 과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개별회사의 결손금을 연결집단 내 임의의 다른 이익회사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의 임의대체형 제도와 자법인 손익의 전액을 모법인에 대체하여 자회사 손익을 0으로하고 모법인이 집단 전체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독일의 모회사대체형 제도가 있다. 손익대체형은 적용이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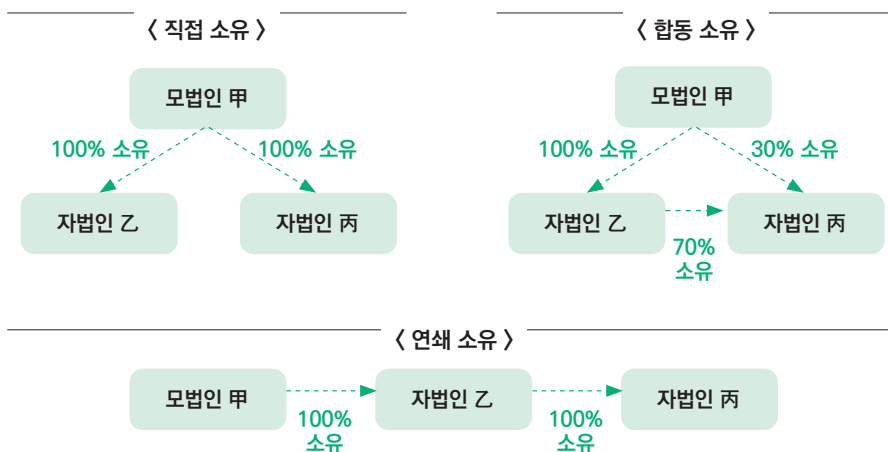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08.12.26.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최대한 간편한 방식으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3)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 구조

(1) 연결납세의 적용 범위

현행 법인세법은 모법인이 자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여 완전지배하는 경우 연결납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00% 지분을 보유한 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 포함)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범위내에서 완전지배 여부 판정 시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위 주식을 제외하고 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납세 대상 자법인에 포함된다.

이 때 자법인의 지분을 직접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더해 합동으로 100% 소유한 경우 및 연쇄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도 연결납세가 적용된다.



모법인과 완전지배관계(100% 지분 보유)에 있는 자법인에 한해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므로 그보다 낮은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연결재무제표와 연결납세제도 비교

경제적 실체 개념 측면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모법인은 자법인 지분을 50%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실질 지배력을 갖는다고 보고 연결회계를 적용하는데, 연결납세는 100% 자법인에 한해 적용되므로 연결회계와 연결납세의 대상 자법인의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고, 연결납세가 훨씬 제한적인 범위를 갖는다.

구분	연결재무제표(회계)	연결납세제도
목적	기업집단의 재무정보 제공	기업집단의 적정 과세소득 산정
연결의 목적	기업집단의 재무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적절한 정보 공시를 통해 분식결산 방지	기업집단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불능력을 파악하고 공정, 중립적 과세
기업집단의 범위	사실상의 지배력, 지분 50%이상 보유, 30%이상 보유하면서 최대주주 등	경제적 일체성, 주식을 100%소유하는 국내 자회사(5% 예외 인정)
채권, 채무 상계	원칙적으로 실시	실시하지 않음
내부 미실현 이익의 제거	원칙적으로 실시 *지분비율에 따라 내부거래손익 상계	원칙적으로 실시하나 모든 미실현 손익을 제거하지는 않음

(3) 외국의 연결납세 적용 범위

국가	유형	연결대상 범위	대상 자회사 선택
미국	소득통산형	80%이상 소유 국내 자회사	모든 자회사 가입 강제
일본	소득통산형	100% 소유 국내 자회사	모든 자회사 가입 강제
프랑스	소득통산형	95% 이상 소유 국내 자회사	임의 선택
영국	손익대체형	75% 이상 소유 국내 자회사	임의 선택
독일	손익대체형	50% 초과 소유 국내 자회사	임의 선택

연결납세에 대한 외국사례를 보면 100% 완전자법인이 아닌 더 낮은 지분율의 자법인에 대해서도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4) 연결납세의 적용 신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적용방법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연결납세 기준 법인세 산출 구조

연결납세 방식에 따른 법인세 산출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내용
01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개별납세방식과 동일하게 개별세무조정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산출
02 연결세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배당금, 접대비, 기부금에 대한 개별세무조정 취소 • 연결집단을 단일 과세단위로 보아 내부거래손익 조정 • 연결집단을 단일 과세단위로 보아 수입배당금/기부금/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 • 연결조정결과를 연결법인별로 배분
03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합산 • 합병 및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결손금과 내재손실은 일정한도내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이후 연결사업연도에서 공제
04 연결과세표준	• 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
05 연결산출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산출세액(연결집단 전체) : 연결과세표준 X 법인세율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과세표준개별귀속액 X 연결세율 → 과세표준개별귀속액 = 연결소득개별귀속액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 연결세율=연결산출세액 ÷ 연결과세표준 • 특정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법인세 합산
06 납부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기준으로 각 연결법인에 대해 적용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합계액을 차감(결정세액 산출)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차감(납부세액 산출)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판정

• 먼저, 연결대상법인들 각각의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무조정은 동일하게 수행하여 연결대상 법인들 각각의 각사업연도소득 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으로 연결납세계산이 시작된다. 따라서, 연결납세를 적용하더라도 각 법인들은 매년 수행하던 세무조정을 동일하게 수행해야 한다.

- 다음으로 연결실체 입장에서 연결집단을 단일 과세단위로 보아 연결세무조정을 한다. 연결세무조정은 내부거래 제거, 연결실체 입장에서 수행해야 할 세무조정으로 크게 구분된다. 내부거래는 모든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내부거래 제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i)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ii)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iii)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상당액과 iv) 연결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연결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 관련 내부거래 제거 대상도 토지와 건축물,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금융투자상품을 열거하고 있어 그 외 자산, 예를 들어 재고자산 등에 대한 양도손익은 제거되지 않는다.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 접대비, 기부금, 수입배당금을 연결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세무조정을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개별세무조정에서 수행한 접대비, 기부금, 수입배당금 세무조정은 취소를 시킨다. 그리고 i) 연결집단의 접대비 지출총액(연결법인간 접대비가 차감된 금액)과 연결집단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접대비 한도를 비교하여 접대비 한도초과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고, ii) 연결집단의 기부금 차감 전 과세소득으로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한다. iii) 수입배당금(연결법인간 수입배당금 제외) 익금불산입 금액은 “(수입배당금 - 지급이자 × 주식적수/자산적수) × 익금불산입률”로 계산되는데, 이 때 연결집단이 보유한 지분율을 기준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정하고, 연결집단 전체의 지급이자, 자산총액으로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을 계산한다.
- 연결실체 입장에서 계산한 연결세무조정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여 연결법인 별 연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연결소득금액이 부의 금액, 즉 결손이 발생한 법인과 소득이 발생한 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각 연결법인 별 연결소득 개별 귀속액을 구한다.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i)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함)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함), ii) 법인세법 및 조특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iii) 법인세법 및 조특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의 합계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동 산출세액을 연결법인별로 배분한다. 이 때 연결산출세액은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연결산출세액이 계산되면 동 금액을 연결과세표준으로 나누어 연결세율을 구한다. 그리고,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위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연결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의 합계액을 차감하며, 최저한세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적용한다.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 × 해당 연결법인의 공제·감면 세액 등 /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 세액 등의 합계액”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6) 연결납세 신고 및 납부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준비하여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첨부 서류	준비 법인
1) 연결소득금액 조정 명세서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연결모법인
1) 각 연결법인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별도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2)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각 연결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4) 각 연결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 5)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연결자법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적용상의 애로점】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 개의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법인이 해당 기업집단 내 일부 회사에서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결손금을 공제기한 내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연결납세 신청을 통해 해당 결손금을 이익이 나는 기업집단 내 다른 회사의 소득과 통산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기업집단 내 부동산, 지분의 양도 등으로 인한 양도손익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결납세적용을 통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차입금이 많은 연결집단인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지급이자 차감 규정으로 인해 100% 이중과세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연결납세를 적용하면 지급이자 차감없이 내부거래 상계로 연결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이 과세소득에서 제거되므로 이로 인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결납세의 신고 및 납부 주체인 연결모법인의 납세협력 비용 측면에서 애로점이 크다. 연결납세 집단 내 각각의 법인 들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연결납세의 신고 및 납부 주체인 연결모법인이 국세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대해 연결납세 전체의 세무조정 숫자를 수정 및 변경, 관리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향후 연결납세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연결납세도입에 따른 효익 뿐만 아니라 비용도 잘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뉴노멀 시대의 해외파견인력 세금 관리 체크리스트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의 여파는 2021년에도 어김없이 계속되는 중이다. 그러나 올해가 작년과 다른 점은, 코로나의 장기화를 인식하고 기업들은 발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낯설지만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야 할 때 인 것이다. 특히나 회사의 해외파견인력을 위한 정책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 이전과 달리 국가간 이동의 제약은 크게 증가했고, 주재원 개인이 감수해야하는 위험 역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더불어,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제도가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기존의 물리적 사업장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직원이라도 사실상 출근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 속, 해외파견인력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 져야 할 때이다.

해외파견인력 정책의 수립과 정비에 있어 세금은 비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예컨대,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주재원의 입국 제한으로 인해 파견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본국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체류 및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 본국 및 파견국에서의 세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세금을 회사 혹은 주재원이 낼지, 즉 회사가 어느 수준의 세금 지원을 제공해야 할지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파견인력의 세금 관리를 아우를 수 있는 해외파견 정책의 수립을 위해, CFO가 돌아보면 좋을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1) 파견 정책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 주재원 파견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와 세금 비용의 변동성 역시 함께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용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 차원에서 통제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파견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코로나로 인한 특수 상황에 처하더라도 지켜야 할 부분과 상황에 맞게 변주해야 할 부분을 가려낼 수 있다.

【파견의 목적에 따른 급여 패키지 조정】

그 첫번째 출발점은 파견 정책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주재원 파견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주재원의 급여 패키지 설계와 그에 따른 세금 지원 수준 결정을 위한 출발점이다. 급여 패키지의 구성과 수준은 세금의 수준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재원 세금 비용의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급여 패키지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파견 정책의 목적은 크게 비즈니스적 필요 혹은 인력 개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중요한 비즈니스적 필요에 따라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와, 인력 개발을 위하여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이들을 위한 급여 패키지 역시 각각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재원 파견의 목적이 해외에서 발생한 중요 단기성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에는 인력 개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며, 비즈니스의 직접적인 관련자 혹은 전문 기술자를 해외 프로젝트에 파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본국 급여에 아울러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추가 현지 수당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주재원 본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세금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세금에 대한 세금’인 세금보전액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하여 급여 패키지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재원 파견의 목적이 중요한 비즈니스 수행은 물론 핵심 인력으로서의 성장이라면 어떻게? 비즈니스적 필요도 높고 주재원 개인의 인력 개발의 목적 둘 다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 프리미엄 주재원으로서 추가적인 급여 패키지를 포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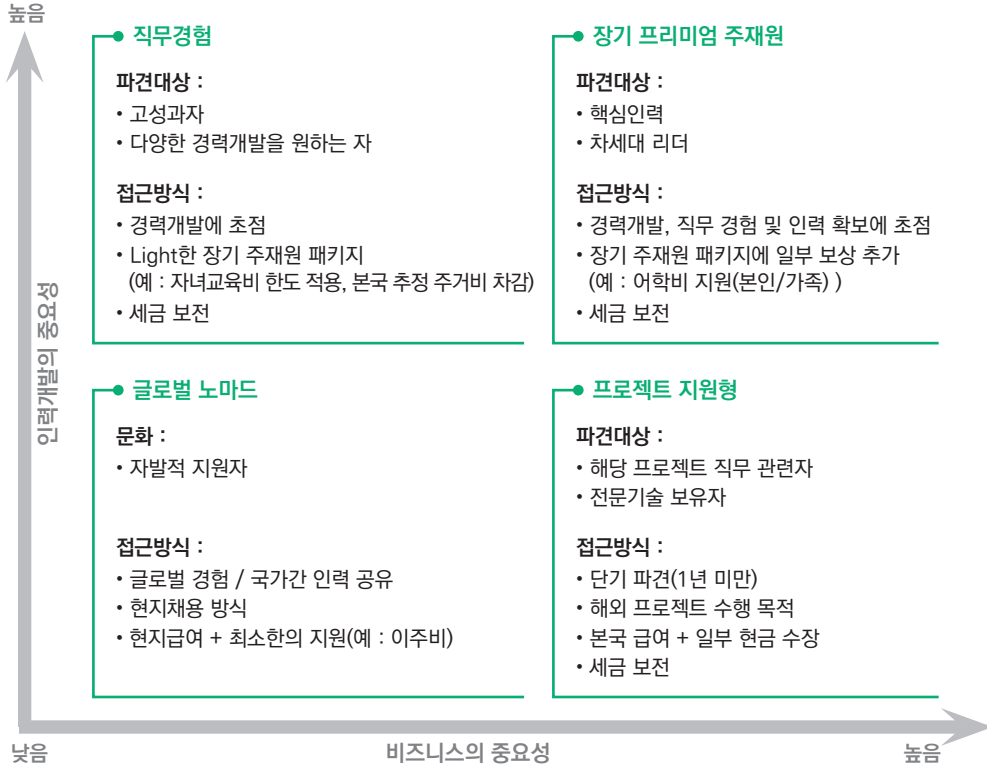
이 경우, 파견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의 이주비용, 본인과 가족의 현지 어학 비용,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급여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추가적인 급여 패키지의 지급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회사의 세금 보전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 비즈니스적 필요 혹은 인력 개발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경우, 가족의 교육비에 한도를 적용하거나 본국 추정 주거비(Housing Norm Deduction, 파견을 가지 않았더라면 본국에서 발생하였을 주거비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 패키지를 조정할 수 있다.

상기의 방식들은 파견 기간 중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방식이다. 파견 기간 중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파견기간 종료 후 본사로의 복귀가 보장되고, 해외 어느 국가로 파견을 가든 현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상받는다라는 점에서 해외주재원 입장에서는 심리·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파견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파견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주거비용, 자녀 교육비, 각종 파견 수당, 세금 보전 비용 등으로 인해 통상 파견 전에 비해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 이상으로 인건비가 대폭 증가되어, 비용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 주재원 개인에게도 귀임 후 본사에서의 포지션 및 적응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만약 주재원 파견의 목적에 있어 비즈니스적 필요도 낮고, 인력 개발의 필요도 낮지만 자발적 지원이 뒤따르는 경우라면 파견과는 또다른 One Way Transfer 방식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이는 글로벌 경험 및 국가간 인력공유 차원에서 최근 많은 금융, IT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글, 아마존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들은 본사에 채용된 인력을 필요 혹은 개인의 자원에 따라 파견국 현지법인으로 진출하여 현지 법인에서 직접 고용한다. 이 경우, 앞서 언급된 현지 수당이나 현지 교육비, 세금 보전 등은 배제하고 일회성 이주비용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대신 기업 성과와 연동되는 본사의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파견 목적에 따른 파견 형태 구분 (스마트 무브 분석)】



마지막으로, 파견 목적에 따라 급여 패키지를 구성할 때 고려하여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국가별 과세 동향이다. 주요 국가의 경우 변경된 세법 규정 중 해외주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례로, 중국의 경우 2022년부터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했던 주택자금, 자녀학자금, 본국방문 휴가비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중국 주재원의 소득세 부담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고, 회사도 이에 대한 세금보전액 증가를 감안하여 중요도가 높은 목적을 가지는 파견 인력에게 적절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패키지 구성 및 세금 지원 수준을 재검토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주재원 파견 정책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급여 패키지 설계와 파견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올바르게 설계된 급여 패키지과 파견 정책은 주재원 개인이 납득할 수 있고, 파견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인건비와 세금 비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속, 회사 입장에서 귀중한 자원을 먼저 적재 적소에 할당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파견 정책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초석이다.

2) 주재원에 대한 급여 지급 구조가 명확히 설계되어 있는가?

명확한 지급 구조의 설계는 세무 비용 최소화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주재원들이 겪는 중 혼란 하나는 본국 혹은 파견국에서 예상치 못한 체류를 하게 된다는 점인 데, 이 경우 주재원에 대한 급여 지급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주재원 소득의 신고 범위와 의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과소신고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급여 관리 주체에 따른 지급 구조 설계】

주재원에 대한 급여 지급 구조는 크게 2가지의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기준은 급여 관리 주체이다. 급여 관리 주체가 본사인지 혹은 각국의 현지 법인인지에 따라 각각 Centralized Model과 Decentralized Model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Centralized Model은 실제 지급처와는 관계없이 본사가 현지에서 지급되는 급여 항목들의 정보를 모두 받아보면서, 본사의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Decentralized Model은 본사에서 현지에서 지급되는 급여 항목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현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급여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비용 부담 주체에 따른 지급 구조 설계】

두번째 기준은 인건비의 부담 주체가 본국 법인인지 현지 법인인지에 따라 나뉘어지며, 각각 Home Payroll, Host Payroll로 구분될 수 있다. 과거에는 주재원 인건비 부담 주체에 대한 이슈가 크게 대두되기도 하였다. 본사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주재원들은 현지 법인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현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다. 해당 이슈는 한 국내 법인의 법인 세무조사로부터 떠오르게 되었다. 해당 기업의 주재원 인건비가 비용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된 것이다. 국세청의 논리는, 비록 주재원이 고용관계를 국내 법인과 유지하고 있더라도, 파견 기간 동안은 현지 법인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므로 국내 법인이 이 주재원을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는 업무 무관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많은 국내 대기업들은 이러한 전례에 따라 주재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파견국에서 부담하도록 구조를 변경하였다. 혹은 국내 법인에서의 주재원 인건비 지급을 유지하되 현지 법인으로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국내 법인에서는 주재원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주재원의 규모가 작지 않을 경우, 이러한 법인세법상 세금 비용도 충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직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기본급과 보너스를 본사에서 부담하고, 파견과 관련한 수당만을 현지 법인에서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단점은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의 이슈와 더불어 파견국에서의 소득세 신고 이슈를 함께 동반한다는 점이다. 파견국에서는 현지 법인이 지급하는 파견 관련 수당만을 신고하고, 본사에서 지급하는 기본급의 신고를 놓치는 경우 과소신고의 리스크가 발생한다. 또한, 각국의 세법이 달라 본국과 파견국의 급여를 올바르게

합산하여 신고하는 데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주재원이 국내에서 일정 금액을 원화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화로만 급여를 받았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외화 송금 환차손을 주재원 개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급여 지급 구조 설계의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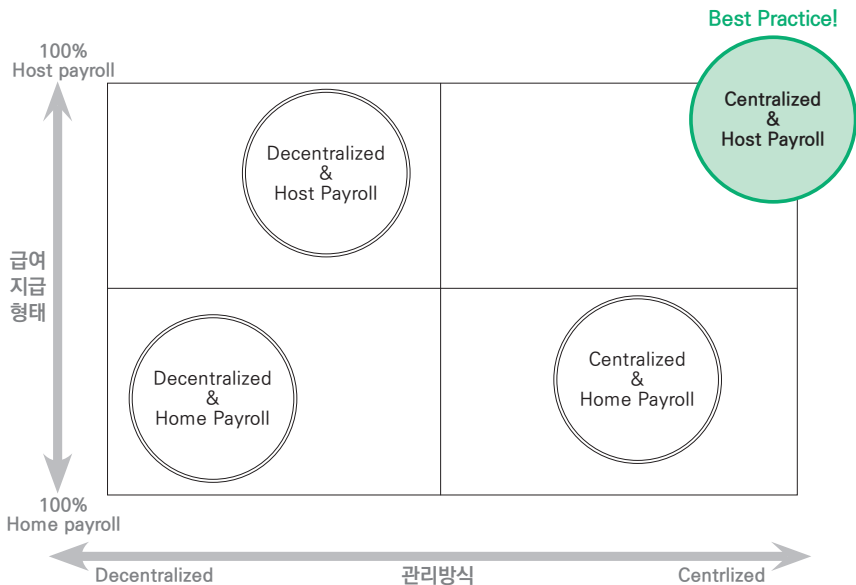
이와 같은 급여 지급구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종합하였을 때, 어느 방법이 최선인지 단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인 트렌드를 고려하였을 때, 본사에서 급여를 관리하는 Centralized Model 및 가능한 한 급여를 모두 현지 법인에서 부담하는 Host Payroll을 채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는 바람직한 급여 지급 구조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Centralized & Host Payroll 구조는 기존에 떠오르던 법인세법상 손금부인 이슈와 파견국에서의 과소신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나 Centralized 된 급여 관리 방식은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와 세무비용을 통제하는 데에 순기능을 한다.

예컨대, 코로나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파견 관련 비용은, 자가격리 시설 지원, 강화된 비자 심사 혹은 출입국 절차에 대한 추가 지원 비용,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통합된 연간 급여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본국 혹은 파견국에서의 소득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외국계 회사들은 Centralized Model을 채택하여, 각 현지 법인이 인건비 집행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급여 취합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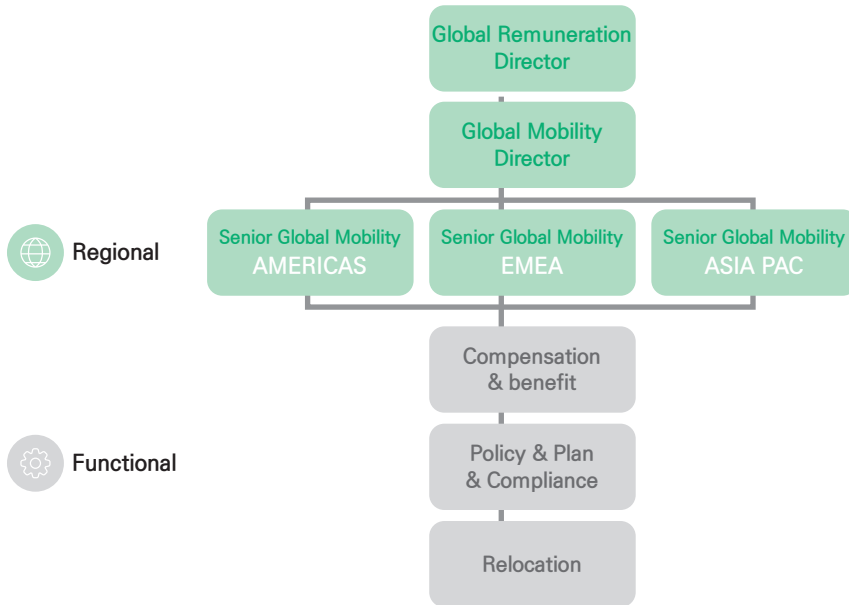
【급여 부담 주체와 관리 방법에 따른 급여 구조】



【급여 지급 구조의 설계를 위한 R&R】

마지막으로, 이러한 올바른 급여 구조의 설계는 회사의 어떤 유관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할까. 아직은 많은 국내 기업이 해외 주재원 파견만을 담당하는 Mobility 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HR의 주도 하에 재경팀과 세무팀의 유관 인력에 의하여 해외 인력 파견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파견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해외 주재원 파견만을 담당하는 Mobility 팀을 꾸려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이 Mobility 팀은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지역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으며, 급여 패키지, 파견 정책 및 주재원 세금 신고의무 이행, 비자 등 기능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로 파견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전문적인 팀을 수립하는 방식 역시 고려해볼 수 있겠다.

【외국계 기업의 Mobility 팀 구성 사례】



3) 해외파견정책이 코로나 시대의 변동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앞선 두가지 체크리스트에서 점검해 보았듯, 명확하게 설계된 파견정책은 세금 신고 의무 이행의 바탕이 되어준다. 뉴노멀 시대의 해외인력파견정책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 시대의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든 우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의 위협에, 파견 정책의 유연성은 우리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단기, 장기 파견의 2가지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파견 형태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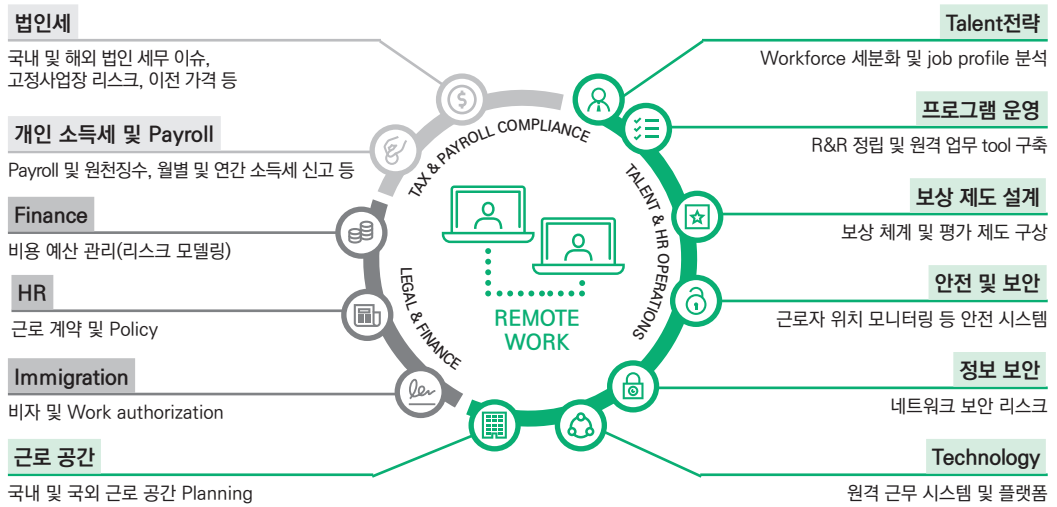
【Remote Working의 등장】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그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파견 방식과 근무 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On-site 근무에서 재택근무로의 전환은 이미 보편화 되었으며, 파견 형태도 국가 간의 물리적 이동 없이 본국 또는 제3의 국가에서 파견국 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Remote work’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은 기존의 근무방식의 틀을 깨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도전하고 있으며, 일부 다국적기업은 현 상황을 떠나 유연한 근무형태를 영구적인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존의 해외파견인력정책이 어떻게 Remote Work 형태를 통하여 변주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통하여 살펴해보도록 하자.

- A 국가에 거주하고 있지만 B 국가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며, B 국가에 있는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 파견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귀임하지 못하고 파견국에서 본국 법인에 대한 업무 수행
 -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다른 국가에서 근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예 :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에서 1년 동안 체류하며 본국 법인에 대한 업무 수행)
 - 해외 체류하는 자를 고용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본국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 A 국가에 거주하고 있지만 B 국가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며, C 국가에 있는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 파견국에서 근무를 수행하다가 제 3국가에 출장을 갔는데 비자 등의 이슈로 파견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제 3의 국가에서 업무 수행
- A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A 국가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만, B 국가에 있는 회사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 파견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파견국 안전 등의 문제로 본국으로 조기 귀임 후, 파견 법인에 대한 업무 수행
 - 파견기간 중 일시 본국 방문 후 돌아가지 못하여 본국에서 파견 법인 관련 업무 수행
 - 파견 시작일이 도래하였으나, 비자 등의 이슈로 출국하지 못하여 한국에서 파견 법인 관련 업무 수행

【Remote Working의 고려사항】

Remote Working의 가장 큰 장점은 주재원이 현지 회사를 위해 근무를 제공하는 데에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폭 절감되고, 그에 따른 세금 비용 역시 절감된다는 점이다. 실제 현지에서 체류하였다면 발생하였을 주거비, 자녀 학자금, 국제 보험료, 이주비용이 줄어들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Remote Working을 회사에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한다.



가장 첫번째 문제가 바로 세금이다. 한국에서 거주를 하며 급여를 중국 현지 법인에서 수령하는 주재원을 생각해보자. 만약 양국 모두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이중과세의 이슈가 떠오르게 되고, 이 이중과세를 어떻게 해결할지, 회사에서는 어느 수준의 세금 지원을 주재원에게 제공해야 할지가 사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전과는 다른 근무 형태 및 지급 구조로 인하여 주재원 본인의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하여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에 방문한 직원의 체류 기간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어 한국에서 원격근무로 해외 현지 법인의 업무를 보고, 해외 현지 법인에서 계속 급여를 받는 케이스를 고려해보자. 이 경우, 본인이 한국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뒤늦은 신고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이자 등의 불필요한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일부 국가들은 양 국가 간의 조세조약 조항에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포함하여,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한 국가에서의 원격 근무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고가 필요한 부분을 가려내어 적절히 신고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파견 정책을 수립하는 유관 부서가 신고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주재원 개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필요한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계약과 관련한 문제 역시 발생한다. 인사평가의 주체 혹은 인건비 부담 주체가 본국 법인 혹은 현지 법인이 될지에 대해서도 사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원격근무 시스템 및 플랫폼이 올바르게 구축되어 현지 회사의 시스템에 문제없이 접속할 수 있는 접근성 마련 및 보안 환경 구축 역시 Remote Working의 시행에 선행되어야 한다.

Remote work는 주재원 인건비 절감, 코로나에 대한 대응 가능성이라는 장점 이외에도 많은 장점을 갖는다. 장소 및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잠재적인 이익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Remote work를 당장의 위기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만 치부하기 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의 인력개발 및 기업이익 실현 등 고려하여 하나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다. 해외 파견국의 법률을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와중에도 각 나라에서는 여전히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 들고 있다.

일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영향은 있었으나 코로나사태가 세법 자체를 바꾸어 버린 케이스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해외 인력 파견의 환경은 전례 없이 독특하고 복잡한 시대가 왔지만, 세금의 이슈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그 형태가 조금 더 복잡 해졌을 뿐이다. 따라서, 코로나가 불러온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인력의 세금 신고 의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회사의 파견 정책의 목적과 파견 비용의 구조,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변동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해외파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수립된 파견 정책은, 해외파견인력의 세금 관리에 매우 유용한 바탕이 되어 줄 것이다.

내부통제

안진회계법인 김학범 파트너

1. 내부통제제도	1) 내부통제제도의 의의	96
	2) 내부통제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97
2.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 사항	100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 흐름	104
3. 코로나19와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검토 필요 사항	106
	2) 내부회계관리제도 영역별 잠재적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	107
4.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체크포인트 및 회사 대응 전략	110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미비점 및 개선방안 사례	111
	3)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수검 시 CFO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113

1 내부통제제도

1) 내부통제제도 의의

(1) 내부통제제도 의의 및 목적

내부통제제도는 다음 세 가지 목적달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기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5).

【내부통제제도 세가지 목적】

구분	설명
운영 목적: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고 목적: 보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는 내·외부 보고를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규준수 목적: 관련 법규 및 정책이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모든 활동은 관련 법규, 감독 규정, 내부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2)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내부통제제도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그리고 모니터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구성요소는 하위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요소 및 원칙의 존재와 기능은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달성케 한다(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6 및 16).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통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통제제도의 기반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기반으로 이사회 및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 관련 조직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의 구성, 교육을 포함한 인력 운용 및 성과평가와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포함
위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식별, 평가 및 분석하는 활동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여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의 중요도(심각성) 정도를 평가 동 절차에서 부정위험 평가를 포함하여 고려하고, 회사의 중요한 변화 사항을 고려하여 기존에 평가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포함

통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될 수 있는 통제활동이 선택 및 구축될 수 있는 체계를 포함 • 통제활동은 경영진의 업무성과 검토, 정보기술 일반통제, 승인, 대사 및 물리적 통제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
정보 및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구성원이 내부통제제도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하고 네 가지 통제 구성요소에 대한 대·내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포함
모니터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유지 목적 •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또는 두 가지의 결합을 고려한 평가를 수행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적시에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

(3) 내부통제제도 효과 및 한계

내부통제제도의 효과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8 및 9).

【내부통제제도 효과 및 한계】

효과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이 업무성과를 측정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위험을 관리 하는데 기여, 회사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위험을 회피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직원의 위법 및 부당행위(횡령, 배임 등) 또는 내부 정책 및 절차의 고의적인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주의, 태만, 판단상의 착오 또는 불분명한 지시에 의해 야기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포착함으로써 회사가 시의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 • 정보의 신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부주의, 피로, 판단 착오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통제제도도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므로 내부통제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음

2) 내부통제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써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11).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소시키며,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경영진에 의해 충족됨을 판단될 때 달성될 수 있다(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16, 17 및 18).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달성 요건】

<p>“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 원칙이 존재하고 기능한다.”</p>	<p>존재한다</p>	<p>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 및 관련 원칙이 설계 및 구축되어있다고 판단한다.</p>
	<p>기능한다</p>	<p>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 및 관련 원칙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p>
<p>“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성요소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p>	<p>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p>	<p>경영진은 합리적 수준에서 5가지 구성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운영되어, 외부 재무보고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한다.</p>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작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의무화하여 시행해 온 내부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2002년 미국의 대기업 엔론 및 월드컴의 회계부정 사건(각각 자회사를 통한 이익 과대계상 및 비용의 과소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기존의 회계기록 작성·보관 및 회계결산관련 통제에서 확대된 적극적인 재무보고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CFR)를 기업들이 구축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은 2002년 사베인즈 옥슬리법 404조(이하 ‘SOX 404조’)를 제정한다.

【SOX 404조 - 책임과 의무】

경영진	외부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보고 내부통제 구축 회계연도말 기준 재무보고 내부통제 효과성 평가하여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이 재무보고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적절히 평가하였는지 감사 기업의 재무보고 내부통제가 효과적인지 감사

(3) 우리나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발전

1997년 IMF 구제금융 전후로 기업의 회계부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실시하게 된다. 2001년,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의무화하였고, 해당 법률은 2003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영구 법제화 되었다.

더불어, 2017년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발표 및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8년 11월 1일자로 현재 모습의 큰 틀을 변화하여 갖추게 된다.

【외감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제도 인증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 (검토 → 감사)
회사의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책임 - 외부감사인 선정/관리에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조치 책임 구체화

2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구비

회사는 외감법 제정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다음의 사항을 필수 포함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구비하여야 한다(외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준수 필요 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을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 절차
-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함)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사항
 - 회사의 대표자,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자,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대표자 등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관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법 제22조제5항에 관하여 필요한 회사의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법 제8조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포함) 점검·보고의 기준 및 절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따른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의 인사, 보수,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그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해야 한다(외감법 시행령 제9조).

(2) 외부감사인에게 금지되는 행위

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외부감사인에 요구하여서는 안된다(외감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준수 필요 사항

-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3) 회사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

준수 필요 사항

- 내부회계관리자 지정(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또는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대면 보고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할 수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감사인의 종합 의견을 정기총회에 보고
- 외부감사인 및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요 자료 및 정보의 지체 없는 제공
-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통보 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수행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자로, 외감법 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외감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감법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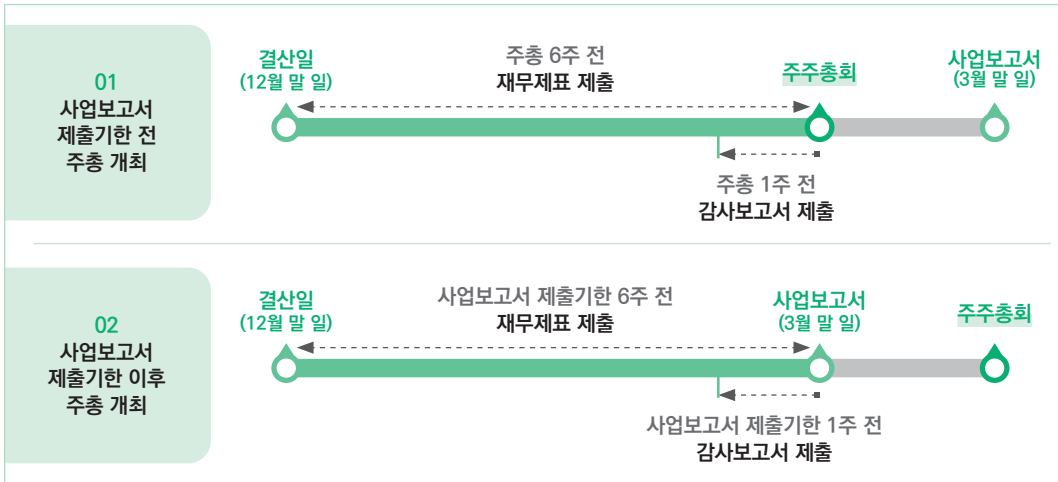
(4)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의 회계 및 업무 감독 역할이 강화되었다.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4대 핵심 대응 영역을 참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작성 감독 강화	2)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작성 과정 감독 재무제표 제출기한 준수 여부 확인 외부감사인 대응 현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 수준보다 강화된 운영실태 점검 내부통제의 미비점, 취약점 발견 시 신속한 개선 조치 내부회계관리제도 실질적 평가와 감독
3) 외부감사인 선정 및 평가 기능	4) 부정조사 및 보고 등 감시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 보수 및 투입시간 평가 및 문서화 감사인의 독립성 및 비감사활동의 적정성 평가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 징후 발생 시,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시정 요구 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증선위 보고 및 외부 감사인에 공유 내부신고제도 등 운영 감독

① 재무제표 작성 감독 강화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 임직원을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게 하거나 관련 자문 등이 수행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외감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또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주주총회 개최 시기에 따라 다름을 인지하고, 회사의 재무제표 실제 제출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제2항).



②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감독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감법에 따라 운영실태 평가를 준수하여야 한다(외감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준수 필요 사항	
운영실태 대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 회의 개최하고, 평가한 후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 관리.
평가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대면 회의를 통한 점검·평가의 결과 및 조치 내역을 문서로 작성 관리. 평가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대표자에게 요청 가능
이사회 대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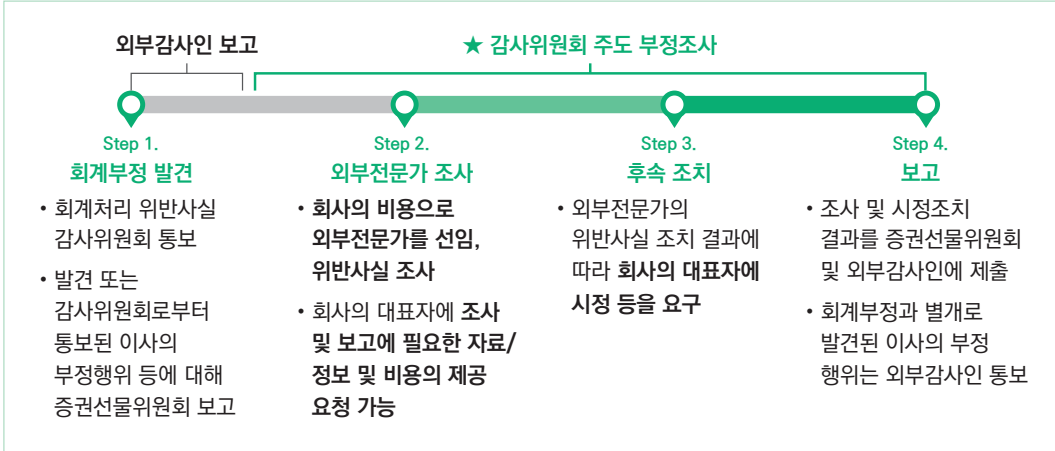
③ 외부감사인 선정 및 평가 기능

준수 필요 사항	
감사인 선정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 선임 기간 고려(외감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임 기한 내 외부감사인 선임미완료시, 직권지정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기업: 사업연도 개시 이전 선임, 그 외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선임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마련(외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시간, 인력, 보수의 적정성, 독립성 등
감사인 선정 및 계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 선임(외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투입시간, 보수의 결정(외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임기준에 따른, 참석인원, 주요 발언내용 등 대면회의 결과를 문서화
감사 실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 독립성 확인_비감사용역 (공인회계사법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감사인의 비감사용역에 대한 협의 또는 동의 필요 감사 수행 인원의 정기적인 교체 확인(외감법 제9조)
감사 종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 외부감사인의 의견 진술(외감법 제14조)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활동 평가(외감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 선임시 감사시간, 인력, 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평가

④ 부정조사 및 보고 등 감시기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외감법 제22조).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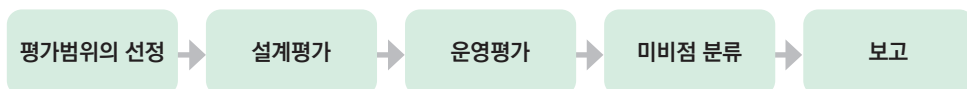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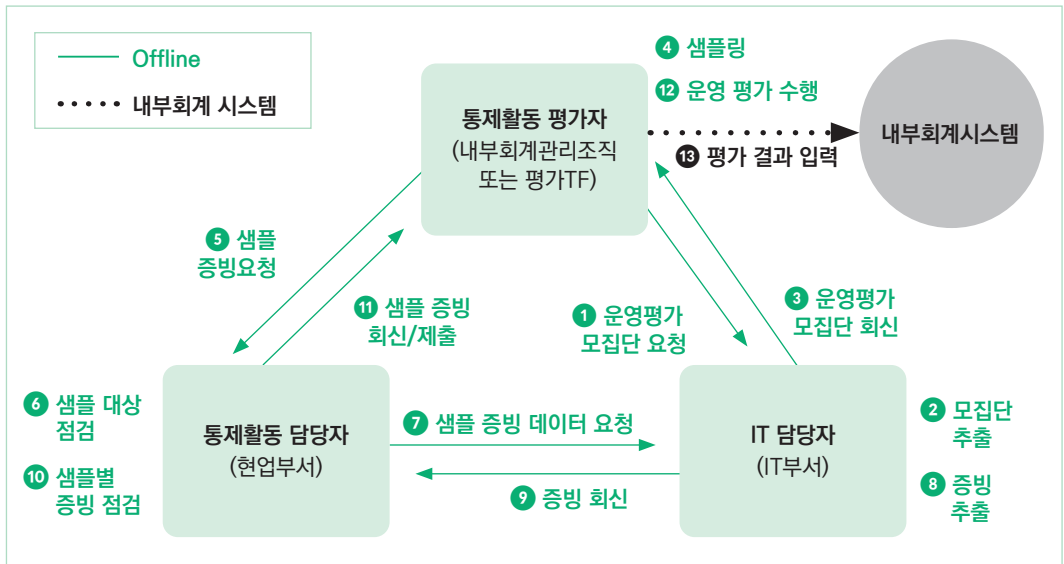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경영진이 의도한 대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주기적인 평가(매년)를 수행하고, 그 결과 식별된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하여 외부 재무보고 과정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경영진은 수립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음을 충분히 문서화 하여야 한다. 더불어, 해당 문서는 경영진의 책임하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 및 평가되고 있다는 근거로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 보고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 및 감사에 대한 근거로 사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업무 흐름】



【운영 평가 흐름(일반적 상황 예시)】



3 코로나 19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내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새로운 리스크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함에 있어 중요하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검토 필요 사항

기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중요 계약이 취소되는 등 일상적인 기업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보고 프로세스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구분	주요 검토 필요 사항
위험평가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위험평가 결과(부정 위험 포함)에 대해 코로나 19가 미치는 영향
인력 등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등의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백업 또는 업무분장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서비스조직에 대한 의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19로 인해 중요한 서비스조직이 받은 영향 중요한 서비스조직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 기업의 추가적인 통제활동이 필요한지 여부
원격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 접근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의 도입 여부 및 이를 위한 모니터링 절차의 수립 필요 여부 원격 접근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접근 통제, 패스워드 관리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
통제의 수행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된 통제에 대한 수행자의 적격성 및 필요한 통제 변경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 (원격 수행 등과 관련) 별도의 모니터링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검토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자동화된 통제 중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 및 추가 모니터링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 대체적인 수단을 통한 재고실사 절차의 수행 필요 여부

2) 내부회계관리제도 영역별 잠재적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

(1) 전사수준통제 영역

분야	고려사항	대응방안
범위 선정	내부회계 평가대상 업무프로세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범위에 대한 재검토
위험 평가	<p>부정위험을 포함한 위험 평가의 재 고려 없이 코로나 19 발생 전에 수행 된 위험 평가에 의존함으로써 따라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보고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 변경 사항 질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위험(예: 큰 규모 차입의 위험)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위험(예: 재고 소진, 거래처의 신용 위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예정 또는 이미 변경된 사항 식별 조직, 프로세스 및 시스템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받는 영역을 평가, 변경된 통제 확인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모니터링 활동이 새로운 위험을 포괄하지 못함 정상적인 모니터링을 실행하지 못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통제활동 설계의 일부로 모니터링 활동을 고려 내부감사의 현장방문과 같은 모니터링 통제의 변경이 필요인지 여부 검토
미비점 평가 및 결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부족 연말 후반에 미비점이 보고되어 경영진이 발견된 문제를 보완/개선할 시간의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제활동 관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적격성 검토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깊이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 있는 통제 관리 책임자의 선정 및 개선 중인 주요 이슈 등의 체계적 관리

(2) 업무 프로세스 영역

분야	잠재적 위험 요소	대응 방안
경영진 검토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또는 사무실 폐쇄 등으로 인한 통제 수행 불가 • 신뢰할 수 있는 필수 정보 입수 불가 • 통제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회의 수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활동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관련 통제절차가 최신 상태인지 검토 • 신규/임시 통제활동 담당자가 적절한 권한과 적격성 보유여부 검토(업무분장 고려) •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 확신을 제공하는 새로운 통제 검토 • 원격 검토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 관련 회의 통제의 기능(방법) 검토 • 조사기준이나 후속 절차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지 평가 • 통제에 사용된 기대치(예산, 예측 등)가 적절한지 평가
복잡한 회계 추정에 대한 통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회계 추정에 대한 새로운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의 영향 미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회계 추정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기존 통제가 코로나 19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지 검토 • 재무제표 관련 공시가 해당 주요 가정의 민감도를 적절히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
지분법투자 및 공동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법 투자 또는 공동투자에서 적시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발생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분법투자 또는 공동투자 관련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 연결재무제표 내 지분법 및 공동투자 관련 중요성을 재평가하여 핵심 통제 재검토
거래 처리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 적시에 처리되지 않아, 지연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주간 거래 처리 통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통제 업데이트
현예금 지급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승인을 위한 인력 가용성 부족 및 부정합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뱅킹 접근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테스트 및 원격 가능성 검토 • 자금 지급 승인자 목록을 검토하고 위험 평가하여 승인자 확대 검토
자동화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부재로 인해 수동으로 실행되거나 모니터링 되는 자동화된 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모니터링 통제 미작동으로 미비점이 탐지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된 오류에 가장 취약한 자동화된 통제 식별 • 통제 미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통제가 존재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서비스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적인 서비스조직의 업무 중단 등으로 인한 해당 프로세스와 관련 통제의 비효과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지속 가능성, 서비스조직 통제에 대한 인증보고서 입수 가능성 평가 • 서비스조직의 변경된 통제 평가

내부자 거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관련 중요한 비공개 정보의 부적절한 목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내부자 거래 금지 정책 검토 • 정책 준수를 상기시키기 위한 임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	--	--

(3) 정보기술 일반통제 영역

분야	잠재적 위험 요소	대응 방안
변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및 개발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과 가용성이 저하되어 현업 담당자의 업무 요청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할 수 있음 • 불충분한 개발자 및 사용자 테스트가 수행된 후, 변경 사항이 운영환경에 적용될 수 있음 • 충분히 테스트되지 않거나 숙련되지 않은 직원의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운영환경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변경 건을 대상으로 요청/테스트/이관승인 후, 운영환경에 배포되었는지 주기적 검토 절차 마련 • 원격 접속을 통한 테스트 환경 조성 필요
프로그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시스템의 도입, 버전 업그레이드가 지연될 수 있음 • 신규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자원 및 전문 지식이 불충분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제3자 공급업체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이 필요할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해당 업체가 내부통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계속 및 보류에 대한 비판적인 의사소통 및 결정 • 주요 프로젝트의 자원 재배치를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품질 보증과 같은 추가 활동 수행 여부 결정 • 아웃소싱업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주기적 업무 보고서 발행 및 검토 필요
백업 및 데이터 일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담당자가 자동화된 인터페이스를 모니터링하지 않을 수 있음 • 오류 발생시, 복원 및 오류 해결 등의 업무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일괄처리 로그(성공/실패 여부) 검토 절차 필요 • 원격 접속을 통한 오류 적시 조치 환경 마련 필요
내부망 접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망 접근 이슈로 업무 처리 범위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PN과 같은 적절한 보안 설정 및 환경 마련 필요

4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체크포인트 및 회사 대응 전략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체크포인트

【통제 수준별 주요 체크포인트】

전사수준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개념체계』 상 5개의 구성요소와 17가지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통제가 적절히 구현되었는가? 윤리강령 위반사항의 처리, 부정방지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가?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가? 교육훈련, 성과보상 연계 등 외감법에 명시된 조직의 역할 및 책임 이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거래수준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한 계정과목 및 공시항목이 식별되었는가?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있는가? 중요한 왜곡표시의 위험에 상응되는 통제활동이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가? 프로세스 및 업무와 구분되는 통제 기능을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경영진 검토 통제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는가? 업무분장 관련 통제가 설계되어 있는가? 외부서비스제공자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 통제가 설계되어 있는가?
정보기술 일반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한 계정과목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적절히 식별되었는가? 주요 계정과목 연계 시스템 생성 데이터/정보 정확성·완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제가 설계되어 있는가? 자동통제에 대하여 적절히 식별 및 평가 되었는가?

【통제 설계 및 운영 체크포인트】

통제 설계의 효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제활동이 정책과 절차와 연계되는가? 관련 통제위험을 명확하게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가? 예외사항의 정의와 적시 대응방안이 포함되는가? 통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된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 적절한가? 통제가 설계되어 수행된 기간은 충분한가? 통제수행자의 적격성이 정의되었는가? 통제 수행 빈도는 위험을 적시에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가?
------------------	---

통제 운영의 효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 테스트를 위한 대상 모집단이 적절히 정의되었는가? • 모집단의 완전성 및 정확성이 검토되었는가? • 기중평가Interim 및 기말평가Roll-forward 시기별 대상 샘플 수준 및 평가근거 문서 수준이 적절한가? • 통제 주기 및 위험수준에 따른 샘플 수가 적정한가? • 통제 테스트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문서가 적정한가?
--------------------------	---

(2)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체크포인트에 대한 대응 전략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체크포인트를 인지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상장회사협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소통채널 및 발간자료 등을 활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동향 및 이슈들을 적시에 파악하는 절차를 정립하고 적용함을 고려할 수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미비점 및 개선방안 사례

(1) 거래수준통제 주요 미비점 사례

【매출 프로세스】

주요 미비점	미비점 상세내역	개선방안
마스터 권한 관리 미비	단가마스터, 고객마스터 등의 주요 마스터 권한 관리 미비	관련 업무 담당자에 한하여 제한
수익인식기준 검토 절차 미비	IFRS15 수익인식기준 관련 검토 절차 미비	수익인식기준 관련 체크리스트 구비 및 검토 절차 정립
채권잔액의 정확성 및 실재성 확인절차 미비	감사인의 감사절차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의 확인 이외에 회사 자체적인 채권 잔액의 정확성과 실재성 평가 절차 미비	거래처에 대한 회사의 자체적인 채권잔액조회 절차 도입

【자금 프로세스】

주요 미비점	미비점 상세내역	개선방안
인감관리 미비	법인인감/사용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의 사용 기록 관련 통제 미비	인감관리대장의 완전한 작성 및 승인 내역 문서화 관리
미사용 계좌 관리 미비	미사용 계좌의 적정성 검토 절차 미비	주기적으로 법인의 보유계좌를 검토하여 미사용 계좌 해지 여부 검토 절차 정립

【재무보고 프로세스】

주요 미비점	미비점 상세내역	개선방안
회계정책서 부재	회계정책서의 부재	회계정책서의 구비 및 회계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절차 마련
공시사항 검토절차 미비	주식 공시사항의 완전성 및 정확성 검토 절차 미비	공시사항점검표 작성 및 검토 절차 정립
이연법인세 검토절차 미비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금액의 적정성 검토 절차 미비 이연법인세 실현가능성 검토 절차 미비	체크리스트를 통한 검토항목의 정의 및 정교화 관리

(2) 정보기술일반통제 관련 주요 미비점 사례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보안】

주요 미비점	개선방안	
	최선	차선
권한부여 절차 부재	그룹웨어 등 전자결재 기능을 통한 권한 부여 요청서 작성 및 승인 절차 정립	수기(서면) 기안문을 통한 권한 요청서 작성 및 승인 절차 정립
사용자 계정 및 권한 회수 관리 미흡	부서이동자 및 퇴사자 발생시 계정 및 권한의 시스템 상 자동 회수 기능 구현	인사 부서와 IT부서의 적시 업무 연락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절차 및 IT부서의 수기 회수 처리 절차 정립

【프로그램 변경】

주요 미비점	개선방안	
	최선	차선
프로그램 변경 로그 모집단 확보 불가능	형상관리 툴을 도입하여 운영환경에 최종 반영된 건의 형상관리로 모집단의 완전성 확보	개발 툴에서 운영환경에 배포하는 최종 파일을 대상으로 주석 작성 절차 정립
개발과 운영의 직무 미분리	인력 충원을 통한 개발 담당자와 운영 담당자의 직무 분리	운영환경에 배포된 전체 프로그램 변경 이력을 대상으로 주기적 검토를 수행하여 개발담당자의 임의 변경 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문서화하는 절차 정립

【컴퓨터 운영】

주요 미비점	개선방안	
	최선	차선
데이터 일괄처리(배치잡) 관리 미비	데이터 일괄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자동 통보 기능을 설정하여 담당자가 적시에 오류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	일별/주별/월별 데이터 일괄처리 로그를 대상으로 성공/실패 이력을 검토하여 문서화고 장애 발생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위권자 승인을 득하는 절차 정립
백업관리 미흡으로 인한 재무데이터 손실	주요 데이터를 백업 대상으로 하고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자동 통보 기능을 통해 담당자가 적시에 오류를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	백업 대상 리스트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백업 수행 로그와 대사하고 검토 증적을 문서화하여 상위권자 승인을 득하는 절차 정립

3)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수검 시 CFO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경영진 검토통제

① 경영진 검토통제의 식별

‘경영진 검토통제’란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여 특별한 설계·운영 테스트가 필요한 유형의 검토 통제를 의미한다. 감사인은 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위험이 높으며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이 수반되는 통제를 경영진 검토 통제로 식별하며 해당 통제가 하기 항목을 고려하였는지 확인한다.

- 정보의 집계 수준, 기대치의 적합성, 중요한 왜곡표시를 식별하기 위한 조사 기준을 포함하여, 검토의 정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적절한가?(검토항목의 적정성, 중요가정들의 적정성, 근거자료의 신뢰성 및 적용된 각종 계산 방법의 적정성 등)
- 기대치와의 유의적인 차이를 식별, 조사 및 해결하는 절차는 적절한가?(검토 항목별 허용치를 설정하고, 허용치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확인하는 절차의 적정성 등)

② 경영진 검토통제의 수행 주체

‘경영진 검토통제’의 수행 주체는 회사의 상황과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재무담당임원 등 고위 경영진의 참여가 바람직하나, 반드시 고위 경영진의 승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 경영진 검토통제의 미비 사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미치는 영업상의 불리한 영향을 받는 회사의 경우, 자산손상 및 종속기업투자 손상평가 등 관련 ‘경영진 검토통제’의 설계 및 운영 미비로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비적정 사유로 귀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

사례

- A사 2020년말 감사보고서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건 근거 - 자산손상 관련
 - 회사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손상 인식의 정확성 검토에 대한 충분한 통제활동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재무상태표 계정과 자산손상 등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 B사 2020년말 감사보고서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건 근거 - 종속기업투자 손상평가 관련
 - 회사의 종속기업투자 손상평가와 관련한 내부통제절차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활용한 외부 전문가의 손상평가 보고서가 우리의 2020년 재무제표 감사 수행기간 도중 수정 되었으며, 이는 외부 전문가의 평가보고서 상의 사용된 자료 및 가정 등의 검증 통제절차의 운영 취약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종속기업투자 등의 재무상태표 계정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등의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관련 주석 등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2) 기업이 생성한 정보 관련 통제 설계 및 운영

① 기업이 생성한 정보의 식별

‘기업이 생성한 정보’란 기업의 정보시스템(수작업 시스템 포함)에서 생성되어 기업이 통제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보고서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원칙13에 따라

정보 요구사항의 식별(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50.1)이 필요하나, 그 범위 및 대상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 간의 의견차이가 다분히 존재한다.

② 기업이 생성한 정보 관련 통제 설계 및 운영 방안

식별된 ‘기업이 생성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항목에 대한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 테스트가 요구된다.

- 원천정보(기초정보)의 신뢰성(완전성, 정확성, 유효성)
- 보고서 로직(논리)의 적정성
- 입력 항목(파라미터)의 정확성

③ 기업이 생성한 정보와 연관된 통제 미비시 영향

기업이 생성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통제에 미비점이 존재하나 다른 보완 통제가 없을 경우, 통제 운영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통제 역시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식별하여야 하며, 그 미비점의 심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업무 분장

업무분장 Segregation of Duties, SOD은 매우 효과적인 거래 수준 통제활동 중 하나로, 특히 복잡한 시스템 하에서 업무처리가 이뤄지는 경우 업무분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이다(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102).

그러나,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나 다른 제약조건으로 인해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과도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경영진은 업무분장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보완통제 활동을 수립하여 관련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SOD에 대한 보완통제 활동은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즉, SOD 미분리로 인한 위험)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위험을 사전 예방 또는 사후 적발할 수 있는 통제활동을 설계할 경우, SOD 미분리로 인한 위험을 다소 완화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보완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SOD 대상 업무/권한 및 보완통제 사례】

프로세스	SOD 대상 업무/권한	SOD 미분리로 인한 위험	보완통제 예시
재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표 작성 Preparation/Park 전표 승인/전기 Approval/Po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담당자가 부적절한 전표를 작성하여 승인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동 통제] 경영진(또는 팀장)은 시스템에 입력된 모든 전표와 해당 사용자 ID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함
매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마스터Customer master 관리 대금 청구 문서Customer invoice 기록 또는 판매 주문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담당자가 가공의 고객 코드를 생성하거나 기존 고객 코드를 부적절하게 변경하고, 해당 고객에 대한 판매 주문을 입력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승인되지 않은 가격 또는 승인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판매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 통제] 선적이 완료된 수량에 기초해서만 대금 청구 문서가 생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전표 처리가 이루어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음 [자동 통제] 고객 채권 잔액에 대한 수동 변경 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음
구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업체 마스터 Vendor master 생성/변경 구매 주문Purchase order 처리/승인 구매 송장Invoice 처리/승인 대금 지급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담당자가 가공의 공급업체를 생성하거나 기존 공급업체 정보를 부적절하게 변경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승인 되지 않은 구매 주문을 입력하고 승인하여, 승인 되지 않은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조달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입고 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금이 지급될 수 있음 업무담당자가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대금 지급 처리하고, 회사의 공급업체 중 하나에 대한 지급으로 기록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동 통제] 경영진(또는 팀장)은 주기적으로 공급업체 마스터의 모든 (중요한)변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수동 통제] 자금 지출은 담당자와 독립적인 제3자가 승인함 [자동 통제 및 수동 통제] 시스템에 의한 3 way mat-ching (주문 금액, 입고 금액, 세금계산서/invoice) 및 비정상 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함 [수동 통제] 경영진(또는 팀장)은 대금 지급 전에 구매 송장 invoice 또는 세금계산서 검토함 구매 주문 '변경'과 구매 주문 '승인' 기능의 분리
재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고 실사 수행 재고 입고 처리 재고 수불부 기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담당자가 재고를 횡령하고 이를 은닉하거나 재고 잔액을 부풀릴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동 통제]재고관리 및 재고 기록 업무 외 담당자가 재고실사결과와 재고수불부와의 차이에 대해 조사/검토함

자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 이체 입력 • 자금 이체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담당자가 승인되지 않은 또는 받지 않은 상품/서비스에 대해 부정한 송금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 통제] 자금 이체 담당자 외 제3자가 은행계정대사Bank reconciliation을 수행함 • [수동 통제] 경영진(또는 팀장)은 모든 자금 이체 건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함
급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마스터 데이터 생성/변경 • 급여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담당자가 가공의 직원을 생성하거나 직원 마스터 데이터의 부적절한 변경 후, 급여 업무 절차(급여 계산)를 진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 통제] 경영진(또는 팀장)은 급여 지급 전에 급여 계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함

ESG

|

안진회계법인 백인규 ESG 센터장

1. ESG의 개념	1) ESG의 역사와 정의	120
	2) SDGs, CSR, CSV와의 차이	122
	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24
2. Why ESG?	1) 기후변화	127
	2) 정부 및 규제기관	129
	3) 투자자	132
	4) 고객 및 소비자	135
3. ESG 공시 및 평가	1) 공시 기준	137
	2) ESG 평가기관	140
	3) ESG 공시 관련 제도적 동향	144
4. 국내 기업의 대응	1)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146
	2) ESG 경영 전략	147

1 ESG의 개념

1) ESG의 역사와 정의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영어 앞 글자를 따서 조합한 용어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수준을 판단하는 비재무적 척도가 되는 개념이다.

【ESG 구성 요소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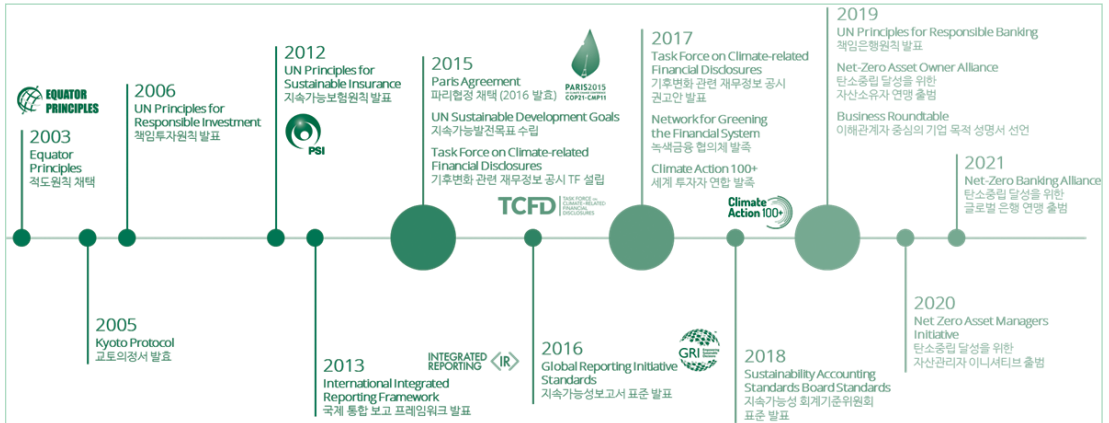
환경	사회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 환경 오염 재생에너지 연료 사용 에너지 효율성 기후변화 리스크 수자원 관리 자원 고갈 자원 재활용 산림 파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 및 안전 근무 환경 및 조건 임직원 복지 노사관계 다양성 및 포용성 인권 현대 노예 아동 노동 착취 지역사회 영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 기준 뇌물 및 부패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주주 권리 경영진 보상 정치적 로비 및 기부 조세 전략 등

출처: World Economic Forum /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위 3가지 요소에 대한 기업의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면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각개의 입장과 목적에 맞추어 이를 활용한다. 먼저, 정부와 규제기관은 기업의 ESG와 관련된 규제 준수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세제 혜택 부여나 벌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필요 시 시정 목적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사용한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친환경 또는 소셜 임팩트⁵를 추구하는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 기업의 ESG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 및 직·간접적 투자를 실행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은 기업의 친환경/지속가능경영 수준에 따라 기업이 생산,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늘리거나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관련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입사 또는 근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지금껏 기업의 중요한 단일 존재 목적으로 중시하여 온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이윤 창출’ 외에도 ESG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요구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5) 기업의 활동 또는 투자 활동 등을 통해 사회 구조 및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

[ESG 발전 흐름 및 주요 마일스톤]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이슈가 대두되고, ‘ESG 경영 패러다임’으로의 급속한 전환세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사실 ESG 개념은 반세기 전부터 오랜 논의를 거쳐오며 발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출처를 통해 각기 다른 기원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ESG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데 일조한 기후변화 이슈와 연계하여 대략적인 흐름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장 먼저 1960~80년대에 관련 논의가 시작된 시기를 꼽을 수 있다. 1962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레이철 카슨 Rachel Carson이 출간한 ‘침묵의 봄 Silent Spring’을 시작으로 1972년 전 세계 석학들과 기업가 및 정치인들이 모여 결성한 로마클럽 Club of Rome의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 보고서, 1987년 유엔환경계획 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이름의 브룬트란트 보고서 Brundtland Report 등이 연달아 공개되며 인구 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 및 문명파괴에 대한 이슈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으로서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이 양립 가능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로 이어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채택함과 동시에 UN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 FCCC, 생물다양성협약 CBD, 사막화방지협약 CCD이 체결됨으로써 국제적 행동을 위한 신호탄을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유엔 UN 주도 하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를 달성 기간으로 하는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와 이후 2030년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각각 2000년과 2015년 연달아 발표되며 지속가능발전을 인류 공동의 목표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 모멘텀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는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1997년 채택, 2005년 발효’와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2015년 채택, 2016년 발효’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합의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는 국제기구와 국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 민간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 구성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촉진에 참여하는 현재의 시기를 들 수 있다. 2003년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채택 및 2006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PRI 발표 등과 같은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가 연이어 출범되어 민간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다양한 비영리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견인하고 있는 중이다.

2) SDGs, CSR, CSV와의 차이

현재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환경/사회/경제 3대 영역의 트리플 바텀라인Triple Bottom Line, 공유 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이하 CSV,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사회공헌 등 ESG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비슷한 듯하지만 개념과 범위가 약간씩은 상이하므로, ESG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연관성이 높은 개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UN이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균형 잡힌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정진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서 제시한 목표로 기존에 개발도상국의 절대 빈곤 퇴치에 초점을 맞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인류,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대 영역에 걸친 17개 핵심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Leave No One Behind’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인류(빈곤, 기아, 질병, 양성평등 등)와 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고용, 사회기반시설, 평화, 정의, 법/제도 등) 전반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ESG 요소와 교차하는 영역이 상당하다. 또한, 기존 MDGs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주 재원으로 활용하였다면, SDGs의 경우 공공-민간 투자 등 보다 확대된 자원 활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자원 조달을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ESG가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높은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그 역할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출처: United Nations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명확하게 하나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으나, 기업의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지야 함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의 경제적 이윤 창출 과정에서 무수히 발생하는 부정부패 및 환경오염, 노동 착취 등의 환경/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기업 또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지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부터 학계와 국제기구들의 다양한 역할 정립 시도를 통해 과거 전통적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에 맞춰져 있던 기업의 유일무이한 역할과 책임에 새로운 광의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발전되고 진화되어 왔고, 많은 이들이 기업과 ESG 간의 연계가 시작된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특별하게 정해진 기준 없이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CSR을 편의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평판과 명성을 관리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자선활동이나 일회성 기부 등의 소극적 활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짙었다는 한계가 있다.

(3) 공유 가치 창출CS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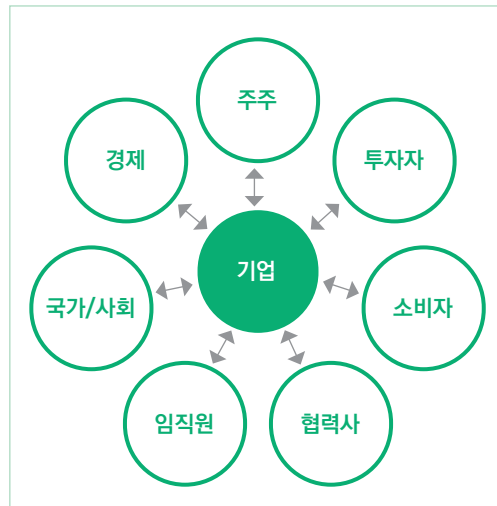
이러한 무효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기업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바로 공유 가치 창출CSV이다. 2006년 마이클

E. 포터 하버드대 교수와 마크 R. 크레이머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⁶⁾에 처음 소개하여 2011년 확장된 개념으로, 기업의 경제적 성장과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은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업 전략모델로서 제시되었다. 즉, 단순히 기업에 주어진 책임을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 보다 능동적인 문제 해결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참여형 사회 주체로서의 기업 역할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SR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를 통해 기업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 CSV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방점을 두어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기업의 사업 활동과 분리되어 추진되었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사업 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것이 더 발전되어 ESG 경영 패러다임이라는, ESG 요소를 기업 영역 전반에 통합, 반영하여 사업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의 대대적인 혁신과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로 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 경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발한 하나의 축이 ‘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외부 인식 변화였다면,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기업의 단일 존재 이유였던 이윤 창출은 단 하나의 이해관계자인 ‘주주’만을 위한 이익 극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또한 확장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 소비자, 정부 및 규제기관,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보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공동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로써 재계를 군림해오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는 새롭게 등장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stakeholder

【기업의 이해관계자 구조】



출처: Modern Company Management in Mechanical Engineering(Klaus Schwab, 1971)

6) 원제: Strategy &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ichael E. Porter & Mark R. Kramer, 2006)

capitalism'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2019년 8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의 '기업 목적 성명(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과 2020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20 다보스 성명(Davos Manifesto 2020)'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확실히 굳혀지게 되었다.

(1) 기업 목적 성명(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미국 기업의 CEO들 간 결성된 협의체로, 1972년 창립된 이래 기업 목적을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정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미국 산업과 재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2019년 8월, 새롭게 발표한 '기업 목적 성명'에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헌신'을 공식적으로 명시함으로써 1997년부터 유지해 온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기업의 명실상부한 목적을 완전히 대체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을 맞이하였다. 아마존(Amazon)의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와 애플(Apple)의 팀 쿡(Tim Cook)을 포함한 200여 명의 CEO가 서명에 참여하였고, 고객과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번영(inclusive prosperity)을 위해 다음과 같이 헌신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기업 목적 성명 주요 내용〉

- 우리는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미국 기업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킨다.
- 우리는 공정한 보상과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급격히 변하는 세상을 위한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는 훈련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직원**에게 투자한다. 또한, 다양성과 포용, 존엄성과 존중을 장려한다.
-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한다.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크고 작은 회사에 좋은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한다.
-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 우리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 혁신을 위한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를 위해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우리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주주 참여를 보장한다.

출처: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Business Roundtable, 2019/08)

(2) 2020 다보스 성명(Davos Manifesto 2020)

민-관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로 1971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치·경제·언론·학계 대표 인사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 수립을 통해 시대의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2020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제4차 산업 혁명시대에 기업을 안내하는 보편적 목적으로서 향후 5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다보스 성명’을 제시하였다. 이미 1973년 고객, 주주, 직원, 사회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기업의 윤리강령 성격으로 발표하였던 기존의 ‘다보스 성명(Davos Manifesto 1973: A Code of Ethics for Business Leaders)’을 ESG 경영 패러다임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보다 확장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기업의 윤리원칙을 담고 있다. 그는 이어 2020년 1월, ‘결속력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for a 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이라는 주제로 제50차 연례회의(다보스포럼)를 주재함으로써 전 세계 3천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사실상 전통적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실시하였다.

〈다보스 성명 내용〉

A. 회사의 목적은 공유되고 지속적인 가치 창출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기업은 주주 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헌신해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의 장기적인 번영을 강화하는 정책과 결정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통해서이다.

- i. 기업은 고객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하는 가치를 제공한다. 또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수용하고 지지한다. 부패를 용납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유지한다.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외부 효과 등을 포함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한다.
- ii. 기업은 직원을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근무 조건 및 직원 복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급격한 변화의 세계에서 지속적인 기술 향상과 재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한다.
- iii. 기업은 협력업체를 가치 창출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로 여긴다.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급망 전체에 인권에 대한 존중을 통합한다.
- iv. 기업은 사업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봉사하고,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공정한 세금을 납부한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및 물질 우주의 청지기 역할을 한다.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물권을 보호하고 순환, 공유 및 재생 경제를 옹호한다. 사람들의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 혁신 및 기술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 v. 기업은 기업가적 리스크와 지속적인 혁신 및 투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투자 수익을 제공한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주주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단·중·장기 가치 창출을 책임감 있게 관리한다.

B. 기업은 부를 창출하는 경제적 단위 그 이상이다. 기업은 더 넓은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서 인간과 사회적 열망을 충족시킨다. 기업의 성과는 주주 수익을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및 우수한 거버넌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측정되어야 한다. 경영진의 보수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반영해야 한다.

C. 다국적 활동 범위를 가진 기업은 직접적으로 연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사회의 미래를 위한 이해관계자로서 행동한다. 글로벌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전 지구의 상태 개선을 위해 다른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핵심 역량과 기업가 정신, 기술 및 관련 자원을 활용한다.

출처: Davos Manifesto 2020: The Universal Purpose of a Compan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Klaus Schwab, 2019/12)

2 Why 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강화, 그리고 기업이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의 확장을 이끈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왜 지금 우리는 ESG 경영을 부르짖고 있을까? 전 세계적인 ESG 이슈의 확산은 최근의 팬데믹과 잦은 기후 이상 현상, 인간활동이 만들어낸 무수한 재해들이 국경의 구분 없이 발발함에 따라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경주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기존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부들이 노력을 주도하였던 것에서 이제는 민간, 시민사회까지 적극 나서고 있으며, 특히 기업은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부터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가진 핵심 참여자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역할에 대한 외부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라는 거시적 외부 환경 속에 이러한 압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국내외 규제의 강화로, 기업의 ESG 경영을 촉구하는 ESG 기반 지속가능금융/투자(책임 투자, 임팩트 투자 등)의 확대로, 또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이슈에 관심 높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은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해관계자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기에 미래의 성장과 존속을 지키기 위한 ‘절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과제’로 ESG 경영을 받아들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ESG 물결이 국내외 산업 재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나름의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1) 기후변화

산업혁명 이래로 화석연료 사용과 산림 파괴 등의 인간활동으로 인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촉진시키는 주 원인이라는 것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C’가 195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 채택됨으로써 과거 과학계에 의견이 분분했던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보고서는 이 시대 기후변화 관련 최상위 국제 합의인 파리협정이 내건 지구온난화 1.5°C 목표에 대한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CO₂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넷 제로 net zero⁷ 시켜야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CO₂를 포함한 6대 온실가스⁸는 열을 대기 중에 가두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본 보고서에

7) 인위적 배출량이 인위적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어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8)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따르면 지금까지 인간활동은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약 1°C의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시 지금으로부터 불과 10~30년 후인 2030년과 2052년 사이에 1.5°C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⁹⁾.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임계점의 역할을 하는 1.5°C의 의미는 사람의 체온 변화를 생각해 보면 쉽다. 사람도 1~2도 차이로 미열과 심각한 고열을 오고 가듯 지구의 평균온도가 1.5°C로 상승할 경우 거주지역 대부분에서 극한 고온이 발생하고, 호우와 가뭄 등의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 및 사막화 등으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전 지구의 생태계가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 불과 단 0.5°C의 차이로 2°C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배 이상의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온난화 1.5°C와 2.0°C 간 주요 영향 비교】

변수	1.5°C에서의 영향	VS	2.0°C에서의 영향	차이
해빙이 없는 북극해의 여름	최소 100년에 한 번		최소 10년에 한 번	10배 더 높은 확률
2100년까지 해수면 증가세	0.4미터		0.46미터	15% 증가
생물군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면적	7%		13%	약 2배
식물 종의 감소	8%		16%	약 2배 감소
곤충 종의 감소	6%		18%	3배 감소
척추동물 종의 감소	4%		8%	2배 감소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	약 12억		약 16억	4억 명의 더 많은 인구
주거지 악화에 노출되는 인구	천만		1억 이천만	10배 이상
심각한 가뭄에 노출되는 도시 인구	3억 오천만 이상		4억 천만 이상	약 20% 더 많은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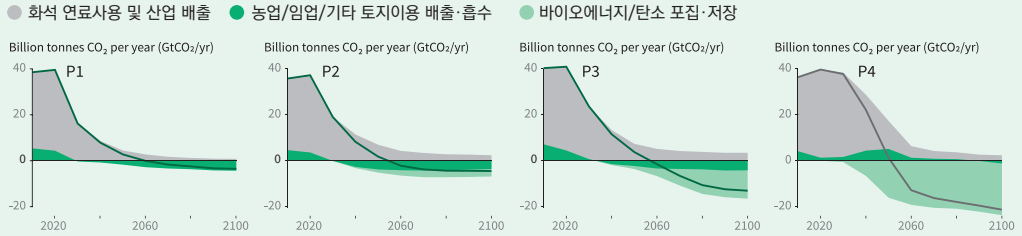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분석; World Resources Institute와 IPCC Global Warming of 1.5°C 보고서 내용 각색

IPCC 보고서는 지구온난화 1.5°C 제한을 위해 4가지 감축경로를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시나리오는 전력의 저탄소화와 에너지 소비 전환, 탄소 포집·저장 등 다양한 감축 옵션들을 활용하여 CO₂ 배출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대폭 축소하여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신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력화 등을 통해 산업 부문 배출량을 2010년 대비 75~90%를 감축하는 한편, 수송의 저탄소 에너지원 비중을 35~65%로 확대시킴으로써 대대적인 경제사회와 산업 구조 전반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의 근간으로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9) IPCC는 2021년 8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지구 평균온도는 약 1.1°C 상승하였으며, 기후위기를 막을 마지노선인 1.5°C는 기존 전망 대비 10년 단축된 2040년 내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 조정. 본 고에서는 많은 국가들의 감축목표 수립의 근간이 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중심으로 기술함

IPCC 지구온난화 1.5°C 제한 시나리오



- P1-P3 : 지구 온도의 일시적인 초과 상승이 없거나 낮은(0.1°C 미만) 경우의 1.5°C 달성 시나리오
 - P1 : 사회·경제·기술 전반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탄소 포집·저장 불필요
 - P2 : 에너지·인간·경제 등의 지속가능성에 초점, 저탄소 기술 혁신 및 효율적인 토지 관리 등을 수반
 - P3 : 전통적 방식의 사회적·기술적 개발로 에너지 및 생산방식 변화 등에 중점
- P4 : 지구 온도의 일시적인 초과 상승이 있는 1.5°C 달성 시나리오로 다량의 탄소 포집·저장 필요

출처: 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C - Summary for Policymakers (IPCC, 2018);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SPM 주요내용 (기상청, 2018)

2) 정부 및 규제기관

전 세계 국가들은 IPCC가 제시한 감축경로를 바탕으로 2050년 내 탈(脫)탄소화를 통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하에서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설정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이하 LT-LEDS)을 수립 중에 있다. 2021년 7월 현재, 192개 국가가 NDC를 제출하였으며, 30개 국가가 LT-LEDS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1차 NDC를 제출한 후, 지난 2020년 12월, 새롭게 개정된 NDC와 함께 LT-LEDS를 제출한 바 있다. 2021년 6월 기준,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도 137개국에 달한다.¹⁰ 이미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¹¹)를 달성한 부탄과 수리남을 제외하고, 2030년과 2100년의 기간 사이에 다양한 목표 시한을 제시¹²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124개국(90%)이 IPCC 감축경로에 맞춘 2050년을 대세로 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총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약 73%를 차지(중국 25%)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10) Race to Net Zero: Carbon Neutral Goals by Country(Visual Capitalist, 2021/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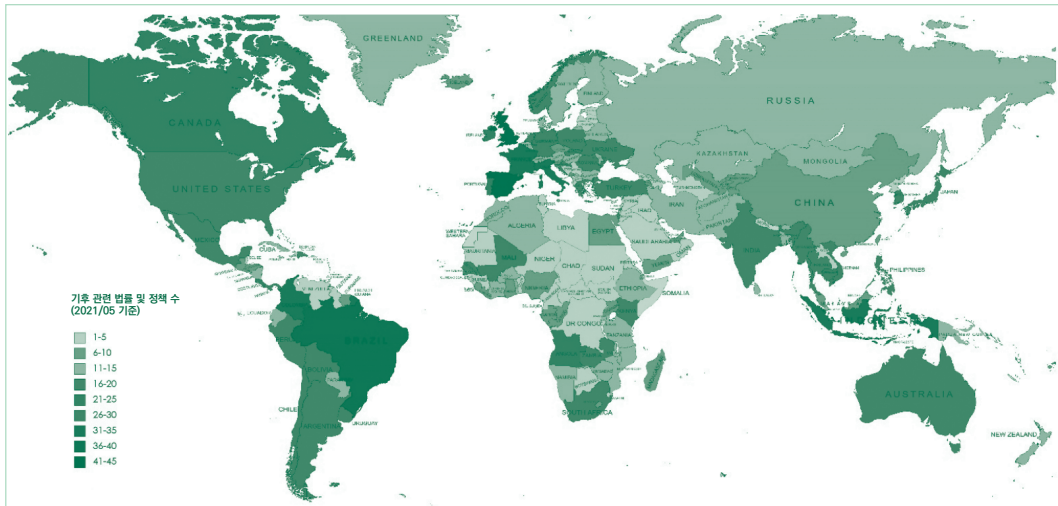
11)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넘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

12) (2030) 우루과이, (2035) 핀란드, (2040) 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 (2045) 독일/스웨덴, (2060) 중국/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2050-2100 사이) 싱가포르/호주, (2050) 나머지 124개국

달성이 갖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 많은 국가들이 법이나 정책 입안을 통해 탄소중립 공약 실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¹³ 이 외에도 전 세계 국가들이 제정한 기후 관련 법률/정책은 2021년 7월 현재 2,291건이다.¹⁴ 1980년대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법이나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였지만, 2000년을 기준으로 SDGs 달성을 근거로 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률/정책이 폭발적인 성장세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기후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기타 관련 법이나 정책에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하여 추진하기도 한다. 예로, 전체의 약 25%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나머지 75%는 에너지와 같은 부문별 정책이나 국가경제발전계획 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국가계획의 일부로 기후 이슈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전 세계 기후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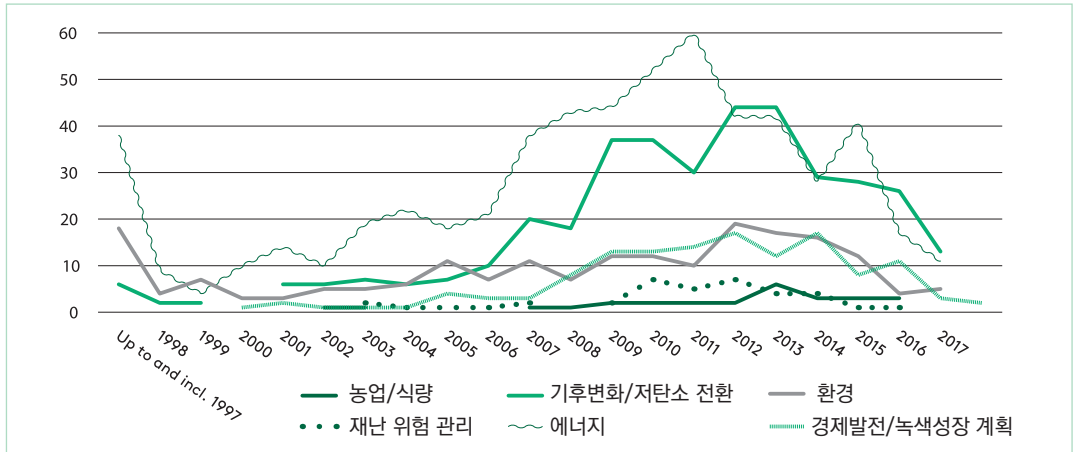


출처: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1 snapshot (Setzer J and Higham C, 2021)

13) (법제화) 스웨덴/덴마크/프랑스/헝가리/뉴질랜드/영국 6개국,
 (법안 입안) 한국/캐나다/EU 등 5개국,
 (정책 수립/반영) 중국/미국/독일/브라질 등 24개국

14) LS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 (<https://climate-laws.org/>)

【전 세계 부문별 기후 법률/정책 제정 추이】



출처: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egislation and litigation: 2018 snapshot(Nachmany M and Setzer J, 2018)

이러한 기후 법률/정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발전과 산업 부문 전반에 당근과 채찍을 균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제조공정상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내연차 판매 중지 및 차량 연비 규제, 환경유해폐기물 배출 규제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기술 R&D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비용 효과적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여 오염자가 환경 영향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Polluter Pays Principle** 탄소가격책정제도(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가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2012)」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 **K-ETS**를 2015년 도입하였으며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각 계획기간별 배출권 허용총량을 설정함으로써 국가 총 배출량(2018년 기준 727.6백만 톤)¹⁵⁾의 약 70~80%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으로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 6대 부문에 69개 업종, 685개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¹⁶⁾되어 참여 중이다.

종래 탄소가격책정제도는 특정 국가 및 지역 경계 내에서만 적용되었다면, 최근에는 EU와 미국을 선두로 국경을 넘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carbon border tax**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15) ·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

16) ·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환경부 보도자료, 2020/09/29)

국가로 공장이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EU는 2021년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도입(안) 발표를 통해 2023년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5대 부문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 도입할 것임을 예고¹⁷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취약한 국가와 기업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對 EU 주요 9대 수출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¹⁸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9대 수출업종 전체)가 부담할 탄소세는 총 약 2,900억원, 2030년에는 약 2.45배 증가한 7,100억원이며,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2023년 각각 수출액의 5%, 2.1%, 2030년에는 12.3%, 5.1%를 탄소세로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아직 EU의 CBAM이 입안 단계에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요주의 산업군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3) 투자자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규제 강화와 함께 기업의 ESG 경영을 촉발시킨 또 다른 동인은 금융계의 지속가능금융/투자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IPCC는 지구온난화 1.5°C 제한을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에 2016~2035년간 매년 2.4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공공-민간 투자 전반의 대대적인 방향 수정이 필요함¹⁹을 강조하였다.

또 2030 SDGs 달성에는 연간 약 5~7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²⁰도 있다. 국가의 예산과 공적개발원조(ODA)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해지면서 민간 금융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고, EU의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 2018)’과 한국의 ‘녹색금융 추진계획(2021)’ 등 각국 정부들은 공공-민간 부문의 지속가능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계 내부적으로도 기후변화를 상당한 투자 리스크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별 중앙은행 간 대표적 협의체인 국제결제은행(BIS)은 2020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타격을 미치는 불확실한 금융 리스크를 뜻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에 빗대어 기후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금융경제 위기 가능성을 ‘그린 스완(Green Swan)’으로 정의²¹하며,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Questions and Answers(European Commission, 2021/07/14)

18)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요 3 개국(美·中·EU)을 중심으로(EY한영 회계법인/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21); 對 EU 9대 수출 업종: 철강, 석유화학, 전지, 자동차, 일반기계, 조선, 의약, 가전, 통신(비중 높은 順)

19)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SPM 주요내용(기상청, 2018)

20)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II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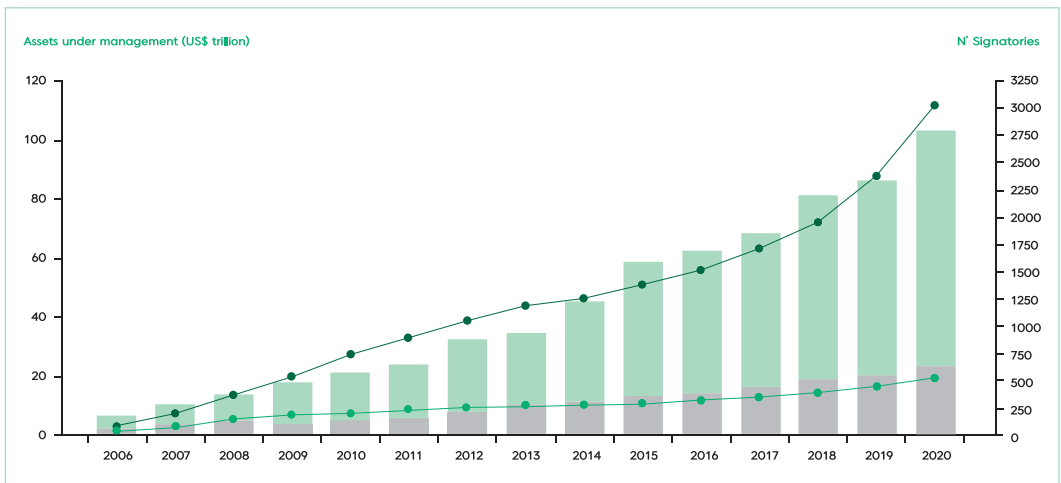
21) The green swan: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BIS, 2020)

금융권의 장기적인 지원과 금융권 자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는 2020년과 2021년 기업 CEO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방침을 밝히며, 탄소중립 등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함으로써 지속가능금융과 책임 투자 확산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책임투자원칙PRI’²²을 지지하는 서명기관은 2006년 4월 출범 당시 95개(총 8.5조 달러 운용 규모)에서 2021년 6월 현재, 총 약 130조 달러 운용 규모의 4,074개 기관으로 증가했으며, 기관투자자들의 책임 투자 확산으로 전 세계 ESG 펀드 운용 규모 또한 비슷한 추이를 그리며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6월 기준, 전 세계에서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534개 ESG 펀드가 운용 중이며,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이 각각 75%,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지역이 나머지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타 지역에서 중국, 호주, 대만,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다음으로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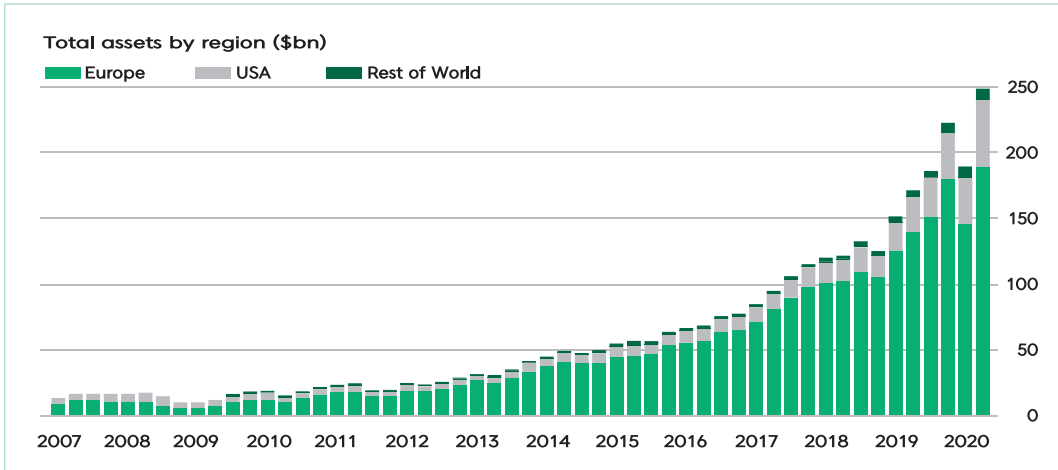
【PRI 서명기관 수 및 자산운용 규모】



출처: UN PRI

22)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 시 ESG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수익 확보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2006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와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발표한 책임 투자 관련 대표적 국제 원칙

【전 세계 ESG 패시브(뮤추얼/ETF) 펀드 규모】



출처: Passive Sustainable Funds: The Global Landscape 2020(Morningstar, 2020/09/04); ESG bond funds held back by fear of criticising US, research suggests(Financial Times, 2020/09/02)

책임 투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스투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이다.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으로서 2010년 영국에서 기업 지배구조 관여 취지로 최초 제정·도입되었고, 한국은 2016년 12월 제정하여 2021년 6월 현재 총 162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²³

2020년부터 영국과 일본은 수탁자의 책임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과 사회 이슈까지 포함하도록 원칙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2021년 4분기 개정 검토가 예정되어 있다.²⁴ 국내 책임 투자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은 2018년 스투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기금 운용에 ESG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국내 주요 연기금의 ESG 투자 운용 규모는 33.2조원으로 국민연금이 약 97%(32.2조원, 전체 기금 자산의 4%, 국내주식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 배출 감축 요구 및 탄소국경세 등의 국제적 규제에 대응하고 기금 운용 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석탄채굴·발전산업에 투자하지 않는 탈석탄 운용 정책과 2021년부터 국외주식 및 국내채권 자산군까지 ESG 통합 전략을 확대 적용하여 2022년 책임 투자 자산 규모를 전체 기금 자산의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3)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

24)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금융위원회/환경부, 2021)

이에 따라 2024년 ESG 투자 규모는 50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²⁵ 결국, 지속가능금융/투자 확산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 시 기업의 ESG 성과와 리스크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하는 금융계의 생태적인 변화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ESG 경영을 도입하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4) 고객 및 소비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여러 고객군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존재하지만, ESG 경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고객군은 바로 MZ세대이다. 2019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MZ세대(밀레니얼 + Z세대, 1981~2010년생)에 해당하는 인구는 총 1,797.4만 명(만 16세~40세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4.7%를 차지한다. 이들은 직장 구성원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며 50%에 육박하는 소비 구매력으로 사회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핵심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²⁶ 특히, 디지털 기술 환경과 세계화에 익숙한 이들은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시하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 시대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주체(trend-setter)로서 기업의 경영과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딜로이트 글로벌이 2021년 초 전 세계 45개국 MZ세대 총 22,9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²⁷ 결과를 보면, MZ세대가 가장 우려하는 사안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모두 상위(밀레니얼 3순위, Z세대 1순위)로 꼽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도 환경에 관한 이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응답자의 60%는 기후변화 이슈가 기업 리더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각각 53%, 52%)이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업이 사회 전체보다도 여전히 이익 추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식(각각 70%, 68%)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익 추구 외에 다른 목표가 전혀 없다는 의견도 각각 62%와 59%에 달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이 기대가 아직 충분히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에 대한 기업의 진정성이나 준비 수준 측면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망감 때문인지 실제 많은 응답자들이 지난 2년간 환경과

25) '국민연금' 관련 전체 출처: 2019 국민연금기금 연차보고서/2019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국민연금, 2020);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금융위원회, 2021);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금융투자협회, 2020);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보건복지부, 2019); MK증권, 국민연금, 2년내 운용기금 50% ESG에 투자(2020/11/09, 문지웅 기자); 국민연금기금,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탈석탄 선언'(보건복지부, 2021/0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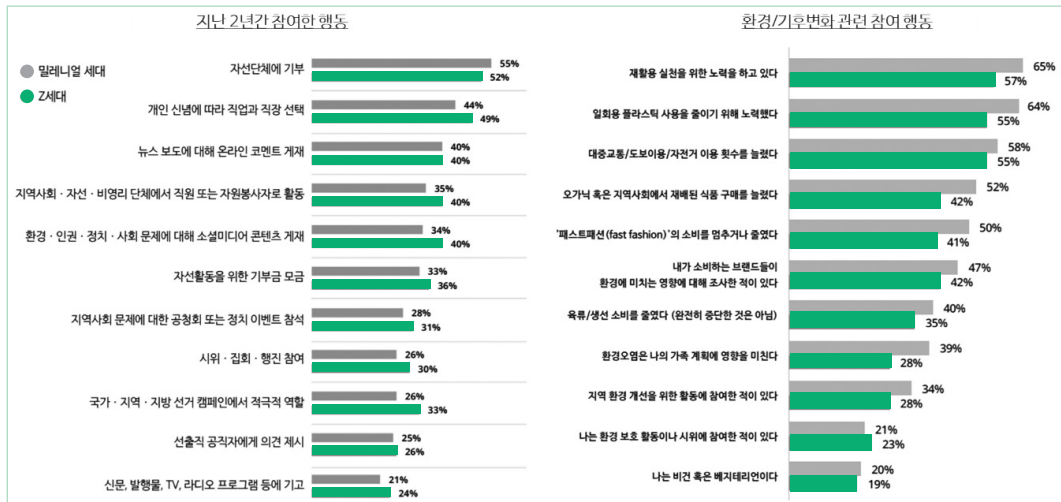
26) MZ세대를 잡아라(아시아경제, 2021/04/19); 미래 비즈니스 바꾸는 新인류 'MZ 세대'(이코노미조선, 2021/05/31)

27) 딜로이트 글로벌 2021 MZ세대 서베이: 책임과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1); 2021.01.08 ~ 2021.02.18 동안 밀레니얼 세대(1983~1994년생) 14,655명과 Z세대(1995~2003년생) 8,27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질의 및 인터뷰 형식으로 설문 진행; 한국은 각각 300명, 202명이 참여

사회 관련 이슈에 대해 소셜 미디어나 보도 매체를 통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과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해 왔다. 특히,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친환경/지속가능성 제품의 구매를 늘리고,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구매를 줄이거나 멈춤으로써 구매력을 행사하였으며, 일상 생활에서도 개인/사회/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 실천하였다.

MZ세대는 소비자로서 개인 신념에 따라 각자가 소비하는 제품과 브랜드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로서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기도 한다. MZ세대들이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각각 37%, 40%) 이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기업의 경영 이념과 사업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MZ세대 참여 행동】



출처: (좌) 딜로이트 글로벌 2021 MZ세대 서베이: 책임과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1); (우) 딜로이트 글로벌 밀레니얼 서베이 2020; '더 나은 노멀'의 중심축(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0)²⁸

28) 2019년 12월 43개국 18,400명의 밀레니얼 세대(1982~1994년생)와 Z세대(1995~2003년생)를 대상으로 진행

【주요 국제 ESG 공시 기준】

	Framework			Standard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INTEGRATED REPORTING <IR>	 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GRI	 SASB
주제	기후변화	재무 정보 및 지속가능성	환경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범위	일반 및 산업	일반	일반	중대성 평가/일반 및 산업	재무적 중대성/산업
대상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이해관계자 전반	투자자
보고채널	기존 보고서의 재무정보 부문 내 통합	통합보고서	연례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연례사업보고서 등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분석

(1)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³⁰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는 G20 산하에 국제 금융규제 및 감독 역할을 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15년 발족한 것으로, 2017년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감축목표 및 지표의 4개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경영 전반에 이를 반영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여 시나리오별 단·중·장기 기후변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2021년 7월 기준, 전 세계 88개국의 2,300개 이상 기관들이 TCFD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총 64개 정부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77개국 1,700개 이상 기관, 국내 10여 곳이 지지를 한데 비해 단시간에 놀라운 속도로 확장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과 뉴질랜드처럼 TCFD 권고안 준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등에 자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lobal Reporting Initiative³¹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이하 GRI는 1997년 미국 비영리기구 CERES/Tellus Institute와 유엔환경계획 UNEP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기구로 1989년 발생한 엑슨 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 심각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사회와 경제, 거버넌스

30) 출처: TCFD (<https://www.fsb-tcfid.org>)

31) 출처: GRI (<https://www.globalreporting.org>)

이슈까지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최초의 글로벌 프레임워크인 GRI 가이드라인G1을 발표하였으며, 사용자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2013년 G4까지 단계적인 개정을 거쳤다.

2016년에는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최초의 국제 표준GRI Standards을 개발하여 일반 부문 외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의 세부 주제별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작성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재무보고 수준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현재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1만개 이상 기업/기관들이 GRI 표준을 적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 발간 중일 만큼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다.

(3)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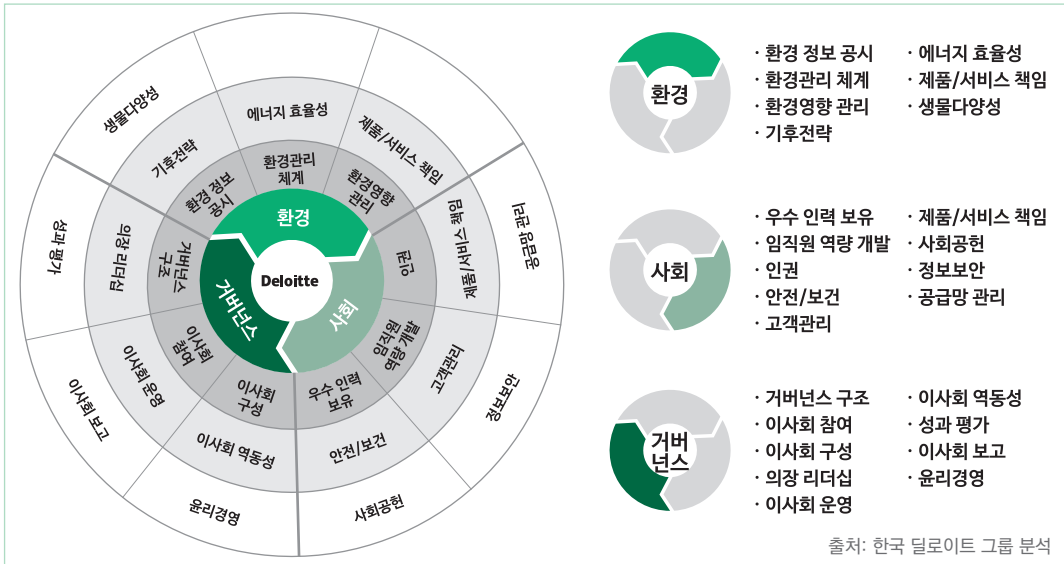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SASB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비재무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2011년 진 로저스Jean Rogers가 설립한 비영리기구이다. ESG 요소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자 하는 금융 자본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정보만을 보고하도록 하는 정형화된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8년 77개 산업별 중대성 지도SASB Materiality Map를 포함한 보다 발전된 표준SASB Standards을 개발하여 각 산업별로 고려해야 할 핵심 ESG 이슈를 가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간 기업과 투자/금융기관이 집중 관리 영역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전반을 다루는 GRI 표준과 달리 지속가능성 이슈의 재무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고 GRI 표준을 보완하는 공시 기준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SASB는 지난 2021년 6월, 기업의 유무형 자산별 가치 창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와의 합병을 통해 ‘가치 보고 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을 설립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보고 프레임워크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부분의 국내외 기업은 GRI 표준을 기반으로 ESG 정보를 공시 중이며 점차 많은 기업들이 TCFD 권고안과 SASB 표준을 추가로 통합 적용하여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각각의 기준들이 요구하는 ESG 보고 항목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개 비슷한 범위와 내용으로 구성되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주요 국제 공시 기준을 분석하여 도출한 25가지 핵심 공시 영역은 다음과 같다.

32) 출처: SASB (<https://www.sasb.org>)

【ESG 핵심 공시 항목】



2) ESG 평가기관

기업의 ESG 성과는 평가기관들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하거나, 기업 공시정보 등 대외 공개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자체 평가 방법론에 따라 차별화된 등급을 도출하고 있다. ESG 공시 기준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600개 이상의 평가/등급 체계가 존재(2018년 기준)³³⁾하여 현재는 일관된 평가체계가 없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동일 기업이라도 평가기관에 따라 상당한 결과값의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평가의 질과 유용성 측면에서 상위로 꼽은 4개의 글로벌 평가기관³⁴⁾과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33) Rate the Raters 2020: Investor Survey and Interview Results(Sustainability, 2020)

34) 상동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별 평가 방법론】

	평가기관	평가방법	평가척도	평가 항목
플랫폼 기반 평가	EcoVadis Sustainability Ratings	•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실시	0~100 (Scorecard)	• 공급업체에 대하여 5가지 주제-일반(3문항), 환경(14문항), 노동관행 및 인권 정책(9문항),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7문항), 지속 가능한 조달(6문항)- 총 39개 CSR 질문으로 구성
	S&P Dow Jones Indices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 피평가자가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 실시	100~0	• 공통 평가항목 및 산업별 항목으로 구분 - 공통 항목 : 기업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공급망 관리, 환경성과, 인적자원개발, 사회공헌, 사회환경 정보 공개 - (금융) ESG Framework 구축, ESG 상품/서비스 이름 및 금액 공시 등
	CDP Climate, Water & Forest Scores	• 피평가자가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 실시	A to D-, F	• 환경 관련 3가지 영역에 대해 질의 - 기후변화 : 온실가스 배출량, 지배구조, 전략, 감축목표 등 - 산림 : 산림훼손 원자재, 원자재 의존도, 관련 정책, 의사결정구조 등 - 물 : 수자원 사업상 중요도, 수자원 관련 정책, 의사결정구조, 취수량 등
공시정보 기반 평가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SG Ratings	• 공개 정보 기반으로 평가 실시 • 피평가자는 정보 검증 과정에 참여 가능(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AAA to CCC (Leader, Average, Laggard)	• ESG 관련 10개 주제, 37개 이슈로 구분하여 평가 - 환경 이슈 : 탄소 배출, 전자폐기물, 친환경 기술 관련 기회 등 - 사회 이슈 : 인적자원개발 등 - 거버넌스 이슈 : 이사회, 급여, 소수권 통제 등 ※ 이슈별 세부 평가항목이 있으나 피평가 기관 별도 요청 필요
	Sustainalytics ESG Risk Ratings	• 공개 정보 기반으로 평가 실시 • 피평가자 요청 시 보고서 발간 전 리뷰 및 정보 업데이트 가능	0~40+ (Negligible, Low, Medium, High, Severe)	• 지배구조, 주요 ESG 이슈(산업별 상이), 특수 사건을 평가 ※ 각 산업별 최소 70개 항목을 평가하나, 세부 평가항목 외부 비공개
	Bloomberg ESG Disclosure Scores	• 공개 정보 기반으로 평가 실시	0~100	• 에너지 및 배출, 폐기물, 여성임원, 이사회 독립성, 임직원 사고, 산업 특정 데이터 등을 포함한 ESG 정보 공시의 투명성에 대해 평가 ※ Bloomberg Terminal 이용자만 평가 결과 및 내용 접근 가능
	ISS Quality Score	• 공개 정보 및 기관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실시 • 피평가자 정보 검증 과정 참여	1 to 10 (Low to High Risk)	• 이사회 구조, 보수, 주주권리, 감사 및 리스크 관리 4가지 영역에 대해 약 230개의 평가항목을 평가 ※ 상세 항목 공개되어 있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ESG 평가	• 공개 정보 및 기관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실시 • 웹기반 평가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피드백 실시	S, A+, A, B+, B, C, D	• 기본평가 :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총 18개 대분류, 265개 핵심평가항목 • 심화평가 :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쟁점 사안 등 ※ 상세 평가 문항은 평가대상 기업만 확인 가능

(1) 스탠더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 Standard & Poor's Dow Jones Indices³⁵

미국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 Standard & Poor's Dow Jones Indices는 스위스 지속가능경영평가 전문기관 로베코샘 RobecoSAM과 함께 1999년 전 세계 2,500여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이하 DJSI’를 개발하고,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35) 출처: 한국생성성본부 (http://djsi.or.kr/wp/?page_id=5)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RobecoSAM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지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의 산업별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산정하며, 평가 점수에 따라 DJSI World(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 기업 평가), DJSI Asia-Pacific(아태지역 상위 600여 기업), DJSI Korea(국내 상위 200여 기업) 지수의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DJSI Korea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20년 DJSI 평가 결과, 각각의 지수에 17개, 29개, 42개 국내 기업이 편입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ESG 평가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 비교와 책임 투자를 위한 판단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³⁶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를 금융/투자기관에 제공한다. 환경 부문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물, 산림 자원의 3개 영역에 집중하여 각 영역별 질문지에 대한 기업의 답변을 받아 평가와 등급 산정에 활용한다.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및 관리 등 환경 측면의 활동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투자기관이 여신이나 투자 실행 시 잠재 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게 하는 데에 기여한다. 현재 기후변화, 물, 산림 부문에 각각 529개, 528개, 528개 투자 서명기관들이 참여 중이며,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민간 기업과 도시, 지역들이 매년 CDP를 통해 정보 공개에 참여하고 있다.

(3)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³⁷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평가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하 MSCI은 ESG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 평가/분석기관(RiskMetrics, ISS, Innovest Strategic Value Advisor, KLD 등)들을 인수합병하여 설립한 자회사(MSCI ESG Research)를 통해 ESG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ESG 영역별 10개 주제 및 37개 핵심 이슈들을 기준으로 MSCI에서 산출하는 다양한 ESG 관련 지수에 편입된 전 세계 8,500여 개 이상 기업들의 장기적인 ESG 리스크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기업의 ESG 관련 사건 사고도 논쟁 사안controversy으로 함께 반영하며, ESG 리스크 노출 정도와 동종 업계 리더의 대응 수준을 바탕으로 점수를 비교, 조정한 후 최종적으로 선도기업(AAA, AA), 평균(A, BBB, BB), 후발기업(B, CCC)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평가 시 기업 대상 질문지를 활용하는 DJSI 및 CDP와 달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주주총회 자료, 공공 통계 및 보도자료 등 외부 공개자료를 활용하는 차이점이 있다.

36) 출처: CDP (<https://www.cdp.net/en>)

37) 출처: MSCI (<https://www.msci.com>)

(4)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³⁸

1992년 설립된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전 세계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업의 ESG 리스크 평가 데이터를 제공해 왔으며, 2020년 글로벌 펀드 평가회사 모닝스타Morningstar에 인수된 후에는 펀드 등의 다양한 자산 클래스까지 확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SG 리스크는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적으로 중대한 ESG 이슈, 산업 특성과 무관한 기업별 특이 이슈의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3,000개 이상 기업의 산업별 주요 ESG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와 이에 대한 대응/관리 수준을 측정한다. 평가 점수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리스크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 무시 가능한 수준과 심각한 수준 사이에 5가지 등급으로 도출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기업과 기관투자자 모두가 관련 리스크와 재무적 영향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5)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³⁹

2002년 설립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KCGS)은 자본시장 운영에 필요한 기준 제정과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사단법인으로 2003년 지배구조 평가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환경과 사회 부문까지 포함한 ESG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비상장 주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별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전 코스피 상장기업 및 일부 코스닥 상장기업 등 매년 9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공개자료를 활용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의 핵심 항목별 기본 평가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쟁점 사안 등에 대한 심화 평가를 함께 진행한다. 최종 점수는 각 영역별 개별 등급과 ESG 전체의 종합 등급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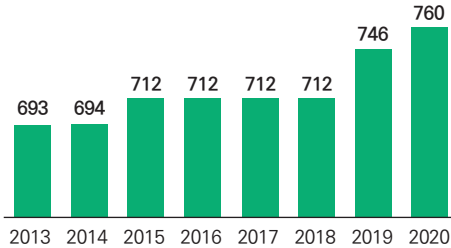
2020년 전체 평가 대상(908개 상장사) 중 코스피 상장사(760개)를 기준으로 최상위 등급s를 받은 기업은 없었고, 차상위 우수 등급(A+, A)을 받은 기업은 약 14.2%로 국내 기업 대부분의 ESG 경영 수준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CGS 외에도 서스틴베스트와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비슷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KCGS의 ESG 평가가 한국거래소의 'KRX 사회적책임투자지수' 종목 구성에 활용되는 등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38) 출처: Sustainalytics (<https://www.sustainalytics.com>): “세계는 ESG 3.0 돌입했다...한국은 2.0” 모닝스타코리아 정승혜 상무(임팩트온, 2021/05/26)

39)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http://www.cgs.or.kr/main/main.jsp>):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안내;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KCGS 보도자료, 2020/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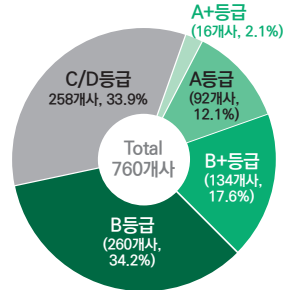
【KCGS 2020 ESG 평가 결과】

ESG 평가 기업 수(2013-2020) 및 산업별 우수 기업 (단위:개)



등급	업종	기업
A+ (16개사)	제조업·상사	두산/SK/효성첨단소재/효성티앤씨/SK네트웍스/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화학	S-Oil / 효성화학
	통신·금융·식품	KT/SK텔레콤/신한지주/KB금융/BNK금융지주/DGB금융지주/JB금융지주/풀무원

2020 ESG 통합 등급 부여 현황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내 ESG 경영 현황 등급 평가

- 매우 우수(A+)와 우수(A)등급 '19년 대비 각각 100%, 84% 증가 (8개사→16개사, 50개사→92개사)
- ESG 경영 인식 제고 및 경영환경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함
- 하지만, “보통(B)” 이하인 기업이 전체의 68%에 해당하여 **상당수 기업들은 여전히 ESG경영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분석;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KCGS 보도자료, 2020/10/14)

3) ESG 공시 관련 제도적 동향

ESG 공시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이 자리잡고 있다. 이미 2003년 호주를 시작으로 EU와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에서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어 왔으나 최근 ESG 경영 확산과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국의 공시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EU는 지속가능금융 추진을 위한 종합 정책으로서 2018년 수립한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에 따라 공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4년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NFRD’ 제정을 통해 2018년부터 500인 이상 상장기업의 의무 공시를 시행한 데 이어 2021년부터는 2019년 마련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에 따라 금융서비스기관으로까지 확대 추진 중에 있다.

NFRD와 SFDR은 앞서 살펴본 TCFD, GRI, SASB 등의 국제 공시 기준을 근간으로 한다. 현재 NFRD는 EU ESG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의무 공시 대상 확대, 공시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으로 개정 작업 중에 있으며,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EU 분류체계EU Taxonomy⁴⁰⁾ 또한 공시체계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상당 부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0) EU의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지속가능활동에 대한 통일된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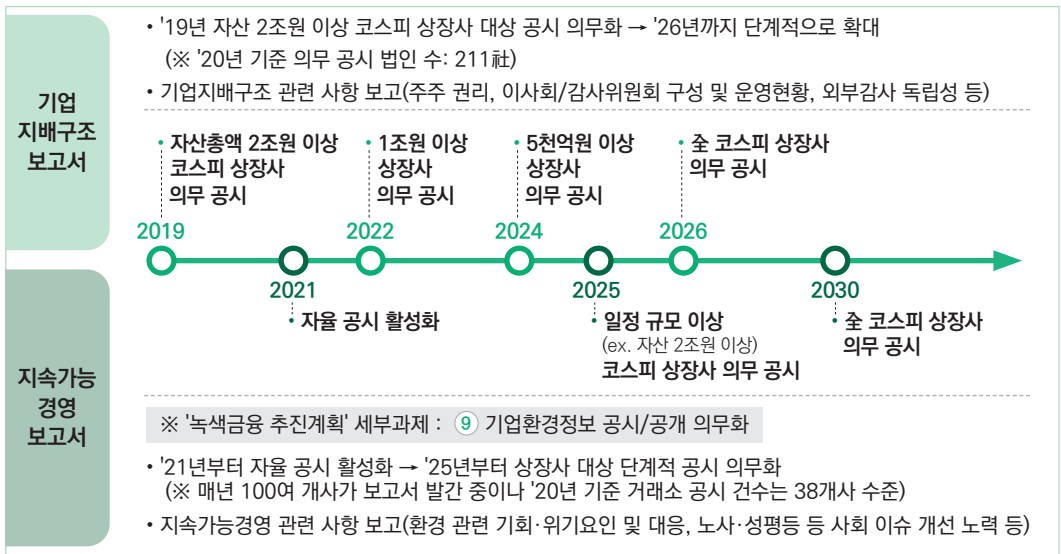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녹색금융 추진계획(금융위/환경부 공동)’ 및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발표를 통해 기업의 ESG 정보 공시에 대한 단계적 의무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시가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가 既 시행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경우 2026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에 확대 적용될 계획이며, 환경과 사회적 부문까지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1년부터 4년간의 자율 공시 활성화 기간을 거쳐 2025년 도입 후 2030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211개 기업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법인에 해당되어 주주 권리 및 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현황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매년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100여 개사가 자체적으로 발간 중이지만 자발적 공시의 특성상 거래소에는 38개사만이 제출하고 있다.

더 많은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한국거래소는 2021년 1월 ‘ESG 정보 공개 가이드런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공시 기준 통일화 작업도 조만간 마무리되면 공시 기업은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ESG 의무 공시 일정】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 분석;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2021)

4 국내 기업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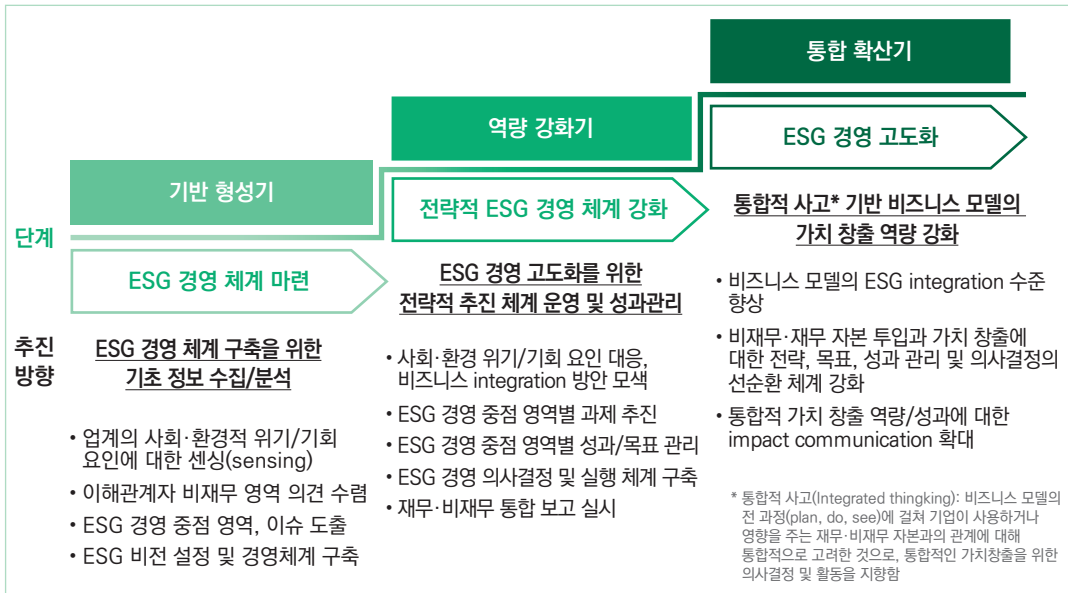
1)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거스를 수 없는 ESG 경영 패러다임의 한 가운데 선 기업들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 최근 1~2년 ESG 이슈가 CEO 아젠다agenda로 급부상하면서 ESG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ESG를 테마로 한 M&A 잠재 매물에 대한 문의가 생기기 시작한 점,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PE들의 ESG 실사에 대한 문의 등 기업뿐만 아니라 전문 사모펀드에서도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점들이 변화의 움직임을 실감하게 한다.

하지만, 기존에 어느 정도의 자금력과 니즈를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책임 활동에 참여하였던 일부 선진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국내 기업들이 ESG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ESG 경영의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ESG 경영에 대한 방향 설정과 전략 설계, 사업 재편 및 실행, 외부 커뮤니케이션 등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고민들을 두루 갖고 있다.

경영진이 ESG 경영을 선포하였다고 해서 ESG 경영이 단번에 완성되지는 않는다.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기본 형성기’와 전략적 과제 도출 및 이행을 거치는 ‘역량 강화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통합 확산기’까지 중장기에 걸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ESG 경영 고도화 로드맵】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단순한 일회성 자선과 기부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대신할 수 있었던 시대는 갔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철저한 기업의 전환이 요구된다. ESG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모든 활동에 ESG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이로써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ESG 경영의 첫 여정에 선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이러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는 ESG 경영이 기업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누구이고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ESG와 관련된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이며 ESG 이슈가 기업에 어떠한 기회와 위기를 가져오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갖고 접근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왜 ESG 경영인가?’에 대한 기업 본연의 진정한 답을 먼저 찾았을 때에만 미래 기업의 성장과 존속을 담보할 수 있는 성공적인 기업 전략과 사업 혁신을 감행하고 일궈낼 준비가 비로소 갖춰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ESG 경영 전략

ESG 경영의 성과는 기업의 경영 전반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ESG 요소를 녹여 내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최근의 국내 ESG 경영은 경영전C-level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ESG 경영 선포와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라는 2가지로 트렌드로 대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적 차원의 내재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만 겉으로만 허울 좋은 ESG 워싱(washing)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ESG 경영의 내실을 다지고 더 나아가 고도화할 수 있는 주요 이슈별 전략을 제시한다.

① 명확한 전략 방향 설정 및 설계

ESG 경영을 위한 기업의 목적과 이념이 바로 섰다면 이를 실제 경영과 사업에 녹여낼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중·장기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지, 사업 포트폴리오에는 어떻게 통합하고 연계할 것인지, 신규 사업 모델 개발이나 기존 사업의 재편은 필요한지 등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ESG 경영 전환을 위해 대표적으로 7가지 전략들을 적용하였다.⁴¹ ESG가 가져올 기회에 집중하는 것, 기업 활동 전반에 투명성을 추구하는 것,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것,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등 이론적으로는 쉽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이것을 기업의 목적으로 삼고, 전략과 사업에 연계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업은 지속가능성/ESG 이슈 또는 ESG 경영에 대한 외부 압력이 어떠한 위협과 기회를

41) 출처: The sustainability transformation – Look ahead, look inside, and look around(Deloitte, 2020/07)

제공하는지 파악하고, 객관적인 미래 전망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ESG 경영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내부 혁신을 단행하였으며, 기업이 속한 외부 생태계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기업 활동에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업 각자가 가진 핵심 역량과 강점을 바탕으로 선호하거나 희망하는 전략 유형을 글로벌 기업 사례를 통해 미리 투영해 보고 고려해 본다면 미래 시장의 올바른 포지셔닝을 위한 전략 설계 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 전환 전략】

글로벌기업 ESG 경영 전략 유형		유형별 사례
<p>1</p> <p> 리스크 집중형 기업</p> <p>파괴적 혁신과 위험이라는 시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성이 회사의 순익을 어떻게 손상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	<p> 기회 집중형 기업</p> <p>성장과 기회의 시각으로 지속가능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순익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	<p>• 전기차 시장 확대를 새로운 시장 확대 기회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스바겐은 '28년까지 70개 모델의 완전 전기차 전환 계획 - '30년 전기차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40% 까지 확대 <p></p>
<p>2</p> <p> 불투명한 기업</p> <p>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기술이나 저조한 실적을 노출할 수 있는 공시를 기피한다.</p>	<p> 투명성 추구 기업</p> <p>과감한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를 채택하고, 지속가능경영성과와 개선 분야를 공개적으로 논의한다.</p>	<p>• 추적 가능한소싱 솔루션 개발을 통한 공급망 투명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독 플랫폼 애틀스(AtSource)를 개발 - 원재료의 환경적, 사회적 발자국에 대한 시각적 보고 <p></p>
<p>3</p> <p> 이익 지향형 기업</p> <p>주주들을 위한 재무적 수익 창출에 전념하며, 전략과 의사결정 추진을 위한 이윤추구에 몰두한다.</p>	<p> 목적 지향형 기업</p> <p>주주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추구하며, 전략과 의사 결정을 이끄는 데 목적을 둔다.</p>	<p>• 목적 지향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 이익을 고려하는 수탁자의 법적 구속력 있는 기업으로 비공인증 <p></p>
<p>4</p> <p> 자사 집중형 기업</p> <p>기업은 전통적인 경계 내에서 운영되고 고객, 공급자 또는 지역사회와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은 호혜적이기 보다는 거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p>	<p> 생태계 집중형 기업</p> <p>기업의 전통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더 넓은 생태계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한다.</p>	<p>• 엘렌 맥아더 재단의 패션 순환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및 오염을 줄이기 위한 섬유산업 차원의 협업 - The Jean Redesign 프로젝트는 재생 가능한 청바지 출시 계획 <p></p>
<p>5</p> <p> 건설당형 기업</p> <p>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정보 교환, 지원 구축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승인(buy-in)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p>	<p> 협업형 기업</p> <p>지속가능한 결과에 대한 상호 관심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 혁신 및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목표로 한다.</p>	<p>• 협업형 비즈니스모델 관리를 통한 신시장 진출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는 빈곤 지역의 소상공인 고용을 통해 사업 운영 - 상호주의적 경제(EoM) 사업 모델의 첫 번째 사례 <p></p>
<p>6</p> <p> 보존형 기업</p> <p>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며,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를 끼치지 않는' 접근방식을 택한다.</p>	<p> 재생형 기업</p> <p>현재 상태를 넘어 복원과 재구성을 목표로 삼고 '손해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라'는 전략을 취한다.</p>	<p>• 재생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 유로 규모의 다른 생태계 펀드를 통해 자회사와 비영리 파트너 간 함께 프로젝트 지원 <p></p>
<p>7</p> <p> 선형 기업</p> <p>자원 사용에 대해 선형적인 "원자재 사용-생산-소비-폐기" 접근법을 취하며, 원자재는 상품으로 변형돼 수명 주기가 끝난 뒤 버려진다.</p>	<p> 순환형 기업</p> <p>폐기물 방지를 목적으로 재생이 가능한 순환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자 노력하며, 유한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원자재 소비와 성장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 젊은 고객층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렌탈 모델 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학생들에게 이케아 가구를 월 30유로에 대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p></p>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The sustainability transformation - Look ahead, look inside, and look around (Deloitte, 2020/07)

② ESG 성과 관리

【주요 산업별 전략적 ESG 경영 이슈】

산업 구분		ESG 구분			핵심 이슈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부문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E	S	G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강화
		E	S	G	연구 개발 강화 및 제품(콘텐츠) 개발을 위한 우수 인재 확보
		E	S	G	공정한 경쟁 및 책임있는 제품 관리
	첨단기술 산업	E	S	G	공급망 환경·인권 평가 및 모니터링
		E	S	G	에너지 효율 제품 개발 및 확대
		E	S	G	제품 폐기량 감축 및 재활용 방안 확대
소비자 부문	소비재 산업	E	S	G	책임 있는 원료 조달
		E	S	G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
		E	S	G	고객의 건강을 고려한 제품 개발
		E	S	G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
	유통 산업	E	S	G	공급망 인권 이슈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E	S	G	제품 생산부터 판매, 폐기 단계 효율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관리
		E	S	G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
		E	S	G	임직원 안전 및 건강 관리 강화
	자동차 산업	E	S	G	공급망 환경·인권 평가 및 모니터링
		E	S	G	고객 만족도 제고 및 평판 관리
		E	S	G	기업 경영 전문성 강화
		E	S	G	환경 영향 최소화 노력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	에너지, 화학 산업	E	S	G	자원 효율성 증대 프로세스 및 기술 개발
		E	S	G	공급망 관리 및 리스크 평가
		E	S	G	임직원 안전 및 건강 관리 강화
	산업재 및 건설업	E	S	G	친환경 자재 구매(친환경 인증 목자재, 재활용 콘크리트 등)
		E	S	G	LCA 기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빌딩 건축, 사회·환경 리스크 관리
		E	S	G	임직원 안전 및 건강관리 강화
금융 부문	은행, 보험, 부동산업	E	S	G	지배구조 선진화(CEO 선임 투명성,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E	S	G	투명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개인 정보 관리
		E	S	G	금융 상품개발 및 환경·사회 리스크 평가 및 관리의 확대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부문	제약·바이오, 병원·의료 서비스 산업	E	S	G	기후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관리
		E	S	G	제품을 통한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건강 & 웰니스 증진 등)
		E	S	G	연구 개발 강화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우수 인재 확보

출처: 한국 딜로이트 그룹 분석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성과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실제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하기 보다 기업의 핵심 ESG 영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성과를 추적,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내재적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또한, ESG 경영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이 속한 산업과 기업의 핵심 ESG 영역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속한 산업/업종의 특성 및 기업의 개별 여건에 따라 집중해야 할 전략적 ESG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이들의 주요 이슈를 식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중 중요성Materiality이 높은 이슈를 선별한 후, 글로벌 평가 기준과 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사 벤치마킹 등을 참고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행 가능하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국내외의 주요 ESG 평가DJSI, MSCI, KCGS 등 간 종합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한 산업별 ESG 중대 이슈(상단 표)를 참고해 볼 수도 있다.

핵심 ESG 영역과 이슈가 도출되었다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핵심성과관리지표KPIs를 설정한다.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설정 시에는 일반 사업/재무 성과와 달리 정량적인 지표로 객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환경적 측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재생에너지 소비량 등 정량적 측정지표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성과와의 명확한 인과관계 파악부터 정량적 지표 설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SG 성과 측정의 초기 단계에 있는 미국 포춘Fortune 100대 기업의 경우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ESG 측면의 다양한 핵심지표를 채택하여 경영진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 정성적 지표를 우선 적용함으로써 ESG 지표 통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이러한 단계적인 개선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포춘Fortune 100대 기업 경영진 핵심성과관리지표】

환경	사회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화탄소 배출 • 폐기물 전환 • 탄소집약도 • 연료 효율 • 녹색 자금조달 • 플라스틱 사용 • 유해 폐기물 배출 • 재생에너지 소비 • 재활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교육/개발 • 여성 리더십 • 지역사회 활동 • 사고 발생률 • 다양성/포용성 개선 • 인증 다양성 • 협력사 정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준수 • 내부 통제 • 위기 관리 • 리스크 관리 전략 • 사이버/데이터 보안 • 행동 규범 및 고충처리 정책 • 윤리 교육 등

출처: On the board's agenda (US) – Incorporating ESG measures into executive compensation plans(Deloitte, 2021/04)

성과관리의 또 다른 한 축으로 ESG 경영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사회(ESG위원회)는 경영진의 성과 보상체계에 ESG 성과를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성과연동지급Pay-for-Performance 원칙에 따라 경영진이 달성한 ESG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목표 미달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재무성과 보상체계와 마찬가지로 단·중·장기 차원의 ESG 성과를 촉진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캐스케이드cascade 접근 방식으로 전사 임직원의 성과 보상체계에도 확대 연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사HR 혹은 ESG 전담부서는 평가 방식 등 국내외 타사 벤치마킹을 통해 관련 체계 설계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앞서 도출한 핵심 ESG 영역과 성과관리지표가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조직 개편 및 내부 역량 강화

내실 있는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적 역량 강화도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경영진 레벨이 아닌 소규모 조직 단위로 환경/보건/안전EHS팀 또는 사회공헌활동CSR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안전 관리 및 환경 규제 대응, 사회공헌 활동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기업의 핵심 사업 영역과는 분리된 다소 부수적인 개별 기능으로 추진되는 성격이 강했다.

이와 달리 ESG 경영은 사업 혁신 등 기업의 체제적 전환을 요하는 일로서 전사적 차원에서 중앙 기구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신규 총괄조직을 구성하거나 기존 조직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ESG 전담부서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기타 모든 부서에 핵심 이슈별로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전사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직의 내재화를 끌어내야 한다.

조직이 구성된 후에는 본격적인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먼저 ESG 관련 내부 역량 맵핑을 통해 전사에 흩어져 있는 전문 인력을 총집합하고, 인력별 역량을 면밀히 진단하는 작업을 통해 향후 기업의 전략적 ESG 경영 및 사업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기준으로 갭gap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 외부 교육 및 컨설팅, 내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현재 역량과 수요 역량 간 갭을 채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단,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한편 핵심 역량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조직 문화 조성 및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등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ESG 경영이 어느 특정 한 부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틀과 체계를 잡는 담당부서의 역할이 클 것이므로 해당 부서의 실무자는 ESG 이슈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는 물론,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ESG 경영 방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④ 지배구조 개선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과 신흥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서 격년마다 아태지역 12개국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여 발간하는 CGCorporate Governance Watch 보고서⁴²를 보면, 2010년 이후 우리나라는 줄곧 8~9위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최근 2020년까지 3회 연속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9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호주,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외에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또 최근의 ESG

42) CG Watch 2020: Future Promise; CG Watch 2018: Hard decisions; CG Watch 2016: Ecosystems matter (ACGA, 각각 2021/2018/2016)

정보 공시 의무화 계획 발표 및 단일 성(性) 이사회 구성 금지 규정 등 규제 환경의 꾸준한 개선 노력은 인정되지만, 규제의 투명성 확보와 소수주주 권리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다.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당연히 규제기관과 기업의 동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2020년 부문별 평가에서 4위권인 정부/공공지배구조 보다도 10위권에 있는 상장회사들의 노력이 더 절실히 보인다. 2019년부터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통해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보다 선제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치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ESG 전사 경영을 주도하는 최상위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이 독립성과 내부통제 확립을 통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의사결정과 정보 공개에 대한 지배구조의 투명성 또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⑤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2025년부터 ESG 정보 공시에 대한 단계적인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기업의 ESG 정보 공개에 대한 투자자와 소비자, 규제기관의 요구는 날로 높아질 것이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간하여 자체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 중인 국내 기업은 100여 개사로 거래소에 공시 중인 기업은 이보다 더 적은 38개사 정도이다.⁴³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ESG보고서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비록 내실은 굳건하더라도 관련 추진사항과 성과가 이러한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ESG 경영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많은 외부 평가기관들이 기업의 자체 발간 보고서 등 외부 공개자료를 ESG 평가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은 ESG 위상이 아닌 진정한 ESG 경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기업만의 특별한 스토리로 담아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단, 처음부터 완벽한 성과를 만들어 공개하는데 집중하기 보다 객관적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국제 공시 지침과 기준에 대한 자세한 검토, 내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임직원 간 활발한 추진 성과 공유를 통한 기초 정량/정성적 데이터 수집, 이해관계자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탐색 등은 양질의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 공개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과정이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때 내부 임직원의 ESG 경영 참여에 대한 동기과 의식은 고취될 것이며, 외부 이해관계자에는 긍정적인 기업 가치를 각인시켜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43)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2021)

⑥ 지속적인 추진력 확보

ESG 경영의 우수 기업으로 꼽히는 유니레버Unilever의 CEO 폴 폴먼Paul Polman은 그가 취임한 다음 해인 2010년 ‘유니레버 지속가능한 생활 계획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 이하 USLP’이라는 향후 10년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 비전 아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회사의 수익은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고, 가장 먼저 전사의 역량을 결집시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ESG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분기별 실적 보고서와 수익 공시를 폐지하기도 했다.

물론, 사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주주들을 설득하는 어려운 과정도 수반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당시 8%나 폭락한 주가로 시장의 못매를 맞는 듯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10년 재임기간(2009~2018) 동안 유니레버의 주가는 200% 이상 성장함으로써 그의 10년 비전에 확실한 보답으로 돌아왔다.

재무적 성과 외에도 소비자 1인당 총 폐기물 발자국 32% 감소, 전 사업장의 매립 폐기물 제로화 및 100% 재생 가능 송전망 인프라 구축, 제조 공정 온실가스 배출 65% 감소 등 상당한 환경적 성과와 함께 13억 명 대상 보건 위생 프로그램 지원과 234만 명 여성 대상 안전 증진/역량 개발/기회 확대 프로그램 지원, 관리직의 51%가 여성인 양성 균형 직장 실현 등 폭넓은 사회적 성과도 달성하였다.

폴먼의 뒤를 이어 2019년 새롭게 취임한 CEO 앨런 조프Alan Jope는 2020년 5월, USLP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 비전이 유니레버의 사업 판도를 대대적으로 바꿔 놓은 게임 체인저game-changer였다’고 밝히며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유니레버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는 이들이 거둔 엄청난 성과보다도 경영진의 명확한 장기 비전과 리더십 아래 전 임직원이 10년간 체계적인 이행 노력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경영진 주도로 ESG 경영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국내 기업 환경에도 이러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헌신commitment,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모멘텀이 단단히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참고】 약어표

약어	영문명	국문명
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환경, 보건, 안전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EP	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HR	Human Resources	인적자원
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국제통합보고위원회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KCGS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ETS	Korean Emissions Trading System	한국배출권거래제
KP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 2005년 발효)
KPIs	Key Performance Indicators	핵심성과지표
LT-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PA	Paris Agreement	파리협정(2015년 채택, 2016년 발효)
PE	Private Equity	사모펀드 운용사
PPP	Polluter Pays Principle	오염자 부담 원칙
P4P	Pay-for-Performance	성과연동지급원칙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M&A	Mergers and Acquisitions	인수합병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Z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밀레니얼(1981~1995년생)/Z세대(1996~2010년생)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EU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EU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TBL	Triple Bottom Line	트리플 바텀라인(환경/사회/경제 3대 영역)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CBD	UN Framework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유엔생물다양성협약
UNCCD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
UNEP	UN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 PRI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유엔)책임투자원칙
USLP	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	유니레버 지속가능한 생활 계획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뉴노멀시대 CFO가 알아야 할 것들

집필진 — 안진회계법인 김기현 파트너 [CFO의 역할과 변화 / 회계]
안진회계법인 박성한 파트너 [세무]
안진회계법인 김학범 파트너 [내부통제]
안진회계법인 백인규 ESG 센터장 [ESG]

발행일 — 2021년 11월 30일

발행인 — 정구용

편집인 — 이기현

발행처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상장회사CFO포럼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9 상장회사회관
02-2087-7000
www.cfo.or.kr

저작권 — 본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상장회사CFO포럼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